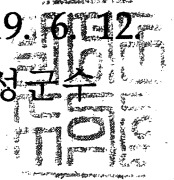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708 |
|----------|------|

제출일자 : 2019. 6. 12.

제 출 자 : 달성군수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추가지원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을 개정된 기준인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안 제3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5. 15. ~ 2019. 6. 4.(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③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3.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3조제3항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br><u>③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한다.</u><br><u>(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한한다.)</u><br>1. 장애등급 1급, 2급, 3급 : 30만원<br>2. 장애등급 4급, 5급 : 20만원<br>3. 장애등급 6급 : 10만원<br>4. 위 각 호에서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br><u>③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한다.</u><br>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br>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br>3.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273회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                                                                 |    |
|-----------------------------------------------------------------|----|
|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 2면 |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 2면 |
|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 2면 |
|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br>(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 | 2면 |
|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br>(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          | 2면 |

|                                                                       |    |
|-----------------------------------------------------------------------|----|
|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br>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군수 제출) .....                 | 2면 |
|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br>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br>(군수 제출) .....               | 2면 |
|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br>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벨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

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     |     |     |     |
|-----|-----|-----|-----|
| 최상국 | 서도원 | 구자학 | 하중환 |
| 김정태 | 이대곤 | 김보경 | 신동윤 |
| 도일용 | 김은영 |     |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
| 사무국장    | 김종호 |
| 전문위원    | 김종석 |
| 전문위원    | 이원한 |
| 전문위원    | 송창훈 |
| 의사담당    | 주강숙 |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2019. 6. 18. 10:00

제27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2 차 본회의

#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제안사유

##### ○ 옥연지 기세임도 조성

-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인 옥연지 송해공원 및 산림욕장과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권 임도를 조성함으로써 산림문화·휴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 송해공원과 산림욕장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도입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 ○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

- 現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사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작업 및 적재공간이 협소하여 확장 이전을 통해 장애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상대적으로 구직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작업장 확장 이전을 통해 근로기회 제공 등 일자리 창출
- 이전 후 기존 작업장은 장애인들의 복지관 이용수요에 맞춰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실 등으로 확장 운영

#### ○ 달성 화석 박물관 건립

-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사업은 2019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로 소장 화석 가치, 우수한 입지여건, 우리 군 건립의지를 인정받았으며,
- 전국 최초 화석전문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인근 국립대구과학관과 연계한 전국 최고 학생교육투어의 장을 마련코자 함.

#### ○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

- 최근 생활체육활동의 참여 수준 증가로 체육시설 확충 요구와 지역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지역적 균형발전을 고려한 테크노폴리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해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도모코자 함.

#### ○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마을 내 공동주차장의 부재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불편 초래
- 인근 한훤당 고택 방문객의 증가로 마을 내 주정차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 필요
-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진

### 4. 주요내용

#### ○ 옥연지 기세 임도 조성

- 위 치 :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산85-2번지
- 기 간 : 2019. 1. ~ 2020. 4.
- 면 적 : 55,636m<sup>2</sup>
- 총사업비 : 500백만원 (토지매입비 250, 공사비 250)

#### ○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

- 위 치 :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57-12번지
- 기 간 : 2019. 4. ~ 2019. 12.

- 대지면적 : 7,598.2m<sup>2</sup>
- 시설규모 : 지상1층 3동, 연면적 2,352m<sup>2</sup>
- 사 업 비 : 5,700백만원(토지·건물 매입비 3,900, 공사비 1,700, 물품취득비 100)
- 주요시설 : 공장, 작업장, 사무동(사무실, 식당, 프로그램실 등)

#### ○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 위 치 :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번지  
※ 총 부지 45,184.8m<sup>2</sup> 中 8,980m<sup>2</sup>정도 활용
- 기 간 : 2016. 12. ~ 2022. 1.
- 주요시설 : 박물관(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612m<sup>2</sup>), 야외전시장(2,000m<sup>2</sup>), 주차장(45면) 등
- 사 업 비 : 193.85억원(국비 74.81, 군비 119.04)  
· 부대비 31억원(설계비 6.7, 감리비 13.8, 기타 10.5), 공사비 163억원

#### ○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

- 위 치 :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번지  
※ 총 부지 45,184.8m<sup>2</sup> 中 23,000m<sup>2</sup>정도 활용
- 기 간 : 2017. 9. ~ 2021. 12.
- 주요시설 : 스포츠센터(지상3층, 연면적 5,358m<sup>2</sup>), 야외시설(축구장, 조깅트랙, 주차장 등 19,375m<sup>2</sup>)
- 사 업 비 : 130억원(국비 30, 군비 100)  
· 스포츠센터 : 109.6억원, 축구장 : 12.1억원, 조깅트랙 : 1억원, 야외주차장 : 7.3억원

#### ○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달성군 현풍읍 지리 1144번지 외 1필지
- 기 간 : 2019. 4. ~ 2019. 12.
- 면 적 : 2,062m<sup>2</sup>(주차면수 56면 정도)
- 사 업 비 : 650백만원(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

##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붙임 :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부.  
2.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끝.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 구 분    | 당 초        |            |            | 금 회        |          |          | 계          |            |            |
|--------|------------|------------|------------|------------|----------|----------|------------|------------|------------|
|        | 건수<br>(필지) | 수량         | 금액         | 건수<br>(필지) | 수량       | 금액       | 건수<br>(필지) | 수량         | 금액         |
| 취<br>득 | 계          | 12<br>(84) | 159,480.99 | 15,573,464 | 7<br>(4) | 77,618.2 | 19<br>(88) | 237,099.19 | 52,427,231 |
|        | 토지         | 5<br>(83)  | 144,371    | 5,972,990  | 3<br>(4) | 65,296.2 | 8<br>(87)  | 209,667.2  | 8,116,206  |
|        | 건물         | 2          | 1,857.35   | 2,041,588  | 1        | 1,452    | 3          | 3,309.35   | 2,567,139  |
| 2.교환   |            |            |            |            |          |          |            |            |            |
| 3.기타   | 토지         | 1<br>(1)   | 1,488      | 193,886    |          |          | 1<br>(1)   | 1,488      | 193,886    |
|        | 건물         | 4          | 11,764.64  | 7,365,000  | 3        | 10,870   | 7          | 22,634.64  | 41,550,000 |
| 처<br>분 | 계          |            |            |            |          |          |            |            |            |
|        | 토지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5.양여       |            |            |            |          |          |            |            |            |
| 6.교환   |            |            |            |            |          |          |            |            |            |

#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포 시         |     |         | 취득<br>대상<br>수량<br>(㎡) | 대장가격(원)<br>(공시지가<br>× 면적) | 취득<br>시기         | 취득<br>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br>사실 | 소 재 지 | 일단의<br>수 량<br>(㎡) | 주 소 | 성 명     |                       |                           |                  |                               |                                                     |     |                          |
| 1         | 묘        | 잡     | 논공읍               | 금포리 | 1305-1  | 585                   | 191,997,000               | 2019.2.          | 군청사<br>제2주차장<br>확장            |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4길 28<br>308/1102<br>(잠원동, 신반포 8차 아파트) | 오창익 | 2018.<br>12월<br>의회<br>의결 |
| 2         | 전        | 잡     | 논공읍               | 금포리 | 1305-2  | 1,081                 | 354,784,200               |                  |                               |                                                     |     |                          |
| 3<br>(가타) | 대        | 장     | 논공읍               | 금포리 | 1307-4  | 66                    | 36,234,000                | 2019.1.<br>~ 12. | 군청사<br>제2주차장<br>태양광발전<br>시설설치 |                                                     | 달성군 | 2018.<br>12월<br>의회<br>의결 |
|           | 대        | 장     | 논공읍               | 금포리 | 산29-11  | 187                   | 1,589,500                 |                  |                               |                                                     |     |                          |
|           | 대        | 장     | 논공읍               | 금포리 | 1307    | 2,662                 | 1,126,292,200             |                  |                               |                                                     |     |                          |
|           | 전        | 잡     | 논공읍               | 금포리 | 1425-3  | 978                   | 435,601,200               |                  |                               |                                                     |     |                          |
|           | 전        | 잡     | 논공읍               | 금포리 | 1425-20 | 66                    | 29,396,400                |                  |                               |                                                     |     |                          |
|           | 전        | 잡     | 논공읍               | 금포리 | 1425-21 | 20                    | 8,908,000                 |                  |                               |                                                     |     |                          |
|           | 임        | 잡     | 논공읍               | 금포리 | 산29-3   | 411                   | 172,209,000               |                  |                               |                                                     |     |                          |
|           | 임        | 잡     | 논공읍               | 금포리 | 산29-10  | 20                    | 8,380,000                 |                  |                               |                                                     |     |                          |
|           | 전        | 대     | 논공읍               | 금포리 | 1303    | 780                   | 226,200,000               |                  |                               |                                                     |     |                          |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취득 대상 수량 (㎡) | 대장가격(원)<br>(공시지가<br>× 면적)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재 지     |     | 일단의 수 량 (㎡) |              |                           |                                                   |       | 주 소         | 성 명 |                  |
| 3<br>(기타) | 대   | 대  | 논공읍       | 금포리 | 1304        | 873          | 365,787,000               | 2019.1.<br>~ 12.<br>군청사<br>제2주차장<br>태양광발전<br>시설설치 |       |             | 달성군 | 2018.12월<br>의회의결 |
|           | 전   | 장  | 논공읍       | 금포리 | 1308        | 437          | 175,499,200               |                                                   |       |             |     |                  |
|           | 장   | 장  | 논공읍       | 금포리 | 1308-3      | 1,189        | 498,191,000               |                                                   |       |             |     |                  |
|           | 임   | 장  | 논공읍       | 금포리 | 산34         | 444          | 186,036,000               |                                                   |       |             |     |                  |
|           | 전   | 장  | 논공읍       | 금포리 | 1309        | 571          | 143,035,500               |                                                   |       |             |     |                  |
|           | 잡   | 잡  | 논공읍       | 금포리 | 1425-23     | 1            | 741,000                   |                                                   |       |             |     |                  |
|           | 잡   | 잡  | 논공읍       | 금포리 | 2394-22     | 34           | 14,246,000                |                                                   |       |             |     |                  |
|           | 묘   | 잡  | 논공읍       | 금포리 | 1305-1      | 585          | 191,997,000               |                                                   |       |             |     |                  |
| 4         | 전   | 잡  | 논공읍       | 금포리 | 1305-2      | 1,081        | 354,784,200               | 2019.5.<br>비슬관광지<br>조성                            |       | 농림축산식품부     | 국유지 | 2018.12월<br>의회의결 |
|           | 구   | 구  | 유기읍       | 용리  | 836         | 29           | 3,625,000                 |                                                   |       |             |     |                  |
|           | 구   | 구  | 유기읍       | 용리  | 842         | 78           | 1,404,000                 |                                                   |       |             |     |                  |
|           | 구   | 구  | 유기읍       | 용리  | 861         | 1,164        | 145,500,000               |                                                   |       |             |     |                  |
| 7         | 구   | 구  | 유기읍       | 용리  | 산185        | 21,593       | 847,375,200               |                                                   |       |             |     |                  |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취득 대상 수량 (㎡) | 대장가액(원)<br>(공시지가 × 면적)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 재  | 지    | 일단의 수량 (㎡)   |                        |         |          | 주                | 소     | 성 명                  |                  |
| 8  | 구   | 구  | 유가읍       | 용리 | 산188 | 104          | 140,400                | 2019.5. | 비슬관광지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          |       | 국유지                  | 2018.12월<br>의회의결 |
| 9  | 구   | 구  | 유가읍       | 용리 | 산189 | 98           | 132,300                |         |          | "                |       | "                    |                  |
| 10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1    | 367          | 3,926,900              |         |          | 달성군 유가읍 유가사      | 2길 37 | 유가사                  |                  |
| 11 | 잡   | 잡  | 유가읍       | 용리 | 2    | 160          | 3,552,000              |         |          | "                |       | "                    |                  |
| 12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2-1  | 861          | 9,212,700              |         |          | "                |       | "                    |                  |
| 13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6    | 264          | 2,824,800              |         |          | 달성군 유가읍 못안길      | 102   | 박일용                  |                  |
| 14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9    | 1,044        | 12,319,200             |         |          | "                |       | "                    |                  |
| 15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10   | 152          | 1,626,400              |         |          | "                |       | "                    |                  |
| 16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11   | 208          | 2,225,600              |         |          | "                |       | "                    |                  |
| 17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12   | 407          | 4,354,900              |         |          | "                |       | "                    |                  |
| 18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13   | 162          | 1,733,400              |         |          | "                |       | "                    |                  |
| 19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14   | 304          | 3,252,800              |         |          | "                |       | "                    |                  |
| 20 | 임   | 임  | 유가읍       | 용리 | 18-3 | 359          | 5,313,200              |         |          | 대구 중구 중앙대로 446-4 |       | 안동김씨<br>익원공파<br>달성문회 |                  |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취득<br>대상<br>수량<br>(㎡) | 대장가격(원)<br>(공시지가<br>× 면적) | 취득<br>시기               | 취득<br>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 재  | 지    | 일단의<br>수 량<br>(㎡)     |                           |                        |          | 주                                           | 소 | 성 명                  |                  |
| 21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29   | 2,430                 | 352,350,000               | 2019.5.<br>비슬관광지<br>조성 |          | 달성군 유가읍 용리 117                              |   | 성낙언                  | 2018.12월<br>의회의결 |
| 22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29-2 | 1,139                 | 165,155,000               |                        |          | 경남 창원시 대정로 79<br>성원1차아파트 113-103            |   | 김재선                  |                  |
| 23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29-3 | 1,456                 | 211,120,000               |                        |          | 대구 수성구 고산로 162<br>101동 1501호(매호동<br>한일유엔아이) |   | 김상식                  |                  |
| 24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30   | 2,089                 | 178,609,500               |                        |          | 달성군 유가읍 용리 55                               |   | 윤태식                  |                  |
| 25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31   | 2,618                 | 223,839,000               |                        |          | 대구 달서구 한실로 117<br>대곡사계절타운 304-1403          |   | 조진섭                  |                  |
| 26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31-1 | 989                   | 121,548,100               |                        |          | 달성군 현풍읍 현풍로6길<br>3-13                       |   | 정재인                  |                  |
| 27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32   | 1,917                 | 30,672,000                |                        |          |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316<br>대백창신한라 302동 305호         |   | 남광용                  |                  |
| 28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33   | 264                   | 4,303,200                 |                        |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사문나루길 10                         |   | 김외학                  |                  |
| 29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34   | 1,428                 | 23,276,400                |                        |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사문나루길 10                         |   | 김외학                  |                  |
| 30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35   | 3,074                 | 38,396,800                |                        |          | 대구 수성구 노변공원로 7길<br>11-6                     |   | 청주정씨<br>감정공파<br>경산종중 |                  |
| 31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36   | 172                   | 2,803,600                 |                        |          | -                                           |   | 최우준                  |                  |
| 32 | 답   | 답  | 유가읍       | 용리 | 37   | 2,407                 | 27,177,900                |                        |          | 대구 수성구 만촌로 20길 32                           |   | 이영우외1명               |                  |
| 33 | 임   | 임  | 유가읍       | 용리 | 산2-2 | 1,791                 | 1,934,280                 |                        |          | 달성군 현풍읍 중리길 33-9                            |   | 김해김씨<br>달몽공파<br>중종   |                  |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취득<br>대상<br>수량<br>(㎡) | 대장가액(원)<br>(공시지가<br>× 면적) | 취득<br>시기               | 취득<br>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재 지     | 일단의<br>수 량<br>(㎡) | 주 소 |                       |                           |                        |                  | 성 명                                      |                |    |
| 34 | 임   | 임  | 유가읍       | 산2-3              | 용리  | 198                   | 213,840                   | 2019.5.<br>비슬관광지<br>조성 | 2018.12월<br>의회의결 | 달성군 현풍읍 중리 133                           | 김해김씨달<br>동공파중증 |    |
| 35 | 임   | 임  | 유가읍       | 산2-11             | 용리  | 192                   | 207,360                   |                        |                  |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11<br>건오힐타워 401호          | 김영일            |    |
| 36 | 임   | 임  | 유가읍       | 산2-13             | 용리  | 728                   | 873,600                   |                        |                  | 대구 달서구 상화로 380, 302동<br>611호(상인동, 장미아파트) | 박성영            |    |
| 37 | 임   | 임  | 유가읍       | 산2-15             | 용리  | 13,175                | 14,492,500                |                        |                  |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0                         | 박소현외2명         |    |
| 38 | 임   | 임  | 유가읍       | 산2-21             | 용리  | 3,969                 | 10,875,060                |                        |                  | 달성군 유가읍 도의길 86                           | 손삼출외2명         |    |
| 39 | 임   | 임  | 유가읍       | 산16               | 용리  | 25,399                | 16,306,158                |                        |                  | 달성군 유가읍 용리 117                           | 성달용외1명         |    |
| 40 | 임   | 임  | 유가읍       | 산17-2             | 용리  | 86                    | 92,880                    |                        |                  |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br>180-20                   | 김동섭            |    |
| 41 | 임   | 임  | 유가읍       | 산17-3             | 용리  | 340                   | 421,600                   |                        |                  |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br>180-20                   | 김동섭            |    |
| 42 | 임   | 임  | 유가읍       | 산17-4             | 용리  | 7,384                 | 8,565,440                 |                        |                  | 달성군 유가읍 금리 454                           | 김정원외1명         |    |
| 43 | 도   | 도  | 유가읍       | 산17-5             | 용리  | 173                   | 605,500                   |                        |                  | 달성군 유가읍 금리 454                           | 김정원            |    |
| 44 | 임   | 임  | 유가읍       | 산17-14            | 용리  | 1,753                 | 2,068,540                 |                        |                  | 대구 남구 명덕로26길 53-3                        | 임은경외1명         |    |
| 45 | 임   | 임  | 유가읍       | 산18               | 용리  | 1,462                 | 1,207,612                 |                        |                  | 대구 달서구 송현로7길 9,<br>2107동 2001호           | 배중호            |    |
| 46 | 임   | 임  | 유가읍       | 산18-4             | 용리  | 6,738                 | 8,355,120                 |                        |                  | 대구 동구 동부로32길 99, 3동<br>408호(신천동, 효신아파트)  | 배명호            |    |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취득<br>대상<br>수량<br>(개소) | 산출가액(원)<br>(분묘보상액<br>× 개소) | 취득<br>시기 | 취득<br>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br>사실 | 소 재 지 | 일단의<br>수 량<br>(개소) | 주 소 | 성 명    |                        |                            |          |             |                                         |                  |                  |
| 47         | 임        | 임     | 유기읍                | 용리  | 산18-5  | 3,582                  | 401,184                    |          | 비슬관광지<br>조성 |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41                        | 강남산영<br>주식회사     | 2018.12월<br>의회의결 |
| 48         | 임        | 임     | 유기읍                | 용리  | 산18-6  | 1,225                  | 991,025                    |          |             | "                                       | "                |                  |
| 49         | 임        | 임     | 유기읍                | 용리  | 산19-1  | 12,396                 | 9,686,200                  |          |             | 대구 중앙대로 446-4                           | 안동김씨익원<br>공파달성문화 |                  |
| 50<br>(표지) | 답        | 답     | 유기읍                | 용리  | 32     | 3개소                    | 10,513,350                 |          |             |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316<br>대백창신한라 302동 305호     | 남광용              |                  |
|            | 임        | 임     | 유기읍                | 용리  | 산2-21  | 1개소                    | 3,504,450                  |          |             | 달성군 유기읍 도의길 86                          | 손삼출외1명           |                  |
|            | 임        | 임     | 유기읍                | 용리  | 산17-16 | 1개소                    | 1,107,790                  | 2019.5.  |             | -                                       | -                |                  |
|            | 임        | 임     | 유기읍                | 용리  | 산2-3   | 1개소                    | 1,107,790                  |          |             | -                                       | -                |                  |
|            | 임        | 임     | 유기읍                | 용리  | 산17-1  | 2개소                    | 2,215,580                  |          | -           | -                                       |                  |                  |
|            | 임        | 임     | 유기읍                | 용리  | 산16    | 2개소                    | 2,215,580                  |          | -           | -                                       |                  |                  |
|            | 임        | 임     | 유기읍                | 용리  | 산17-8  | 4개소                    | 14,017,800                 |          |             |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2길 6,<br>화성파크드림 212동 1403호 | 김성곤              |                  |
|            | 임        | 임     | 유기읍                | 용리  | 산17-14 | 3개소                    | 10,513,350                 |          |             | "                                       | "                |                  |

※ 분묘보상액 산정기준 : 2018년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단가, 2018.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취득<br>대상<br>수량<br>(㎡) | 대장가액(원)<br>(공시지가<br>× 면적) | 취득<br>시기    | 취득<br>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재 지     | 일단의<br>수 량<br>(㎡) | 주 소   |                       |                           |             |                    | 성 명                                |              |                  |
| 51<br>(건물) | 종교  | 종교 | 유가읍       | 용리                | 산1-2  | 2,605                 | 1,000,000,000             | 2019.6.     | 종각·범종              |                                    | 달성군          | 2018.12월<br>의회의결 |
| 52<br>(건물) | 종교  | 종교 | 유가읍       | 용리                | 산1-3  | 810                   | 400,000,000               |             | 일주문                |                                    | 달성군          |                  |
| 53         | 대   | 대  | 현풍읍       | 성하리               | 459   | 1,640                 | 538,412,000               | 2019.1.~ 2. | 현풍교통<br>문화파크<br>조성 |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학교법인<br>구암학원 | 2018.12월<br>의회의결 |
| 54         | 대   | 대  | 현풍읍       | 성하리               | 460   | 357                   | 119,595,000               |             |                    |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79                    | 달성군<br>농회    |                  |
| 55         | 대   | 대  | 현풍읍       | 성하리               | 461   | 172                   | 53,010,400                |             |                    |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학교법인<br>구암학원 |                  |
| 56         | 대   | 대  | 현풍읍       | 성하리               | 462   | 542                   | 181,570,000               |             |                    |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학교법인<br>구암학원 |                  |
| 57         | 묘   | 묘  | 현풍읍       | 성하리               | 463-1 | 109                   | 3,270,000                 |             |                    | 대구 북구 칠성동 404                      | 곽치만          |                  |
| 58         | 대   | 대  | 현풍읍       | 성하리               | 463-2 | 202                   | 18,402,200                |             |                    |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학교법인<br>구암학원 |                  |
| 59         | 전   | 전  | 현풍읍       | 성하리               | 463-3 | 8,797                 | 409,060,500               |             |                    |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학교법인<br>구암학원 |                  |
| 60         | 묘   | 묘  | 현풍읍       | 성하리               | 463-4 | 235                   | 7,050,000                 |             |                    | 경북 구미시 인동 46길 6<br>부영아파트 603-1201  | 곽대호          |                  |
| 61         | 전   | 전  | 현풍읍       | 성하리               | 465   | 783                   | 23,020,200                |             |                    | 대구 수성구 청수로 213<br>캐슬골드파크 1115-1202 | 유창식          |                  |
| 62         | 전   | 전  | 현풍읍       | 성하리               | 468   | 2,486                 | 74,580,000                |             |                    |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학교법인<br>구암학원 |                  |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취득<br>대상<br>수량<br>(㎡) | 대장가격(원)<br>(공시지가<br>× 면적) | 취득<br>시기                   | 취득<br>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br>사실 | 소 재 지 | 일단의<br>수 량<br>(㎡) | 주 소    | 성 명    |                       |                           |                            |                  |                                |              |    |
| 63         | 전        | 전     | 현풍읍 성하리 469       | 2,294  | 2,294  | 2,294                 | 68,820,000                | 2019.1.~ 2.<br>현풍교통문화파크 조성 | 2018.12월<br>의회의결 |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학교법인<br>구암학원 |    |
| 64         | 전        | 전     | 현풍읍 성하리 470       | 3,124  | 3,124  | 3,124                 | 93,720,000                |                            |                  | 달성군 현풍읍 지리                     | 곽성용          |    |
| 65         | 임        | 임     | 현풍읍 성하리 471       | 638    | 638    | 638                   | 16,715,600                |                            |                  | 달성군 현풍읍 지동3길 47-10             | 곽영준          |    |
| 66         | 전        | 전     | 현풍읍 성하리 472       | 813    | 813    | 813                   | 23,170,500                |                            |                  | 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앙로 26길 성창빌라 에이-202 | 손재수 외3명      |    |
| 67         | 임        | 임     | 현풍읍 성하리 473       | 1,797  | 1,797  | 1,797                 | 62,895,000                |                            |                  | 달성군 현풍읍 지동3길 47-10             | 곽영준          |    |
| 68         | 전        | 전     | 현풍읍 성하리 473-1     | 8,634  | 8,634  | 798                   | 23,940,000                |                            |                  | -                              | 국<br>(건설부)   |    |
| 69         | 전        | 전     | 현풍읍 성하리 474       | 258    | 258    | 258                   | 7,353,000                 |                            |                  | 달성군 현풍읍 지동3길 47-10             | 곽영준          |    |
| 70         | 전        | 전     | 현풍읍 성하리 475       | 258    | 258    | 258                   | 7,353,000                 |                            |                  | 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앙로 26길 성창빌라 에이-202 | 손재수 외3명      |    |
| 71         | 전        | 전     | 현풍읍 성하리 476       | 826    | 826    | 826                   | 31,476,600                |                            |                  | 대구 남구 현충로 39길 84               | 하원호          |    |
| 72         | 전        | 전     | 현풍읍 성하리 477       | 36     | 36     | 36                    | 1,371,600                 |                            |                  | -                              | 국<br>(건설부)   |    |
| 73<br>(건물) | 학교       | 학교    | 현풍읍 성하리 459       | 356.44 | 356.44 | 356.44                | 20,317,080                |                            |                  |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학교법인<br>구암학원 |    |
|            | 학교       | 학교    | 현풍읍 성하리 460       | 207.74 | 207.74 | 207.74                | 11,841,180                |                            |                  | "                              | "            |    |
|            | 학교       | 학교    | 현풍읍 성하리 461       | 108.8  | 108.8  | 108.8                 | 6,201,600                 |                            |                  | "                              | "            |    |
|            | 학교       | 학교    | 현풍읍 성하리 462       | 144.37 | 144.37 | 144.37                | 8,229,090                 |                            |                  | "                              | "            |    |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취득<br>대상<br>수량<br>(㎡) | 대장가격(원)<br>(공시지가<br>× 면적) | 취득<br>시기 | 취득<br>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 재 지        | 일단의<br>수 량<br>(㎡) |                       |                           |          |                                     | 주 소                                               | 성 명        |                  |
| 74         | 전   | 전  | 회원읍       | 명곡리 36     | 1,319             | 686                   | 100,156,000               | 2019.7.  | 회원명곡체육<br>공원 유소년<br>축구장 및<br>진입도로조성 | 대구 달서구 상인로 26인길 14                                | 박재영        | 2018.12월<br>의회의결 |
| 75         | 전   | 전  | 회원읍       | 명곡리 37     | 369               | 369                   | 53,874,000                |          |                                     | 대구 달서구 월배로 40길 68                                 | 김강현        |                  |
| 76         | 전   | 전  | 회원읍       | 명곡리 13-1   | 689               | 689                   | 100,594,000               |          |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50길 20<br>204동 1702호<br>(평리동, 평리푸르지오) | 전병태        |                  |
| 77         | 전   | 전  | 회원읍       | 명곡리 13-2   | 1,724             | 1,724                 | 251,704,000               |          |                                     |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0길 4                                | 박외갑 외<br>1 |                  |
| 78         | 전   | 전  | 회원읍       | 명곡리 14     | 855               | 855                   | 124,830,000               |          |                                     |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50길 20<br>204동 1702호<br>(평리동, 평리푸르지오) | 전병태        |                  |
| 79         | 임   | 임  | 회원읍       | 명곡리 산12-1  | 182,794           | 2,411                 | 5,545,300                 |          |                                     |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21길<br>58-7<br>영동김씨대<br>구화중외<br>1     |            |                  |
| 80         | 대   | 대  | 하빈면       | 포리 635     | 1,488             | 1,488                 | 193,886,400               | 2019.3.  | 육신사공영<br>주차장 조성                     |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8길<br>50, 106동 601호                   | 박종무        | 2018.12월<br>의회의결 |
| 81         | 대   | 대  | 하빈면       | 포리 636     | 2,352             | 2,352                 | 297,528,000               |          |                                     | 대구 동구 동부로 34길 64<br>나동 107호                       | 박진우        |                  |
| 82         | 대   | 대  | 하빈면       | 포리 636-1   | 200               | 200                   | 25,300,000                |          |                                     |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 8길<br>50, 106동 601호                   | 박종무        |                  |
| 83         | 답   | 답  | 회원읍       | 본리리 1296-2 | 59                | 59                    | 2,938,200                 | 2019.7.  | 마비정<br>벽화마을<br>주차장 조성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00                                  | 곽경애        | 2018.12월<br>의회의결 |
| 84<br>(기타) | 임   | 임  | 회원읍       | 본리리 1314   | 6,883             | 1,040                 | 1,995,000,000<br>(건축비)    |          |                                     |                                                   | 달성군        |                  |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취득<br>대상<br>수량<br>(㎡) | 대장가액(원)<br>(공시지가<br>× 면적) | 취득<br>시기                                     | 취득<br>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br>사실 | 소 재 지 | 일단의<br>수 량<br>(㎡) |     | 주 소  |                       |                           |                                              |                  | 성 명                 |        |    |
| 85 | 전        | 전     | 구지면               | 도동리 | 40-2 | 34                    | 7,310,000                 | 2018.10.<br>~2019.6.<br>도동서원<br>주변정비<br>(변경) | 2018.12월<br>의회의결 | 대구 달서구 성당로33길 38    | 김길동    |    |
| 86 | 도        | 도     | 구지면               | 도동리 | 41-1 | 71                    | 14,342,000                |                                              |                  |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574    | 김태욱    |    |
| 87 | 도        | 도     | 구지면               | 도동리 | 42-1 | 52                    | 10,504,000                |                                              |                  |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 김태우    |    |
| 88 | 전        | 전     | 구지면               | 도동리 | 42-2 | 36                    | 7,740,000                 |                                              |                  |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 김태우    |    |
| 89 | 전        | 전     | 구지면               | 도동리 | 43   | 155                   | 38,052,480                |                                              |                  | 대구 동구 용진길 22-15     | 김대식외2명 |    |
| 90 | 도        | 도     | 구지면               | 도동리 | 43-1 | 176                   | 35,552,000                |                                              |                  |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10 | 김영식    |    |
| 91 | 전        | 전     | 구지면               | 도동리 | 43-2 | 244                   | 52,459,980                |                                              |                  | 대구 동구 용진길 22-15     | 김대식외2명 |    |
| 92 | 도        | 도     | 구지면               | 도동리 | 44-1 | 27                    | 6,142,500                 |                                              |                  |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 이재철    |    |
| 93 | 도        | 도     | 구지면               | 도동리 | 45-1 | 154                   | 35,035,000                |                                              |                  |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10 | 김한용    |    |
| 94 | 전        | 전     | 구지면               | 도동리 | 45-2 | 267                   | 69,153,000                |                                              |                  | 대구 동구 용진길 22-15     | 김대식외2명 |    |
| 95 | 도        | 도     | 구지면               | 도동리 | 46-1 | 166                   | 39,923,000                |                                              |                  |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 이재철    |    |
| 96 | 전        | 전     | 구지면               | 도동리 | 46-2 | 96                    | 24,240,000                |                                              |                  |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 이재철    |    |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취득 대상 수량 (㎡) | 대장가액(원)<br>(공시지가<br>× 면적)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 재 지     |              | 일단의 수 량 (㎡) |              |                           |                                         |                  | 주 소                 | 성 명    |    |
| 97          | 대   | 대  | 구지면       | 도동리 54       | 314         | 314          | 167,362,000               | 2018.10.<br>~2019.6.<br>도동서원 주변 정비 (변경) | 2018.12월<br>의회의결 |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 김희석    |    |
| 98          | 전   | 전  | 구지면       | 도동리 54-1     | 979         | 979          | 277,057,000               |                                         |                  |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 김희석    |    |
| 99          | 대   | 대  | 구지면       | 도동리 55       | 165         | 165          | 72,435,000                |                                         |                  |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    | 이재철    |    |
| 100         | 대   | 대  | 구지면       | 도동리 57       | 1,471       | 1,471        | 630,323,500               |                                         |                  |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 김태우    |    |
| 101         | 임   | 임  | 구지면       | 도동리 58       | 602         | 602          | 87,290,000                |                                         |                  |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7       | 김태우    |    |
| 102         | 대   | 대  | 구지면       | 도동리 59       | 463         | 463          | 196,312,000               |                                         |                  | 대구 수성구 신원동로 84길 47  | 김윤화    |    |
| 103         | 임   | 임  | 구지면       | 도동리 60       | 374         | 374          | 46,376,000                |                                         |                  | 대구 수성구 신원동로 84길 47  | 김윤화    |    |
| 104         | 전   | 전  | 구지면       | 도동리 71       | 107         | 107          | 57,833,500                |                                         |                  |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 김희석    |    |
| 105<br>(건물) | 대   | 대  | 구지면       | 도동리 54       | 189.6       | 189.6        | 79,058,000                |                                         |                  |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07    | 김희석    |    |
|             | 대   | 대  | 구지면       | 도동리 55<br>56 | 1,264.1     | 1,264.1      | 238,593,250               |                                         |                  |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26-8  | 김윤동외3명 |    |
|             | 대   | 대  | 구지면       | 도동리 57       | 330.2       | 330.2        | 69,325,000                |                                         |                  |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2-3  | 김정자외1명 |    |
|             | 대   | 대  | 구지면       | 도동리 59       | 572         | 572          | 110,820,000               |                                         |                  |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716-12 | 김윤화    |    |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취득 대상 수량 (㎡) | 대장가액(원)<br>(공시지가<br>× 면적) | 취득 시기 | 취득 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재지       | 소제지 | 일단의 수량 (㎡)  |              |                           |       |                          | 주 소                                                | 성 명 |                         |
| 106<br>(건물) | 임   | 임  | 옥포읍       | 기세리 | 598,<br>599 | 414.6        | 1,500,000,000<br>(건축비)    | 2019  | 낙경정 선비<br>문화체험관<br>조성    | 달성군 논공읍<br>달성군청로 33                                | 달성군 | 2019.<br>3월<br>의회<br>의결 |
| 107<br>(건물) | 대   | 대  | 현풍읍       | 상리  | 627         | 942          | 2,800,000,000<br>(건축비)    | 2019  | 달성문화원<br>증축              | 달성군 논공읍<br>달성군청로 33                                | 달성군 |                         |
| 108         | 대지  | 대지 | 하빈면       | 묘리  | 635         | 1,488        | 193,886,400               | 2019  | 육신사 공영<br>주차장 토지<br>기부채납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br>8길 50, 106동 601호<br>(노량진동, 우성아파트) | 박종무 |                         |

#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 추 가

| 연번        | 지 목 |    | 재 산 의 표 시 |     |                   | 취득<br>대상<br>수량<br>(㎡) | 대장가액(원)<br>(공시지가<br>× 면적) | 취득<br>시기 | 취득<br>사유               |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            |    | 비고 |
|-----------|-----|----|-----------|-----|-------------------|-----------------------|---------------------------|----------|------------------------|-------------------------------------------------------|------------|----|----|
|           | 공부  | 사실 | 소재지       |     | 일단의<br>수 량<br>(㎡) |                       |                           |          |                        | 주 소                                                   | 성 명        |    |    |
| 1         | 임   | 임  | 옥포읍       | 기세리 | 산85-2             | 55,636                | 68,988,640                | 2019.7   | 옥연지 기세<br>임도 조성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br>1970 201동 1902호<br>(남산동, 남산휴먼시아2단지) | 석병호        |    |    |
| 2         | 장   | 장  | 구지면       | 예현리 | 757-12            | 7,598.2               | 1,892,711,620             | 2019.7   | 장애인재활<br>자립작업장<br>확장이전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br>27번길 34<br>시화공단 1나 309호              | 주식회사<br>영완 |    |    |
| 3<br>(건물) | 장   | 장  | 구지면       | 예현리 | 757-12            | 1,452                 | 525,551,400               |          |                        |                                                       |            |    |    |
| 4<br>(건물) | 장   | 장  | 구지면       | 예현리 | 757-12            | 900                   | 1,800,000,000<br>(건축비)    | 2019.12  |                        | 달성군 논공읍<br>달성군청로 33                                   | 달성군        | 신축 |    |
| 5<br>(건물) | 채육  | 채육 | 유가읍       | 상리  | 971               | 4,612                 | 19,385,000,000<br>(사업비)   | 2022.1   | 화석박물관<br>건립            | "                                                     | "          | "  |    |
| 6<br>(건물) | 채육  | 채육 | 유가읍       | 상리  | 971               | 5,358                 | 13,000,000,000<br>(사업비)   | 2021.12  | 테크노스포츠<br>센터 건립        | "                                                     | "          | "  |    |
| 7         | 전   | 전  | 현풍읍       | 지리  | 1144              | 430                   | 37,840,000                | 2019.8   | 마을단위 공영<br>주차장 조성      | 달성군 현풍읍 지동1길 43<br>(지리, 한원당고택)                        | 김백용        |    |    |
| 8         | 임   | 임  | 현풍읍       | 지리  | 1145-1            | 1,632                 | 143,676,000               |          |                        |                                                       | "          | "  | "  |

# 위 치 도

## 【옥연지 기세 임도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산85-2번지



# 위 치 도

##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57-12번지



# 현 장 사 진

##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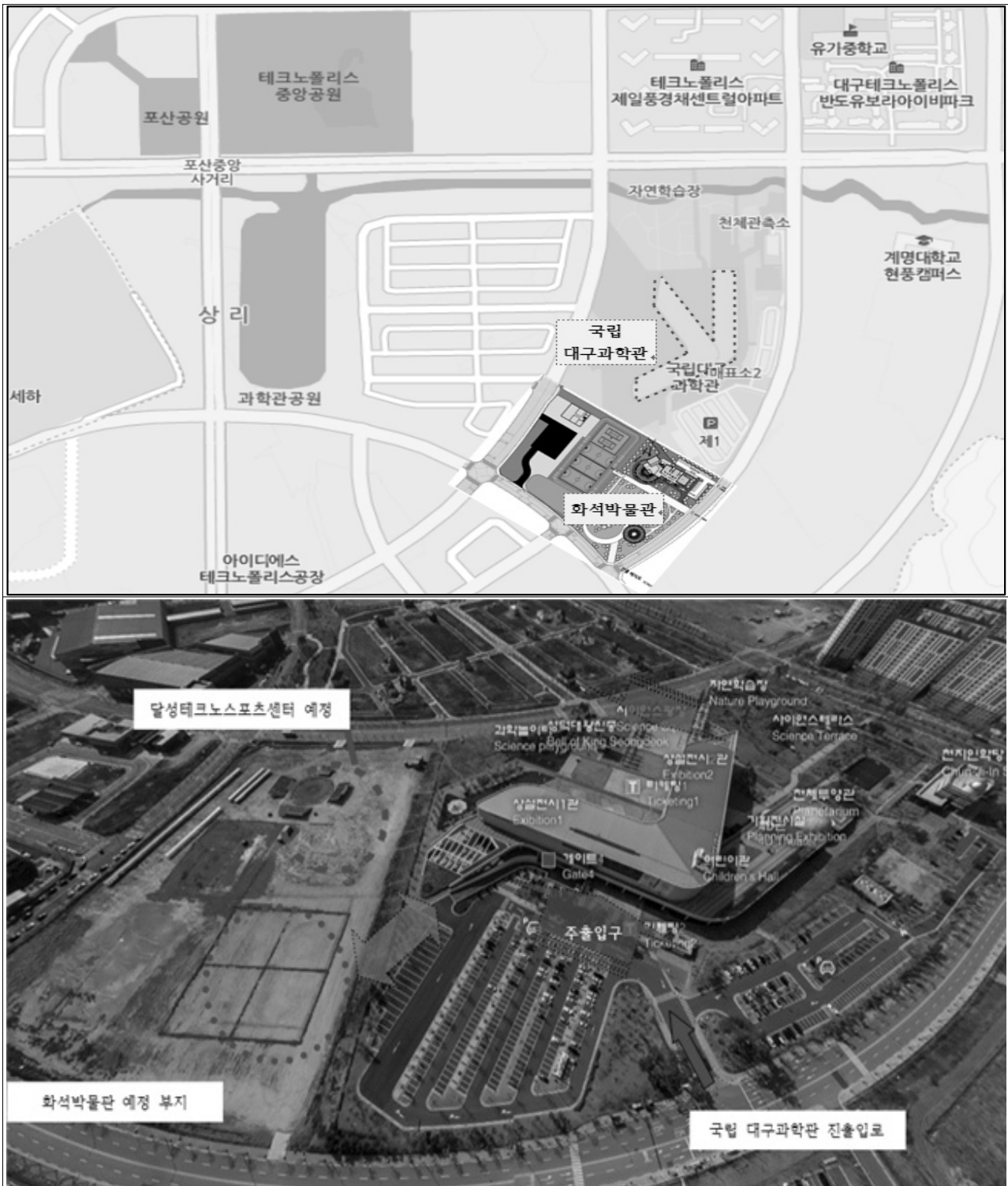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 757-12번지



# 위 치 도

##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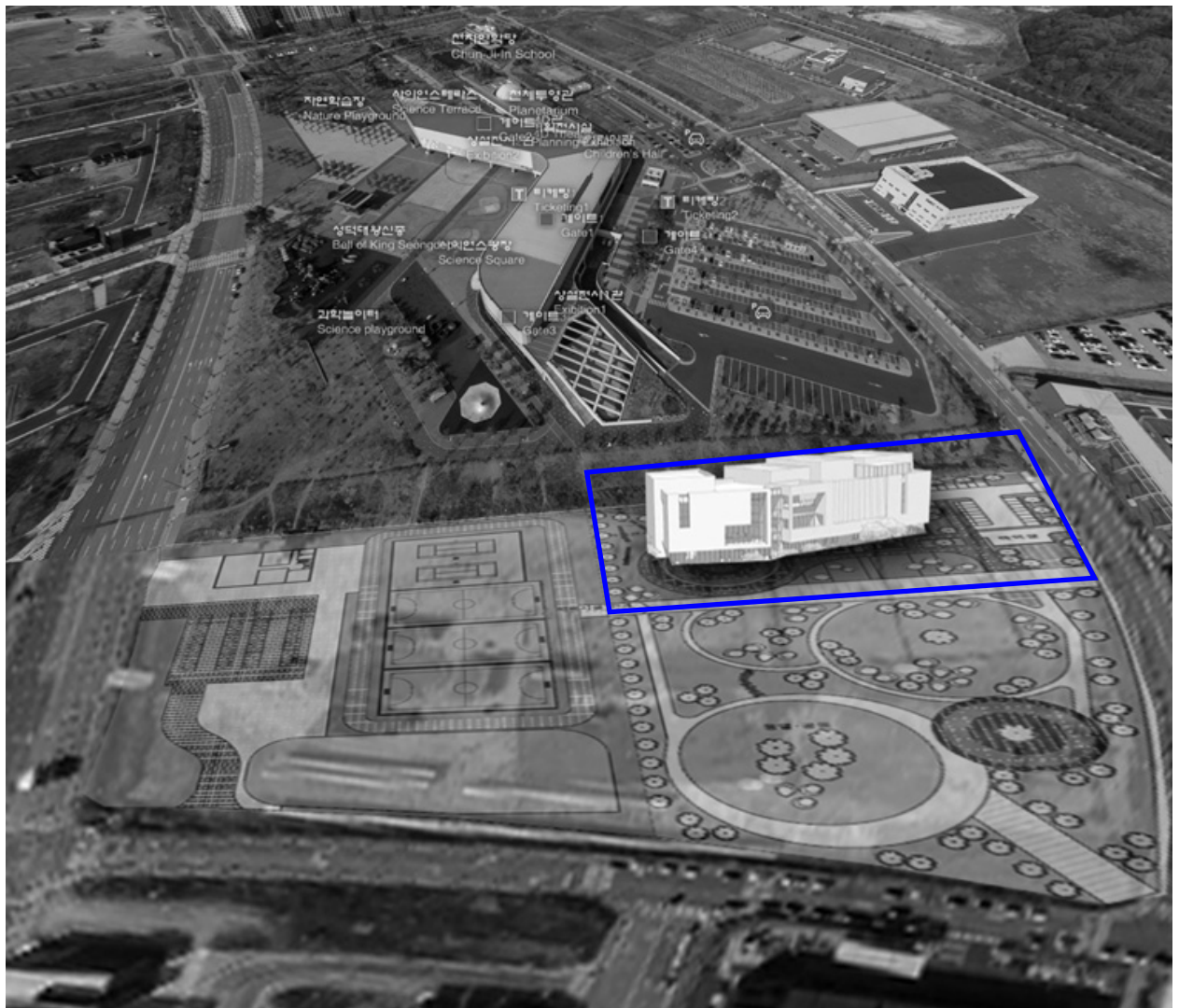




# 조 감 도

##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사업】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번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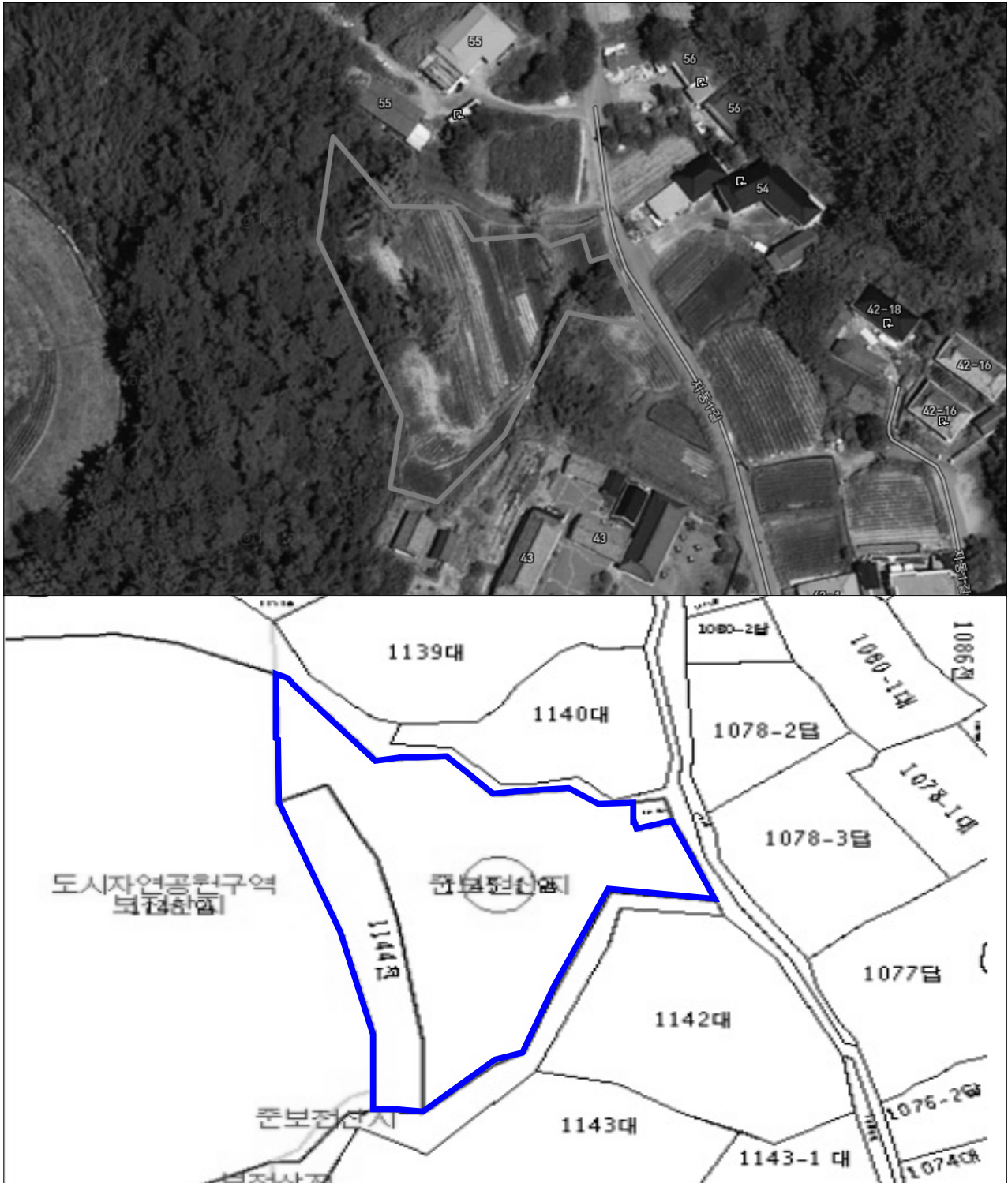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번지



# 위 치 도

##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지리 1144번지 외 1필지





# 현 장 사 진

##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지리 1144번지 외 1필지



## II. 검토의견

2019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 옥연지 기세임도 조성

-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인 옥연지 송해공원 및 산림욕장과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권 임도를 조성함으로써 산림문화·휴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 송해공원과 산림욕장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도입으로 송해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

- 現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사업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작업 및 적재공간이 협소하여 확장 이전을 통해 장애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 상대적으로 구직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작업장 확장 이전을 통해 근로기회 확대 제공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 이전 후 기존 작업장은 장애인들의 복지관 이용수요에 맞춰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실 등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장애인 복지 확대차원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달성 화석 박물관 건립

-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 사업은 2019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로 소장 화석 가치, 우수한 입지여건, 우리 군 건립의지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 전국 최초 화석전문박물관 건립으로 인근 국립대구과학관과 얼마전 유치가 확정된 어린이 체험관 등을 연계한 전국 최고 학생교육투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

- 최근 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참여 증가로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함과 아울러, 지역의 장기적 미래비전 등을 고려하여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마을 내 공동주차장의 부재로 주차공간이 부족함과 아울러,
- 한훤당 고택 방문객의 증가로 마을 내 주정차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인근 타 부지 매입 어려움 등으로 대상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으로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 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 안 자 : 달성군수

## 2. 제안이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당면한 군정 주요시책사업, 생활 SOC 관련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주민의 안전 및 민생과 관련한 추경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게 된 것임.

## 4. 예산총괄

###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 추경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감     |
|---------|-----------|---------|---------|--------|
| 총 계     |           | 812,300 | 770,300 | 42,000 |
| 일 반 회 계 |           | 803,000 | 761,000 | 42,000 |
| 특 별 회 계 |           | 9,300   | 9,300   | 0      |
|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 2,767   | 2,767   | 0      |
|         | 의료급여기금    | 610     | 610     | 0      |
|         | 기반시설      | 115     | 115     | 0      |
|         | 치수사업      | 5,808   | 5,808   | 0      |

##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장 관 별      | 추경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 증감율(%) |
|------|------------|---------|---------|--------|--------|
| 총 계  |            | 812,300 | 770,300 | 42,000 | 5.45   |
| 일반회계 | 계          | 803,000 | 761,000 | 42,000 | 5.52   |
|      | 지방세수입      | 165,698 | 162,698 | 3,000  | 1.84   |
|      | 세외수입       | 32,954  | 32,951  | 3      | 0.01   |
|      | 경상적세외수입    | 24,297  | 24,297  | 0      | 0.00   |
|      | 임시적세외수입    | 8,657   | 8,654   | 3      | 0.03   |
|      | 지방교부세      | 140,974 | 137,417 | 3,557  | 2.59   |
|      | 조정교부금등     | 55,381  | 53,231  | 2,150  | 4.04   |
|      | 보조금        | 277,576 | 276,280 | 1,296  | 0.47   |
|      | 국고보조금등     | 194,902 | 194,406 | 496    | 0.26   |
|      | 사·도비보조금등   | 82,674  | 81,874  | 800    | 0.98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130,417 | 98,423  | 31,994 | 32.51  |
| 특별회계 |            | 9,300   | 9,300   | 0      | 0.00   |

### 3) 회계별 세출총괄

####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 구분   | 분야별     | 추경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 증감율(%) |
|------|---------|---------|---------|--------|--------|
| 총 계  |         | 812,300 | 770,300 | 42,000 | 5.45   |
| 일반회계 | 계       | 803,000 | 761,000 | 42,000 | 5.52   |
|      | 일반공공행정  | 48,775  | 45,362  | 3,413  | 7.53   |
|      | 공공질서및안전 | 13,073  | 13,043  | 30     | 0.23   |
|      | 교육      | 11,059  | 11,011  | 48     | 0.44   |
|      | 문화및관광   | 60,538  | 54,179  | 6,359  | 11.74  |
|      | 환경보호    | 21,249  | 20,875  | 374    | 1.79   |
|      | 사회복지    | 267,867 | 260,933 | 6,934  | 2.66   |
|      | 보건      | 16,791  | 16,786  | 5      | 0.03   |
|      | 농림해양수산  | 44,477  | 44,378  | 99     | 0.22   |
|      | 산업·중소기업 | 2,871   | 2,461   | 410    | 16.65  |
|      | 수송및교통   | 149,226 | 129,747 | 19,479 | 15.01  |
|      | 국토및지역개발 | 56,935  | 51,363  | 5,572  | 10.85  |
|      | 예비비     | 16,198  | 19,274  | △3,075 | △15.96 |
|      | 기타      | 93,941  | 91,589  | 2,352  | 2.57   |
| 특별회계 |         | 9,300   | 9,300   | 0      | 0.00   |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추경예산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 증감율(%) |
|------------------|-----------|---------|---------|--------|--------|
| 총 계              |           | 812,300 | 770,300 | 42,000 | 5.45   |
| 일<br>반<br>회<br>계 | 계         | 803,000 | 761,000 | 42,000 | 5.52   |
|                  | 인건비       | 79,569  | 79,440  | 129    | 0.16   |
|                  | 물건비       | 45,104  | 42,341  | 2,763  | 6.52   |
|                  | 경상이전      | 357,239 | 355,938 | 1,301  | 0.37   |
|                  | 자본지출      | 294,217 | 255,564 | 38,653 | 15.12  |
|                  | 시설비및부대비   | 268,881 | 234,198 | 34,683 | 14.81  |
|                  | 민간자본이전    | 15,211  | 12,467  | 2,744  | 22.01  |
|                  |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1,548   | 1,516   | 32     | 2.09   |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752     | 738     | 14     | 1.97   |
|                  | 자산취득비     | 7,825   | 6,645   | 1,180  | 17.75  |
|                  | 융자및출자     | 10      | 10      | 0      | 0.00   |
|                  | 내부거래      | 6,779   | 6,779   | 0      | 0.00   |
|                  | 예비비및기타    | 20,082  | 20,928  | △846   | △4.04  |
|                  | 예비비       | 16,198  | 19,274  | △3,075 | △15.96 |
|                  | 반환금기타     | 3,884   | 1,654   | 2,230  | 134.77 |
| 특 별 회 계          |           | 9,300   | 9,300   | 0      | 0.00   |

## 5. 주요 내용

### □ 예산규모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7,703억 원 보다 420억 원(증 5.45%)이 증가된 8,123억 원입니다.

### ○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610억 원 보다 420억원이 증액된 8,0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소득세 30억 원,

다목적 CCTV 설치사업,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정비,

도시공원 수경시설 설치 등

시 조정교부금으로 21억 5천만 원,

보통교부세 2018년 정산분 3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포함한 12억 9천만 원,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확장 이전 56억 원,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15억 원,  
화원읍 청사 부지매입 9억 5천만 원,  
주요시책 추진 홍보 등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 7억 원,  
금호강변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다목적용 CCTV설치 2억 원,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정비 8억 원,  
도시공원 수경시설 설치 12억 원,

국가산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등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3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및 재난예방 위해  
가뭄대책관리, 소규모 하천 정비,  
재난취약계층 소방설비 지원 등을  
포함한 16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 총 50건에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선, 농로 확포장사업 등  
5건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에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결산에 따른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위해  
기정예산 192억 7천 3백만 원 중에서  
30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 2019년 제2회 추경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 사업명                                      | 기정액   | 제2회 추경 | 요구액   | 비고                          |
|--------|------------------------------------------|-------|--------|-------|-----------------------------|
| 기획예산실  | 군정홍보 언론광고료 등                             | 1,194 | 2,553  | 1,359 |                             |
| 기획예산실  | 달성소식지 발간                                 | 200   | 240    | 40    |                             |
| 법무감사실  | 업무수행용 차량(합동평가 인센티브)                      | 0     | 60     | 60    | 인센티브<br>광역보조6천              |
| 자치행정과  |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 180   | 250    | 70    |                             |
| 회계과    | 청사 공기청정기 임대료                             | 0     | 26     | 26    |                             |
| 회계과    | 화원읍 청사 부지 확장                             | 0     | 950    | 950   |                             |
| 정보통신과  | 상황실 영상 및 방송장비 교체                         | 0     | 74     | 74    |                             |
| 정보통신과  | 다목적용 CCTV설치                              | 0     | 200    | 200   | 조정교부금<br>2억                 |
| 일자리경제과 | 고용안정사업관리운영(B2B/B2C<br>오픈마켓 전문셀러 전문인력 양성) | 0     | 59     | 59    |                             |
| 일자리경제과 |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0     | 367    | 367   | 국비공모<br>국고보조1억5천/<br>광역보조6천 |
| 농업정책과  |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사업                            | 0     | 36     | 36    | 시비<br>광역보조1천8백만             |
| 농업정책과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 33    | 50     | 17    | 국시비                         |
| 청소위생과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 112   | 228    | 117   | 시비보조<br>광역보조5천8백만           |
| 공원녹지과  | 국가산단조경지관리및국도5호선<br>가로변정비사업등              | 0     | 160    | 160   |                             |
| 공원녹지과  |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정비                           | 0     | 800    | 800   | 조정교부금<br>7억                 |
|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 수경시설 설치                             | 0     | 1,200  | 1,200 | 조정교부금<br>10억                |
| 공원녹지과  | 시설관리공단<br>(옥연지 송해공원 매점) 경상전출금            | 143   | 183    | 40    |                             |
| 공원녹지과  | 옥연지 산림욕장 및 둘레길 사면정비                      | 0     | 150    | 150   |                             |
| 공원녹지과  | 산불진화차                                    | 51    | 153    | 102   |                             |
| 공원녹지과  | 산지구분도 정비용역                               | 0     | 20     | 20    |                             |
| 복지정책과  | 경로당 신축(가천리)                              | 0     | 170    | 170   |                             |
| 희망지원과  |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이전<br>(감리비 포함)              | 0     | 5,600  | 5,600 |                             |
| 교통과    | 택시· 시내버스부착 군정홍보 광고료                      | 0     | 180    | 180   |                             |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 사 업 명                                | 기정액   | 제2회<br>추경 | 요구액   | 비고              |
|-------|--------------------------------------|-------|-----------|-------|-----------------|
| 교통과   | 도시생활환경개선<br>(창조문화바람 High-Five(5) 현풍) | 0     | 850       | 850   |                 |
| 교통과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br>보수 및 정비 등            | 900   | 1,300     | 400   |                 |
| 교통과   |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                          | 0     | 60        | 60    | 시비<br>광역보조2천5백만 |
| 교통과   | 현풍 지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0     | 650       | 650   |                 |
| 교통과   | 현풍 하리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 0     | 850       | 850   |                 |
| 건설과   | 화원 성산1리(마을회관 북편)<br>도시계획도로 개설        | 368   | 448       | 80    |                 |
| 건설과   | 화원 천내리(주원교회 옆)<br>도시계획도로 개설          | 4,200 | 4,700     | 500   |                 |
| 건설과   | 화원 본리리(인흥마을)<br>도시계획도로 개설            | 1,600 | 2,700     | 1,100 |                 |
| 건설과   | 화원본리4리(46-10번지선외1개소)<br>도시계획도로개설     | 100   | 400       | 300   |                 |
| 건설과   | 논공 삼리리(승호마을)<br>도시계획도로 개설            | 457   | 567       | 110   |                 |
| 건설과   | 다사 문산리 장수식당 일원<br>도시계획도로 개설          | 1,050 | 2,050     | 1,000 |                 |
| 건설과   | 다사 매곡리 다사중학교 옆<br>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220       | 220   |                 |
| 건설과   | 가창 단산리(277번지선)<br>도시계획도로 개설          | 496   | 1,096     | 600   |                 |
| 건설과   |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                         | 100   | 1,000     | 900   |                 |
| 건설과   | 하빈 하산1리 천주교 앞<br>도시계획도로 개설           | 400   | 600       | 200   |                 |
| 건설과   | 하빈 무등1리(마을회관뒤)<br>도시계획도로 개설          | 60    | 80        | 20    |                 |
| 건설과   | 옥포 강림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 250   | 500       | 250   |                 |
| 건설과   | 옥포 간경리(마을회관앞)<br>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300       | 300   |                 |
| 건설과   | 옥포강림리(보금자리주택주변)<br>도시계획도로개설          | 0     | 100       | 100   |                 |
| 건설과   | 옥포 교항1리(1336번지선)<br>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300       | 300   |                 |
| 건설과   | 옥포기세리(소로3류-옥144호선)<br>도시계획도로개설       | 100   | 450       | 350   |                 |
| 건설과   | 옥포 강림1리 900번지선<br>도시계획도로 개설          | 50    | 150       | 100   |                 |
| 건설과   | 옥포 본리1리 965번지선<br>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200       | 200   |                 |
| 건설과   | 옥포 신당리 1351번지선<br>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800       | 800   |                 |
| 건설과   | 옥포 강림리(공단옆)<br>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300       | 300   |                 |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 사 업 명                          | 기정액   | 제2회<br>추경 | 요구액   | 비고 |
|-------|--------------------------------|-------|-----------|-------|----|
| 건설과   | 옥포본리리913번지선외1개소<br>도시계획도로개설    | 1,100 | 1,200     | 100   |    |
| 건설과   | 옥포 김흥리 마을회관 앞<br>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200       | 200   |    |
| 건설과   | 옥포 본리1리 2188-4번지선<br>도시계획도로 개설 | 400   | 700       | 300   |    |
| 건설과   | 옥포 본리1리 2196번지선<br>도시계획도로 개설   | 799   | 2,499     | 1,700 |    |
| 건설과   | 옥포 송해공원~기세교차로간<br>도시계획도로 개설    | 999   | 3,999     | 3,000 |    |
| 건설과   | 옥포 본리리 2403-1번지선<br>도시계획도로 개설  | 1,100 | 1,230     | 130   |    |
| 건설과   | 현풍 부1리(우성하이츠옆)<br>도시계획도로 개설    | 400   | 550       | 150   |    |
| 건설과   | 현풍 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300       | 300   |    |
| 건설과   | 현풍 상1리(현풍향교진입)<br>도시계획도로 개설    | 200   | 300       | 100   |    |
| 건설과   | 현풍 하리 보건소 뒤편<br>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100       | 100   |    |
| 건설과   | 구지 가천리 마을회관앞<br>도시계획도로 개설      | 200   | 550       | 350   |    |
| 건설과   | 구지 창리 구지중학교옆<br>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500       | 500   |    |
| 건설과   | 구지 창리(472-2번지선)<br>도시계획도로 개설   | 200   | 500       | 300   |    |
| 건설과   | 논공 상리 770번지선<br>도시계획도로 개설      | 0     | 100       | 100   |    |
| 건설과   | 옥포 기세리 522번지선<br>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0     | 50        | 50    |    |
| 건설과   | 도로 긴급보수비                       | 700   | 1,000     | 300   |    |
| 건설과   | 다사 문산리 437번지 일원<br>도로확포장       | 0     | 200       | 200   |    |
| 건설과   | 구지 예현리 301~310간(예현마을)<br>도로확장  | 0     | 150       | 150   |    |
| 건설과   | 다사 문양리 748번지(장귀미)<br>도로확포장     | 0     | 100       | 100   |    |
| 건설과   | 논공 노이리 436-2번지(갈실)<br>도로포장     | 0     | 100       | 100   |    |
| 건설과   | 유가읍 용리 비슬산 진입도로 정비             | 0     | 40        | 40    |    |
| 건설과   | 논공 노이리 599-8번지 일원<br>도로확장      | 0     | 300       | 300   |    |
| 건설과   | 다사 서재~세천간 인도설치                 | 0     | 30        | 30    |    |
| 건설과   | 하빈 동곡1리 656-3번지 일원<br>도로정비     | 0     | 30        | 30    |    |
| 건설과   | 화원 명곡~반송 간 도로측구 설치             | 0     | 100       | 100   |    |
| 건설과   | 화원 구라로 도로변 측구정비                | 0     | 50        | 50    |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 사업명                                     | 기정액   | 제2회<br>추경 | 요구액   | 비고   |
|-----------|-----------------------------------------|-------|-----------|-------|------|
| 건설과       | 가창 삼산리 985-10번지 일원<br>도로정비공사            | 0     | 70        | 70    |      |
| 안전<br>방재과 | 재난취약계층 소방설비 지원                          | 0     | 20        | 20    |      |
| 안전<br>방재과 | 소규모 하천 환경 정비<br>(환경정비 및 하상준설)           | 994   | 1,494     | 500   |      |
| 안전<br>방재과 | 지방하천정비<br>(화원 천내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 2,779 | 3,779     | 1,000 |      |
| 안전<br>방재과 | 구지도동리91번지선세천정비공사<br>(기존 도동리 563번지에서 변경) | 199   | 300       | 100   |      |
| 도시과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br>(하빈 기곡리 890번지 일원 농로포장)  | 100   | 200       | 100   |      |
| 도시과       | 가창 찰빵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                       | 700   | 1,700     | 1,000 | 국비공모 |
| 도시과       |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br>(청춘 옥상실험실)               | 0     | 300       | 300   | 국비공모 |
| 도시과       | 하빈PMZ 평화예술센터 운영 및<br>집기비품 등 구입          | 0     | 163       | 163   |      |
| 도시과       | 구지면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br>사업(간판제작설치)          | 0     | 80        | 80    | 국비공모 |
| 도시<br>정비과 | 마을하수도 관리비                               | 220   | 420       | 200   |      |
| 도시<br>정비과 | 논공읍논공중앙로(공단입구~공단1교)<br>하수관거 정비공사        | 596   | 1,246     | 650   |      |
| 도시<br>정비과 | 가창면 대일1리~삼산리 오수관거<br>설치공사               | 1,196 | 1,396     | 200   |      |
| 도시<br>정비과 | 가뭄대책관리                                  | 0     | 150       | 150   |      |
| 도시<br>정비과 | 하빈 하산2리(71번지선)<br>농로 개설공사               | 0     | 100       | 100   |      |
| 도시<br>정비과 | 유가 쌍계2리(328번지선)<br>농로 확포장공사             | 0     | 150       | 150   |      |
| 도시<br>정비과 | 옥포 벚꽃길 산책로<br>주변 가로등 설치공사               | 0     | 200       | 200   |      |
| 건축과       | 빈집정비지원                                  | 30    | 60        | 30    |      |
| 정책<br>사업과 | 달성군 종교인협의회 행사지원 및<br>송해공원 관광 기념품 제작     | 0     | 60        | 60    |      |
| 정책<br>사업과 | 대구시 신청사 유치 관리 인부임                       | 0     | 10        | 10    |      |
| 정책<br>사업과 | 위원회 참석수당                                | 5     | 14        | 9     |      |
| 정책<br>사업과 | 대구시 신청사 유치 관련 홍보비                       | 0     | 555       | 555   |      |
| 정책<br>사업과 | LH분양홍보관 임차료 및 관리비                       | 0     | 52        | 52    |      |
| 정책<br>사업과 |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 통신료                       | 0     | 20        | 20    |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 사업명                                 | 기정액 | 제2회<br>추경 | 요구액   | 비고               |
|------------|-------------------------------------|-----|-----------|-------|------------------|
| 정책<br>사업과  | LH홍보관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 0   | 3         | 3     |                  |
| 문화<br>체육과  | 달천 예술창작공간 기자재 구입                    | 0   | 70        | 70    |                  |
| 문화<br>체육과  |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br>주변 천연잔디 식재           | 300 | 350       | 50    |                  |
| 문화<br>체육과  | 비슬산자연휴양림 상설야외공연장<br>대형차양천막 설치       | 0   | 100       | 100   |                  |
| 문화<br>체육과  | 달성문화재단 운영비(도동서원<br>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음악회) | 0   | 90        | 90    |                  |
| 문화<br>체육과  | 달성문화재단 운영비(문화기획 지원)                 | 120 | 270       | 150   |                  |
| 문화<br>체육과  | 정구부 공용차량 교체                         | 0   | 85        | 85    |                  |
| 문화<br>체육과  | 기타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공사                    | 150 | 300       | 150   |                  |
| 문화<br>체육과  |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br>건립 실시설계 용역           | 0   | 700       | 700   | 국비보조             |
| 문화<br>체육과  | 금호강변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 0   | 800       | 800   | 국비보조<br>기금보조2억4천 |
| 문화<br>체육과  | 달성국민체육센터<br>수영장 시설물 수선공사            | 0   | 50        | 50    |                  |
| 문화<br>체육과  | 달성군민운동장 화장실 수선공사                    | 0   | 50        | 50    |                  |
| 문화<br>체육과  | 달성종합스포츠파크<br>주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 0   | 150       | 150   |                  |
| 문화<br>체육과  | 명곡체육공원 내 축구장<br>인조잔디 교체공사           | 0   | 800       | 800   |                  |
| 관광과        | 사문진 비어 페스티벌 홍보비 등                   | 30  | 60        | 30    |                  |
| 관광과        | 시설관리공단(사문진역사공원)<br>경상전출금            | 969 | 1,207     | 238   | 사문진운영<br>각종재료비등  |
| 관광과        | 사문진역사공원 시설물관리                       | 100 | 150       | 50    |                  |
| 관광과        |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주변정비 등                    | 0   | 1,000     | 1,000 | 특별교부세 10억        |
| 관광과        | 유가사 명상수련원 건립 및 주변정비                 | 0   | 1,100     | 1,100 | 특별교부세 7억         |
| 교육<br>청소년과 | 2019년 직업계고 글로벌<br>현장학습 지원           | 0   | 30        | 30    | 교육부 공모           |
| 교육<br>청소년과 | 2019 달성 국제 청소년 캠퍼리 지원               | 0   | 135       | 135   |                  |
| 농촌<br>지도과  | 십자화과 시설재배 병해충 예방                    | 0   | 32        | 32    |                  |

## 6. 종합적인 검토의견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7,703억 원 보다 420억 원(증 5.45%)이 증액된 8,123억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당면한 군정 주요시책사업, 생활 SOC 관련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주민의 안전 및 민생과 관련한 추경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편성입니다.
- 세입부문에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과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추가재원을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정확한 세입예산의 추계를 통해서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의 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반면에, 대내외적인 다양한 경제여건들의 변수가 작용하는 시장경제에서의 경기변동을 예측하여 정확하게 재정판단을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연초에 그 규모를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기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부족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었어야 합니다.

- 금번 추경과 관련한 목별, 부기별 사업내역 등 추가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타당성 등은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달성군수

2. 제출일자 : 2019년 6월 12일

### 3. 제출이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제134조제1항(결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29조(예비비), 제134조 제1항(결산)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 5. 세입세출 결산규모

#### 1) 총 괄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 수납액       | 지출액     | 차 인 잔 액 |          |          |           |             |            |
|---------|-----------|---------|---------|----------|----------|-----------|-------------|------------|
|         |           |         | 계       | 명시<br>이월 | 사고<br>이월 | 계속비<br>이월 | 보조금<br>집행잔액 | 순세계잉<br>여금 |
| 957,394 | 1,016,165 | 682,762 | 333,403 | 122,841  | 65,826   | 1,362     | 4,388       | 138,986    |

#### ○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수납액 1조 161억 6천 5백만원 중 6천 827억 6천 2백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은 3천 334억 3백만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1천 228억 4천 1백만원, 사고이월이 658억 2천 6백만원, 계속비이월이 13억 6천 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8천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천 389억 8천 6백만원임.



## 2) 일반회계

### 가. 세입

####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946,851 | 1,022,057 | 1,005,601 | 1,045 | 15,411 |

-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천 468억 5천 1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220억 5천 7백만원임.  
징수결정액의 98.4%인 1조 56억 1백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이 10억 4천 5백만원,  
미수납액이 154억 1천 1백만원임.

### 나. 세출

####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 예산성립후<br>증감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br>반납금 | 집행잔액   |
|---------|-------------|---------|---------|---------|------------|--------|
| 730,000 | 216,851     | 946,851 | 680,777 | 190,355 | 4,380      | 71,339 |

- 일반회계 예산액은 7천 300억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2천 168억 5천 1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9천 468억 5천 1백만원임.  
그 중 지출액은 6천 807억 7천 7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천 903억 5천 5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43억 8천만원을 제외한  
713억 3천 9백만원이 집행잔액임.

### 3) 특별회계

#### 가. 세입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기타특별회계 | 10,543 | 10,565 | 10,564 | 0     | 1    |

-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5억 4천 3백만원임.  
 징수결정액은 105억 6천 5백만원으로  
 이중에서 105억 6천 4백만원을 수납하고 1백만원은 미수납됨.

#### 나. 세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
| 기타<br>특별회계 | 9,735 | 10,543 | 1,986 | 0   | 4      | 8,553 |

-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5억 4천 3백만원임.  
 그 중 지출액은 19억 8천 6백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백만원을 제외한  
 85억 5천 3백만원이 집행잔액임.

####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 건수  | 다음연도 이월액 | 비 고                    |
|---------|-----------|-----|----------|------------------------|
| 계       | 계         | 539 | 190,355  | ‘달성군 보건소 이전 신축’ 등 539건 |
| 일 반 회 계 | 명 시 이 월   | 346 | 123,167  |                        |
|         | 사 고 이 월   | 191 | 65,826   |                        |
|         | 계 속 비 이 월 | 2   | 1,362    |                        |
| 특 별 회 계 | 명 시 이 월   | 0   | 0        |                        |
|         | 사 고 이 월   | 0   | 0        |                        |

- 명시이월 346건에 1천 231억 6천 7백만원,  
 사고이월 191건에 658억 2천 6백만원,  
 계속비이월 2건에 13억 6천 2백만원  
 전체 539건에 1천 903억 5천 5백만원이 이월됨.

#### 6. 기금의 결산

#####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년도말<br>조 성 액 | 해당연도 증감액 |     | 해당연도말<br>조 성 액 |
|--------|---------------|----------|-----|----------------|
|        |               | 조성액      | 사용액 |                |
| 계      | 9,098         | 1,453    | 451 | 10,100         |
| 자활기금   | 854           | 47       | 60  | 842            |
| 식품진흥기금 | 190           | 66       | 93  | 163            |
| 재난관리기금 | 7,279         | 1,330    | 277 | 8,331          |
| 체육진흥기금 | 775           | 10       | 20  | 765            |

- 현재 4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90억 9천 8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 5천 3백만원을 조성하고,  
 4억 5천 1백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1억원임.

## 7.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 채 권

####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전년도말 현재액 | 해당연도 발생액 | 해당연도 소멸액 | 해당연도말 현재액 |
|------|----------|----------|----------|-----------|
| 계    | 4,533    | 334      | 599      | 4,268     |
| 일반회계 | 4,412    | 284      | 569      | 4,127     |
| 특별회계 | 1        | 0        | 0        | 1         |
| 기 금  | 120      | 50       | 30       | 140       |

-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5억 3천 3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억 3천 4백만원이 발생하고  
 5억 9천 9백만원이 소멸되어  
 채권현재액은 42억 6천 8백만원임.

### 2) 채 무

#### 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년도말<br>현 재 액 | 해당연도 증감액 |     | 해당연도말<br>현 재 액 |
|---------|---------------|----------|-----|----------------|
|         |               | 발생액      | 소멸액 |                |
| 계       | 0             | 0        | 0   | 0              |
| 일 반 회 계 | 0             | 0        | 0   | 0              |
| 기타특별회계  | 0             | 0        | 0   | 0              |

-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0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으며  
 현재액은 0원임.

### 3) 공유재산

####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br>용도별 | 전년도말<br>현 재 액 | 해당연도 증감액 |     | 해당연도말<br>현 재 액 |
|------------|---------------|----------|-----|----------------|
|            |               | 증        | 감   |                |
| 계          | 1,816,299     | 127,385  | 906 | 1,942,778      |
| 행 정 재 산    | 1,801,635     | 126,756  | 890 | 1,927,501      |
| 일 반 재 산    | 14,664        | 629      | 16  | 15,277         |

- 결산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조 8천 162억 9천 9백만원에서  
1천 264억 7천 9백만원 증가한  
1조 9천 427억 7천 8백만원임.  
증가내역은 달성북부권 복합행정시설 조성사업,  
다사 서재 출장소 주차장 조성사업 및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등임.

### 4) 물 품

#### 물품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전년도말현재액 |       | 증 감 내 역 |       |     |     | 해당연도말현재액 |       |
|---------|-------|---------|-------|-----|-----|----------|-------|
|         |       | 취 득     |       | 처 분 |     |          |       |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수량       | 금 액   |
| 837     | 8,050 | 188     | 1,865 | 84  | 549 | 941      | 9,366 |

- 전년도말 현재액 837건 80억 5천만원에서  
188건, 18억 6천 5백만원 취득하고, 84건, 5억 4천 9백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941건에 93억 6천 6백만원임.  
증가사유는 전기차 3대 등 차량 구입 및 북부노인종합복지관  
물품구입 등 신규 취득으로 발생한 것임.

## 8. 금고의 결산

### 1) 총수입 및 지출액

(단위: 천원)

| 구 분     | 세입 결산액        | 세출 결산액      | 잔 액<br>(금고보관액) |
|---------|---------------|-------------|----------------|
| 계       | 1,016,164,682 | 682,762,270 | 333,402,412    |
| 일 반 회 계 | 1,005,600,779 | 680,776,672 | 324,824,107    |
| 기타특별회계  | 10,563,903    | 1,985,598   | 8,578,305      |

#### ○ 총수입 및 지출액은

세입이 1조 161억 6천 468만 2천원이고  
 세출은 6천 827억 6천 227만원으로  
 잔액이 3천 334억 241만 2천원임.

### 2)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천원)

| 구분 | 전년도말<br>현 재 액 | 해당연도 증감액 |            |            | 해당연도말<br>현 재 액 |
|----|---------------|----------|------------|------------|----------------|
|    |               | 계        | 증가액        | 지출액        |                |
| 계  | 1,065,202     | -120,816 | 12,085,828 | 12,206,644 | 944,386        |

#### ○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0억 6천 520만 2천원이고  
 120억 8천 582만 8천원이 증가하고  
 122억 664만 4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4천 438만 6천원임.

군 금고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의 금액과 일치함.

## 9. 분야별 총평

### 1) 세출예산 집행현황 총괄분석

#### □ 세출예산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 부서명 | 예산현액<br>(A) | 지출액<br>(B)  | 이월액<br>(C)  | 집행잔액<br>(D) | B/A | C/A | D/A |
|-----|-------------|-------------|-------------|-------------|-----|-----|-----|
| 계   | 946,851,149 | 680,776,672 | 190,354,692 | 71,339,596  | 72% | 20% | 8%  |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 없는 이월액(326,000천원)포함

#### □ 전년도 대비 집행율 (일반회계)

(단위: 천원)

| 부서명 | 2017년       |             | 2018년       |             | C/A  | D/B  | 비고 |
|-----|-------------|-------------|-------------|-------------|------|------|----|
|     | 예산현액(A)     | 집행액(B)      | 예산현액(C)     | 집행액(D)      |      |      |    |
| 계   | 865,488,416 | 587,020,258 | 946,851,149 | 680,776,672 | 109% | 116% |    |

#### □ 검토의견

-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과 집행액을 전년도와 비교한 결과, 예산액은 9%, 집행액은 16% 증가하였으며,
- 집행율은 72%, 이월율은 20%, 불용율 8%로,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전년도 보다는 높았지만 예산현액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진사업과 이월예산 대부분이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국에 집중되어 있음.
-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조사, 사업의 타당성 조사강화 및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집행율 제고방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재정운영 목표를 분명히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됨.

## 2) 이월예산 최소화에 노력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백만원)

| 구 분   | 2018년(A) |         | 2017년(B) |         | 2016년 |         | 증감(B-A) |         |
|-------|----------|---------|----------|---------|-------|---------|---------|---------|
|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건수      | 금 액     |
| 명시이월  | 346      | 122,841 | 387      | 157,479 | 341   | 142,444 | -41     | -34,638 |
| 사고이월  | 191      | 65,826  | 185      | 58,633  | 122   | 35,308  | 6       | 7,193   |
| 계속비이월 | 2        | 1,362   | 2        | 739     | 0     | 0       | 2       | 623     |
| 계     | 539      | 190,029 | 574      | 216,851 | 463   | 177,752 | -35     | -26,822 |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전년대비 발생건수와 금액이 각각 41건 및 346억 3천 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사고이월은 6건에 71억 9천 3백만원, 계속 비이월액 2건에 6억 2천 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 서          | 사 업 명                   | 예산현액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이월사유     |
|--------------|-------------------------|--------|-------|--------|----------|
| 교통과          | 창조문화바람 하이파이브현풍          | 5,961  | 2,658 | 1,433  | 공사기간 미도래 |
| 건설과          | 구지창리 665번선<br>도시계획도로 개설 | 2,850  | 2,028 | 0      | 보상협의 지연  |
|              | 다사문양 문양역 진입도로           | 2,491  | 2,444 | 0      | 공사기간 미도래 |
|              | 비슬산휴양림도로 확포장            | 3,500  | 1,500 | 1,942  | 보상협의 지연  |
|              | 가창최정산 도로공사              | 5,836  | 2,335 | 0      | 계약심사 중   |
| 안 전<br>방 재 과 | 다사서재자연재해위험개선<br>지구정비    | 12,554 | 4,217 | 1,831  | 공사기간 미도래 |
|              | 다사서재리일원 우수관로정비          | 3,000  | 1,300 | 1,700  | 공사기간 미도래 |
|              |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 2,348  | 2,329 | 0      | 용역기간 미도래 |
|              | 하빈강문리 매낙소하천정비           | 2,655  | 1,624 | 566    | 공사기간 미도래 |
| 건축과          | 낙경천 선비문화허브              | 2,456  | 2,076 | 230    | 선행절차 지연  |
| 정 책<br>사 업 과 | 경찰특공대 이전부지 교환           | 9,538  | 5,769 | 0      | 보상지연     |
| 보건과          | 달성군보건소 이전신축             | 28,279 | 7,068 | 16,327 | 공사기간 미도래 |



20억 원 이상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은 교통과 ‘창조문화바람-하이파 이브 현풍’, 건설과 ‘가창 최정산 도로공사’ 등 4건, 안전방재과 ‘다사 서재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4건, 건축과 ‘낙.경.청 선비문화허브사업’, 정책사업과 ‘경찰특공대 이전부지 교환사업’, 보건과 ‘달성군 보건소 이전신축공사’ 등입니다.

## □ 검토의견

- 예산이월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선행절차 지연, 보상협의의 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 이해관계인 민원제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도 존재하지만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이월은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여 이월 및 예산 낭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 순세계잉여금 현황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계연도 | 예산현액<br>(가) | 세입<br>(나)     | 세출<br>(다)   | 결산상<br>잉여금<br>(라)=(나)-(다) | 이월액<br>(마)  | 보조금<br>반납액<br>(바) | 순세계<br>잉여금<br>(사) |
|------|-------------|---------------|-------------|---------------------------|-------------|-------------------|-------------------|
| 2018 | 946,851,149 | 1,005,600,779 | 680,776,672 | 324,824,107               | 190,028,692 | 4,383,570         | 130,411,845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의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이월)과 보조금반납액(집행잔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계연도 | 순세계잉여금<br>㉑=[㉒+㉓+㉔]-㉕ | 초과세입금<br>㉒ | 자금없는<br>이월액㉓ | 집행잔액<br>㉔  | 보조금반납금<br>㉕ |
|------|-----------------------|------------|--------------|------------|-------------|
| 2018 | 130,411,845           | 58,749,630 | 326,000      | 75,719,785 | 4,383,570   |
| 2017 | 118,526,319           | 60,900,388 |              | 61,617,009 | 3,991,078   |
| 2016 | 126,168,220           | 44,429,986 | 1,220,000    | 86,144,593 | 5,626,359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매 회계연도 세수의 증가에 따른 초과세입금,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의 발생, 예산절감액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 검토 의견

-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균형재정 실현에도 반하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정밀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4) 기금의 안정적 운용 필요

##### □ 지출 계획액 대비 지출액 비율

(단위 : 천원/ %)

| 구 분    |     | 2016      | 2017      | 2018      | 비 고 |
|--------|-----|-----------|-----------|-----------|-----|
| 총 계    | 계획액 | 1,059,125 | 1,069,340 | 1,613,337 |     |
|        | 지출액 | 145,699   | 135,680   | 437,267   |     |
| 자활기금   | 계획액 | 100,000   | 102,000   | 70,000    |     |
|        | 지출액 | 60,000    | 42,000    | 60,000    |     |
|        | 비 율 | 60        | 41        | 86        |     |
| 식품진흥기금 | 계획액 | 59,940    | 77,340    | 95,337    |     |
|        | 지출액 | 56,668    | 65,680    | 79,443    |     |
|        | 비 율 | 95        | 85        | 83        |     |
| 재난관리기금 | 계획액 | 889,185   | 880,000   | 1,418,000 |     |
|        | 지출액 | 22,831    | 23,300    | 277,423   |     |
|        | 비 율 | 3         | 3         | 20        |     |
| 체육진흥기금 | 계획액 | 10,000    | 10,000    | 30,000    |     |
|        | 지출액 | 6,200     | 4,700     | 20,400    |     |
|        | 비 율 | 62        | 47        | 68        |     |

※ 재무활동(예치금 등) 제외

- 각종 기금의 연도별 지출계획대비 지출액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그 특성상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관련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출용도가 제한적이고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되어 연도별 지출액 간의 편차가 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적 재난 대응 및 복구 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평소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해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10. 개선 및 권고사항

### 1) 예산편성시 사전검토 철저

#### □ 건설사업 예산 중 미발주 현황

(단위: 천원)

| 부서    | 세부사업명                           | 목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불용액       | 미발주 사유                                                       |
|-------|---------------------------------|--------------|------------------------|---------|-----------|------|-----------|--------------------------------------------------------------|
| 건설과   | 화원 천내리(화장사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 401-01 시설비   | 894,330 (명시)           | 0       | 0         |      | 894,330   | 교도소 이전시 재검토                                                  |
|       |                                 | 401-03 시설부대비 | 5,670 (명시)             | 0       | 0         |      | 5,670     |                                                              |
| 건설과   | 화원 천내리 (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 401-01 시설비   | 1,494,600 (명시)         | 6,046   |           |      | 1,488,554 | 교도소 이전시 재검토                                                  |
|       |                                 | 401-03 시설부대비 | 5,400 (명시)             |         |           |      | 5,400     |                                                              |
| 안전방재과 | 논공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401-01 시설비   | 1,300,000 (명시)         | 0       | 0         | 0    | 1,300,000 | 사업취소                                                         |
| 도시과   | 낙.경.청 선비문화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 401-01 시설비   | 2,441,000 (당해, 명시)     | 150,333 | 2,290,667 | -    | -         | 최종보고회 결과에 따른 업무 협의 및 사업변경 지연에 따른 기본 및 실시계획 지연 ('18.12.7. 완료) |
|       |                                 | 401-02 감리비   | 15,000 (당해)            | -       | 15,000    | -    | -         |                                                              |
| 도시과   | 하빈PMZ 평화기념마을조성                  | 201-03 행사운영비 | 50,000 (당해)            | -       | 50,000    | -    | -         | 국제포럼 2회 유찰 및 해외연사 초청문제로 계약지연                                 |
|       |                                 | 207-01 연구용역비 | 23,490 (당해, 명시)        | -       | 23,490    | -    | -         | 용역기간 미도래                                                     |
|       |                                 | 401-01 시설비   | 1,785,096 (당해, 명시, 사고) | 249,776 | 1,535,320 | -    | -         | 하빈PMZ 평화예술센터 건립공사 12월 발주                                     |
|       |                                 | 401-02 감리비   | 30,000 (당해)            | -       | 30,000    | -    | -         | 공사기간 미도래                                                     |

#### □ 검토의견

- 건설도시사업 중 2017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용역기간 미도래 등을 사유로 하여 대부분의 사업 모두 전액 명시·사고 이월하고, 화원 천내리(화장사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대구 교도소 이전 후적지 개발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하나 사전검토 없이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요구되며 관련부서 간 협조 등을 통해 신중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 농로 확장·개설 사업장 선정 및 추진 철저

### □ 보상추진 후 미추진 사업내역(2016~2018)

(단위: 천원)

| 회계연도  | 사 업 명                       | 지출내역    |         |         | 미추진사유                  | 비 고         |
|-------|-----------------------------|---------|---------|---------|------------------------|-------------|
|       |                             | 예산액     | 지출금액    | 불용액     |                        |             |
|       | 합 계                         | 803,372 | 394,427 | 408,945 | 미추진사유<br>(전체/협의완료/미협의) |             |
| 2016년 | 가창 행정2리(퇴계)<br>농로포장공사       | 70,471  | 40,749  | 29,722  | 보상 미협의<br>(8/6/2)      | 2017년<br>불용 |
| "     | 가창 행정1리(767번지선)<br>농로개설공사   | 70,000  | 68,071  | 1,929   | 보상 미협의<br>(16/10/6)    | 2016년<br>불용 |
| "     | 가창 냉천2리(주유소옆)<br>농로포장공사     | 72,670  | 18,165  | 54,505  | 보상 미협의<br>(6/3/3)      | 2017년<br>불용 |
| "     | 가창 정대2리(초곡마을)<br>농로개설공사     | 39,027  | 17,405  | 21,622  | 보상 미협의<br>(10/7/3)     | 2017년<br>불용 |
| "     | 하빈 묘2리(까치실) 배수로<br>및 농로포장공사 | 62,867  | 12,802  | 50,065  | 보상 미협의<br>(16/5/11)    | 2017년<br>불용 |
| "     | 유가 한정1리 농로포장공사              | 56,210  | -       | 56,210  | 보상 미협의<br>(26/13/13)   | 2018년<br>불용 |
| "     | 유가 한정2리 농로확포장공사             | 39,464  | 5,479   | 33,985  | 보상 미협의<br>(25/19/6)    | 2018년<br>불용 |
| "     | 유가 유곡1리 농로개설공사              | 64,506  | -       | 64,506  | 보상 미협의<br>(11/8/3)     | 2017년<br>불용 |
| "     | 유가 본말1리<br>중앙농로확포장공사        | 328,157 | 231,756 | 96,401  | 보상 미협의<br>(37/25/12)   | 2018년<br>불용 |

### □ 검토의견

- 군에서 추진 중인 농로개설공사(농경지 진입용 도로)는 「농어촌도로법」에 의거 노선고시된 도로 이외의 기타 도로로 토지수용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어 편입토지에 대하여 협의 취득이 원칙입니다.
- 사업 초기 예산 편성 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전수 징구하고 설계 및 보상협의 단계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편입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하여 계획된 사업이 중단되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 3)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세입예산 편성 철저

####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213-02)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천원)

| 구 분   | 세입예산<br>(a) | 실수납액<br>(b) | 차액<br>(a)-(b) | 세입예산<br>(a) | 실수납액<br>(b) | 차액<br>(a)-(b) | 세입예산<br>(a) | 실수납액<br>(b) | 차액<br>(a)-(b) |
|-------|-------------|-------------|---------------|-------------|-------------|---------------|-------------|-------------|---------------|
| 회계연도  | 2018        |             |               | 2017        |             |               | 2016        |             |               |
| 총 계   | 2,951,835   | 4,190,402   | -1,238,567    | 2,951,835   | 3,773,383   | -821,548      | 2,652,335   | 3,060,123   | -407,788      |
| 청소위생과 | 2,951,835   | 0           | 2,951,835     | 2,951,835   | 0           | 2,951,835     | 2,652,335   | 0           | 2,652,335     |
| 화 원 읍 | 0           | 863,152     | -863,152      | 0           | 786,784     | -786,784      | 0           | 719,115     | -719,115      |
| 논 공 읍 | 0           | 399,352     | -399,352      | 0           | 363,018     | -363,018      | 0           | 326,344     | -326,344      |
| 다 사 읍 | 0           | 1,324,729   | -1,324,729    | 0           | 1,198,287   | -1,198,287    | 0           | 1,007,012   | -1,007,012    |
| 유 가 읍 | 0           | 410,070     | -410,070      | 0           | 340,083     | -340,083      | 0           | 162,613     | -162,613      |
| 옥 포 읍 | 0           | 298,476     | -298,476      | 0           | 292,635     | -292,635      | 0           | 202,387     | -202,387      |
| 현 풍 읍 | 0           | 477,742     | -477,742      | 0           | 464,701     | -464,701      | 0           | 369,218     | -369,218      |
| 가 창 면 | 0           | 141,603     | -141,603      | 0           | 112,698     | -112,698      | 0           | 103,715     | -103,715      |
| 하 빈 면 | 0           | 68,154      | -68,154       | 0           | 54,154      | -54,154       | 0           | 50,175      | -50,175       |
| 구 지 면 | 0           | 207,124     | -207,124      | 0           | 161,023     | -161,023      | 0           | 119,544     | -119,544      |

- 청소위생과 세입예산대비 각 읍면의 실제수납액의 차액을 비교하면 매년 약 4억원 정도의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이는 곧 순세계잉여금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 검토의견

- 세입예산은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추계가 요구되는 것으로, 매년 마다 인구 증가 등으로 따른 실제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년 수준의 세입예산을 편성해온 결과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연중예라도 변동사항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4) 과태료 수입의 예산 편성 및 징수 철저

##### □ 교통과 과태료 수입 현황

(단위: 천원)

| 회계연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예산대비  | 실제수납액     | 실 제 수납대비 | 미수납액    | 미수납율  |
|------|---------|-----------|-------|-----------|----------|---------|-------|
| 2018 | 562,000 | 2,101,394 | 3.739 | 1,460,139 | 0.695    | 639,048 | 0.304 |
| 2017 | 558,400 | 2,123,902 | 3.804 | 1,297,885 | 0.611    | 826,017 | 0.389 |
| 2016 | 459,400 | 1,612,141 | 3.509 | 1,051,074 | 0.652    | 561,068 | 0.348 |

##### □ 검토의견

- 교통과의 과태료의 경우는 주정차위반 등 법규위반에 부과되는 경우로서 실제예측에 근거하여 예산현액을 세워야 하나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을 비교해보면 350%~380%로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비율도 30%~39%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너무 큰 차이가 나므로 전년도 실적 경험치 등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균형예산에 근접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며, 더불어 징수결정된 부분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비율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5) 성과지표 활용도 미흡

### □ 성과지표 활용 미흡 현황

| 부서명        | 성과지표명                             | 2017  |       | 2018      |           | B/A<br>(%) | 원인<br>분석 | 목표<br>수정 | 예산<br>반영 |
|------------|-----------------------------------|-------|-------|-----------|-----------|------------|----------|----------|----------|
|            |                                   | 목표    | 실적    | 목표<br>(A) | 실적<br>(B) |            |          |          |          |
| 기획<br>예산실  |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비 확보율(%)               | 100   | 150   | 100       | 67        | 67         | 만족       | 부        | 부        |
| 법무<br>감사실  | 군정견문정보보고제 제보건수                    | 8,000 | 9,087 | 3,500     | 6514      | 186        | 만족       | 여        | 부        |
| 자치<br>행정과  | 지방행정역량강화 사업비 집행률(%)               | 90    | 90    | 95        | 83        | 87         | 만족       | 여        | 부        |
| 징수과        | 군세 체납 징수율(%)                      | 38    | 65    | 38        | 63        | 165        | 만족       | 부        | 부        |
| 종합<br>민원과  |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률(%)                  | 49    | 64    | 49        | 58        | 118        | 만족       | 부        | 부        |
| 정보<br>통신과  | 정보화 교육 이수율(%)                     | 100   | 96    | 100       | 95        | 95         | 미흡       | 부        | 여        |
| 일자리<br>경제과 | 상인 만족도 향상(%)                      | 100   | 100   | 100       | 90        | 90         | 미흡       | 부        | 여        |
| 일자리<br>경제과 | 가스판매시설 안전점검(회)                    | 86    | 112   | 86        | 95        | 110        | 만족       | 부        | 부        |
| 환경과        | 슬레이트처리신청 대비 지원율                   | 44    | 59    | 100       | 141       | 146        | 만족       | 여        | 여        |
| 농업<br>정책과  | 쌀소득보전 직불제(농다소득증대)(ha)             | 2,100 | 2,028 | 2,200     | 1,990     | 90         | 만족       | 여        | 여        |
| 농업<br>정책과  | 유기동물보호사업(두)                       | 720   | 757   | 280       | 934       | 299        | 미흡       | 여        | 여        |
| 청소<br>위생과  |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재활용품 및<br>대형폐기물 관리)(%) | 50    | 64    | 50        | 64        | 128        | 미흡       | 부        | 여        |
| 복지<br>정책과  | 보육시설 환경개선 실적(개소)                  | 38    | 28    | 188       | 21        | 11         | 만족       | 여        | 여        |
| 희망<br>지원과  | 자원봉사 활동률(%)                       | 35    | 56    | 31        | 25.2      | 83         | 만족       | 여        | 여        |
| 교통과        |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br>징수액(백만원)          | 200   | 1,014 | 200       | 1,213     | 606        | 미흡       | 부        | 여        |
| 건설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 준공건수(건)                 | 115   | 37    | 115       | 59        | 51         | 만족       | 부        | 부        |
| 도시과        | 공공하수도설치 사업진도율(%)                  | 100   | 70    | 100       | 75        | 75         | 미흡       | 부        | 여        |
| 건축과        |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율(%)                   | 80    | 70.3  | 88        | 66.6      | 74         | 만족       | 부        | 부        |
| 정책<br>사업과  | 지역발전정책개발사업비 집행률(%)                | 80    | 76    | 80        | 63        | 79         | 미흡       | 부        | 여        |
| 보건과        | 금연클리닉 등록자 6개월 성공률(%)              | 42    | 51.6  | 33        | 19.6      | 59         | 미흡       | 여        | 부        |



## □ 검토의견

- ‘성과지표’의 목표설정 근거가 전반적으로 미흡합니다. 목표지표를 가급적 사업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수정하여 업적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목표설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따라 작성되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 적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본래 취지에 맞게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성과계획서 작성 전에 성과목표 설정 등에 대한 각 부서 사전 교육을 통해 적절한 목표설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 성과보고서 작성부서에서는 보고서 제출 전에 충분한 검토 및 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7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 3. 제안사유

-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

###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군수 및 학부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5조)
-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5.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군수의 책무
- 안 제6조~ 제7조에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에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건전하고 명량한 학교분위기 조성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달성군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단체”란 학교폭력예방 또는 대책활동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공익 목적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대구달성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등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철거나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배움터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그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군의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

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과)장 또는 장학사, 대구달성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및 달성군 교육담당부서 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1. 달성군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5.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달성군 또는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협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협의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이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배포 및 홍보
5.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상담 및 지원

③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사항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자문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7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깍연”을 “흡연”으로 개정(안 제74조 제4호 및 제80조 제4호)

5. 참고자료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 행정안전부의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74조 제4호 및 제80조 제4호에 “꺽연” 을 “흡연” 으로 개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규칙안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중 “4. 음식물의 섭취와 껌연”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으로 한다.

제80조 중 “4. 음식물의 섭취와 껌연행위”를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행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u>제74조(회의의 질서 유지)</u><br>1.~ 3.(생략)<br>4. 음식물의 섭취와 <u>깍연</u><br>5.~ 6.(생략) | <u>제74조(회의의 질서 유지)</u><br>1.~ 3.(현행과 같음)<br>4. _____ 흡연<br>5.~ 6.(현행과 같음)     |
| <u>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u><br>1.~ 3.(생략)<br>4. 음식물의 섭취나 깍연행위<br>5.~ 8.(생략)      | <u>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u><br>1.~ 3.(현행과 같음)<br>4. _____ 흡연____<br>5.~ 8.(현행과 같음) |

## 참고

## 참 고 자 료

###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법제처)

| 번호 | 정비 대상 용어 |       | 순화 용어                     |
|----|----------|-------|---------------------------|
|    | 한글       | 한자·원어 |                           |
| 1  | 기납       | 既納    | 기납, 이미V납                  |
| 2  | 기도       | 企圖    | 기도, 꾀함                    |
| 3  | 기립       | 起立    | 기립, 일어섬                   |
| 4  | 기립하다     | 起立    | 일어서다                      |
| 5  | 기만       | 欺瞞    | 속임, 기만                    |
| 6  | 기망       | 欺罔    | 속임                        |
| 7  | 기반       | 基盤    | 기반                        |
| 8  | 기산하다     | 起算    | ~부터 계산하다, 기산(起算)하다        |
| 9  | 기상시간     | 起床時間  | 기상V시간                     |
| 10 | 기선       | 基線    | 기준선                       |
| 11 | 기설       | 既設    | 이미 설정, 이미 만들              |
| 12 | 기성고      | 既成高   | 성과, 실적, [돈]일 때] 기성액       |
| 13 | 기성의      | 既成    | 기성, 기성의, 이루어진             |
| 14 | 기속       | 羈束    | 기속                        |
| 15 | 기수의      | 既遂    | 기수(既遂)의                   |
| 16 | 기승하다     | 騎乘    | (말을) 타다                   |
| 17 | 기아       | 棄兒    | 버려진 아이, 기아, 기아(棄兒)        |
| 18 | 기안       | 起案    | 기안                        |
| 19 | 기어       | gear  | 기어, 변속장치                  |
| 20 | 기여하다     | 寄與    | 이바지하다, 기여하다               |
| 21 | 기예       | 技藝    | 기예                        |
| 22 | 기왕       | 既往    | 이미, 벌써, 그전, 이전            |
| 23 | 기왕증      | 既往症   | 과거V 질병, 과거V 증세            |
| 24 | 기율       | 紀律    | 규율                        |
| 25 | 기인       | 起因    | 원인, 까닭, 인하여, 기인           |
| 26 | 기일       | 期日    | 기일, 특정한 날이나 기간            |
| 27 | 기일       | 忌日    | 제삿날, 기일                   |
| 28 | 기장       | 旗章    | 기장(旗章)                    |
| 29 | 기장       | 記帳    | 장부V기록                     |
| 30 | 기장하다     | 記帳    | (장부에) 적다, 써넣다, 기록하다, 기재하다 |

| 번호 | 정비 대상 용어    |       | 순화 용어                                                  |
|----|-------------|-------|--------------------------------------------------------|
|    | 한글          | 한자·원어 |                                                        |
| 31 | 기재          | 記載    | 기재                                                     |
| 32 | 기재하다        | 記載    | 쓰다, 적다, 적어V넣다, 써넣다, (장부에, 대장에, 명부에) 기록하다, (전자문서에) 기재하다 |
| 33 | 기점          | 起點    | 출발점, 시작점, 기점                                           |
| 34 | 기착          | 寄着    | 기착, 들름                                                 |
| 35 | 기채          | 起債    | 공채(公債)V모집, 기채(起債)                                      |
| 36 | 기채지         | 起債地   | 공채(公債)V모집V장소, 기채지(起債地)                                 |
| 37 | 기타          | 其他    | 그V밖의, 그V밖에                                             |
| 38 | 기타 필요한 사항   | 其他    | 그V밖에 필요한 사항                                            |
| 39 | 기탁          | 寄託    | 기탁                                                     |
| 40 | 기탁하다        | 寄託    | 기탁하다, 부탁하여 ~에 맡기다                                      |
| 41 | 기포          | 氣泡    | 기포, 거품                                                 |
| 42 | 기피하다 (회피하다) | 忌避    | 꺼리다, 피하다, 기피하다                                         |
| 43 | 기하다         | 企する   | 도모하다, 꾀하다, 일으키다, ~에 따르다, ~를 바탕으로 하다                    |
| 44 | 기하다         | 基     | ~에 따르다, ~를 바탕으로 하다                                     |
| 45 | 기한          | 基     | 근거한, 기초한, 바탕으로 한                                       |
| 46 | 기한 내        | 期限内   | 기한까지                                                   |
| 47 | 기항지         | 寄港地   | 기항지(寄港地)                                               |
| 48 | 기형          | 奇形    | 기형                                                     |
| 49 | 기화로         | 奇貨    | 이용하여, 핑계로                                              |
| 50 | 기히          | 既     | 이미                                                     |
| 51 | 긴급을 요할 때    | 緊急    |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 긴급한 경우                                   |
| 52 | 긴절히         | 緊切    | 절실히                                                    |
| 53 | 깁연          | 喫煙    | 흡연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제안사유

-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가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우리 군 복무조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

### 4.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반영
  - 안 제8조, 제18조,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2조 삭제
  - 안 제12조제2항 근거법령 수정
- 모성보호시간 확대(안 제23조제13항)
- 육아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제23조제4항, 별표3)
- 방송통신대학교 수업휴가 조항 개정(안 제23조제5항)
- 불임치료시술 휴가 명칭 개선(안 제23조제12항)
- 자녀 돌봄 휴가의 사용 범위 확대(안 제23조 제17항)
-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 신설(안 제23조제19항)
-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수정(별표4)



##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5. 31. ~ 6. 5.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며,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우리 군 복무 조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

###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8조, 제18조,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2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제2항의 근거법령 수정

- 안 제23조제13항의 모성보호시간 확대
- 안 제23조제4항, 제5항, 제12항, 제13항, 제17항, 별표3을 수정하여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였고,
- 안 별표4를 수정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보완
- 안 제23조제19항의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 마련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중 규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제5항 전단 중 “제18조”를 각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한다.

제19조제6항,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후단 중 “제20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5항 중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12항 본문 중 “불임”을 “난임”으로 한다.

제23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17항 중 “상담에 참여할 경우”를 “상담에 참여하거나, 병원진료 또는 예방접종을 할 경우”로 한다.

제23조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⑲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그 사용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3 및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 구분 | 대상                             | 일수        |
|----|--------------------------------|-----------|
| 결혼 | 본인                             | 5         |
|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u>10</u> |
| 입양 | 본인                             | 20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b>제8조(출장공무원)</b><br/>① ~ ③ (생략)</p> <p><b>제12조(복장 등)</b><br/>① (생략)<br/>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u>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u>을 따른다.</p> <p><b>제18조(연가일수)</b><br/>① ~ ③ (생략)</p> <p><b>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b><br/>① (생략)<br/>② <u>제18조</u>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br/><br/>③ ~ ④ (생략)<br/>⑤ 공무상 <u>제18조</u>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 (중략)<br/><br/>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p> <p><b>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b><br/>① ~ ④ (생략)</p> | <p><u>&lt;삭제&gt;</u></p> <p><b>제12조(복장 등)</b><br/>① (현행과 같음)<br/>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u>국가공무원 복무규칙</u>」을 준용한다.</p> <p><u>&lt;삭제&gt;</u></p> <p><b>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b><br/>① (현행과 같음)<br/>②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br/><br/>③ ~ ④ (현행과 같음)<br/>⑤ 공무상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 제7<u>조</u>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 (중략)<br/><br/>⑥ <u>&lt;삭제&gt;</u></p> <p><u>&lt;삭제&gt;</u></p> |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제21조(병가)</p> <p>① 제20조</p> <p>② ~ ③ (생략)</p> <p>제22조(공가)</p> <p>① ~ ⑩ (생략)</p> <p>제23조(특별휴가)</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u>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u><br/><u>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u><br/><u>있다.</u></p> | <p>제21조(병가)</p> <p>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제23조(특별휴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lt;삭제&gt;</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u><br/><u>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u><br/><u>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u><br/><u>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u><br/><u>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u><br/><u>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u></p> <p><u>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u><br/><u>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u><br/><u>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u></p> <p><u>2. 월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u><br/><u>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u><br/><u>로 계산함</u></p> <p><u>3. 월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u><br/><u>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u><br/><u>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u><br/><u>(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u><br/><u>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u><br/><u>용한 것으로 봄)</u></p> |



| 현행                                                                                                                                                                                                                                                                                                                                                                                                                                      | 개정안                                                                                                                                                                                                                                                                                                                                                                                                                                                                                                                                                                                |
|-----------------------------------------------------------------------------------------------------------------------------------------------------------------------------------------------------------------------------------------------------------------------------------------------------------------------------------------------------------------------------------------------------------------------------------------|------------------------------------------------------------------------------------------------------------------------------------------------------------------------------------------------------------------------------------------------------------------------------------------------------------------------------------------------------------------------------------------------------------------------------------------------------------------------------------------------------------------------------------------------------------------------------------|
| <p>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u>제18조</u>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⑥ ~ ⑪ (생략)</p> <p>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u>불임</u>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중략)</p> <p>⑬ (생략)</p> <p>⑭ ~ ⑯ (생략)</p> <p>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u>상담에 참여할 경우</u>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⑱ (생략)</p> | <p>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u>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u></p> <p>⑥ ~ ⑪ (현행과 같음)</p> <p>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u>난임</u>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중략)</p> <p>⑬ <u>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u></p> <p>⑭ ~ ⑯ (현행과 같음)</p> <p>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u>상담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 또는 예방접종을 할 경우</u>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⑱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⑬ &lt;신설&gt;</div> <div><div>[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div><table><tr><th>구분</th><th>대상</th><th>일수</th></tr><tr><td rowspan="2">결혼</td><td>본인</td><td>5</td></tr><tr><td>자녀</td><td>1</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5</td></tr><tr><td>입양</td><td>본인</td><td>20</td></tr><tr><td rowspan="5">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3</td></tr><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3</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tr><td>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tr><td>탈상</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1</td></tr></table></div> <div><div>[별표4]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div><div>1. (생략)</div><div>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div><div>-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div><div>-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div><div>※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div></div>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배우자 | 5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div>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그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div> <div><div>[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div><table><tr><th>구분</th><th>대상</th><th>일수</th></tr><tr><td rowspan="2">결혼</td><td>본인</td><td>5</td></tr><tr><td>자녀</td><td>1</td></tr><tr><td>출산</td><td>배우자</td><td>10</td></tr><tr><td>입양</td><td>본인</td><td>20</td></tr><tr><td rowspan="5">사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3</td></tr><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3</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tr><td>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td>1</td></tr><tr><td>탈상</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1</td></tr></table></div> <div><div>[별표4]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div><div>1. (현행과 같음)</div><div>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div><div>-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div><div>-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div><div>-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div><div>※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div></div>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 구분                                                                                                                                                                                                                                                                                                                                                                                                                                                                                                                                                                                                                                                                                                                                                                                                                                  | 대상                             |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혼                                                                                                                                                                                                                                                                                                                                                                                                                                                                                                                                                                                                                                                                                                                                                                                                                                  | 본인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산                                                                                                                                                                                                                                                                                                                                                                                                                                                                                                                                                                                                                                                                                                                                                                                                                                  | 배우자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양                                                                                                                                                                                                                                                                                                                                                                                                                                                                                                                                                                                                                                                                                                                                                                                                                                  | 본인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대상                             |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혼                                                                                                                                                                                                                                                                                                                                                                                                                                                                                                                                                                                                                                                                                                                                                                                                                                  | 본인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산                                                                                                                                                                                                                                                                                                                                                                                                                                                                                                                                                                                                                                                                                                                                                                                                                                  | 배우자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양                                                                                                                                                                                                                                                                                                                                                                                                                                                                                                                                                                                                                                                                                                                                                                                                                                  | 본인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1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 21    |

####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

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서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
-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재직기간        |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br>최대 연가 일수 |
|-------------|----------------------------|
| 1년 미만       | 5                          |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 4년 이상       | 10                         |

####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 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의5(병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의 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에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옥포읍 내 신설 아파트 입주( '19. 9월 예정)로 인한 행정리 분리와  
이장정수 및 반수의 증가
- 건축물대장과 불일치 부분 개정(공동주택명칭, 지번)

## 4. 주요내용

- 리·반 조정 : 1개리 12반 신설(313리 ⇨ 314리, 2,665반 ⇨ 2,677반)

| 읍 면 | 기 존     |     | 개 정                      |     | 증감 |    | 비 고 |
|-----|---------|-----|--------------------------|-----|----|----|-----|
|     | 행 정 리   | 반 수 | 행 정 리                    | 반 수 | 리  | 반  |     |
| 옥 포 | 교 향 2 리 | 4   | 교 향 2 리                  | 4   | 1  | 12 |     |
|     |         |     | 교 향 7 리<br>( 르 상 트 레 빌 ) | 12  |    |    |     |

- 이장 정수 : 증 1
  - 옥포읍 : 교향7리
- 건축물대장과 불일치 부분 개정(옥포읍)
  - 공동주택명칭
    - 대성베르힐2차 ⇨ 대성베르힐6단지



- 지 번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18B 1,2L ⇨ 본리리 2649(삼환나우빌)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B 3,7,8L ⇨ 본리리 2590(미진이지비아)

##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6.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5. 16. ~ 6. 5.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옥포읍 내 신설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변동으로 행정리 분리와 함께 이장 정수 및 반수를 증가시키고,
- 조례상의 공동주택명칭과 지번 중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부분을 일치하도록 개정해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옥포지역에 아파트 1개리 12개 반을 신설하고, 옥포읍 교항6리의 공동주택명칭을 “대성베르힐 2차”에서 “대성베르힐 6단지”로 변경하고, 옥포읍 “본리4리 삼환나우빌”과 “본리5리 미진이지비아”의 가 지 번을 각각 “본리리 2649”, “본리리 2590”으로 표기하여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 또한, 신설된 1개리에 대해 제4조 별표2의 이장정수를 조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 이장 정수

| 읍 면 | 법정리명   | 이장 정수 | 행정리명                                                 |
|-----|--------|-------|------------------------------------------------------|
| 옥포읍 | 본리리    | 5     | 본리1리<br>본리2리<br>본리3리<br>본리4리<br>본리5리                 |
|     | 신당리    | 1     | 신당리                                                  |
|     | 교항리    | 7     | 교항1리<br>교항2리<br>교항3리<br>교항4리<br>교항5리<br>교항6리<br>교항7리 |
|     | 강림리    | 5     | 강림1리<br>강림2리<br>강림3리<br>강림4리<br>강림5리                 |
|     | 송촌리    | 1     | 송촌리                                                  |
|     | 간경리    | 1     | 간경리                                                  |
|     | 기세리    | 1     | 기세리                                                  |
|     | 반송리    | 2     | 반송1리<br>반송2리                                         |
|     | 김흥리    | 3     | 김흥1리<br>김흥2리<br>김흥3리                                 |
|     | 옥포읍 소계 | 9     | 26                                                   |

【별표3】

## 리반의명칭및관할구역

| 읍 면 | 리            | 반   | 구 역                              |
|-----|--------------|-----|----------------------------------|
| 옥포읍 | 교항7리<br><신설> | 제1반 | 3008(르상트레빌) 701동<br>101호 ~ 1403호 |
|     |              | 2   | 3008(르상트레빌) 701동<br>104호 ~ 1405호 |
|     |              | 3   | 3008(르상트레빌) 702동<br>101호 ~ 1004호 |
|     |              | 4   | 3008(르상트레빌) 703동<br>101호 ~ 1004호 |
|     |              | 5   | 3008(르상트레빌) 704동<br>301호 ~ 1602호 |
|     |              | 6   | 3008(르상트레빌) 704동<br>103호 ~ 1604호 |
|     |              | 7   | 3008(르상트레빌) 705동<br>301호 ~ 1702호 |
|     |              | 8   | 3008(르상트레빌) 705동<br>303호 ~ 1704호 |
|     |              | 9   | 3008(르상트레빌) 706동<br>101호 ~ 1803호 |
|     |              | 10  | 3008(르상트레빌) 706동<br>304호 ~ 1805호 |
|     |              | 11  | 3008(르상트레빌) 707동<br>101호 ~ 1803호 |
|     |              | 12  | 3008(르상트레빌) 707동<br>104호 ~ 1805호 |

| 읍 면 | 리    | 반     | 구 역                                    |
|-----|------|-------|----------------------------------------|
| 옥포읍 | 교항6리 | 제 1 반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1동 101호 ~ 804호  |
|     |      | 2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2동 101호 ~ 1402호 |
|     |      | 3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2동 103호 ~ 1404호 |
|     |      | 4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3동 201호 ~ 1602호 |
|     |      | 5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4동 101호 ~ 1502호 |
|     |      | 6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4동 103호 ~ 1704호 |
|     |      | 7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5동 101호 ~ 1802호 |
|     |      | 8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5동 203호 ~ 1704호 |
|     |      | 9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6동 201호 ~ 1802호 |
|     |      | 10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6동 103호 ~ 1804호 |
|     |      | 11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7동 101호 ~ 1802호 |
|     |      | 12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7동 103호 ~ 1804호 |
|     | 본리4리 | 제 1 반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1동 201~1902        |
|     |      | 2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1동 103~1905        |
|     |      | 3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2동 201~1902        |
|     |      | 4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2동 103~1905        |
|     |      | 5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3동 201~2702        |
|     |      | 6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3동 103~2705        |
|     |      | 7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4동 201~2502        |
|     |      | 8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5동 201~2402        |

| 읍 면 | 리    | 반     | 구 역                             |
|-----|------|-------|---------------------------------|
| 옥포읍 | 본리5리 | 제 1 반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1동 101~3302 |
|     |      | 2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1동 203~3304 |
|     |      | 3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2동 101~3302 |
|     |      | 4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2동 203~3304 |
|     |      | 5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3동 101~3302 |
|     |      | 6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3동 203~3304 |
|     |      | 7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4동 101~3302 |
|     |      | 8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4동 203~3304 |
|     |      | 9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5동 101~3302 |
|     |      | 10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5동 203~3004 |
|     |      | 11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6동 201~3302 |
|     |      | 12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6동 203~3304 |
|     |      | 13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7동 101~3302 |
|     |      | 14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7동 203~2904 |
|     |      | 15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8동 101~3302 |
|     |      | 16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8동 203~3304 |
|     |      | 17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9동 101~3302 |
|     |      | 18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9동 203~3304 |
|     |      | 19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10동 101~3302 |
|     |      | 20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10동 203~3004 |

##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2】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읍 면 | 법정리명      | 이장 정수 | 행정리명                                         | 읍 면   | 법정리명      | 이장 정수 | 행정리명                                                 |
| 옥포읍 | 본리리       | 5     | 본리1리<br>본리2리<br>본리3리<br>본리4리<br>본리5리         | 옥포읍   | 본리리       | 5     | 본리1리<br>본리2리<br>본리3리<br>본리4리<br>본리5리                 |
|     | 신당리       | 1     | 신당리                                          |       | 신당리       | 1     | 신당리                                                  |
|     | 교항리       | 6     | 교항1리<br>교항2리<br>교항3리<br>교항4리<br>교항5리<br>교항6리 |       | 교항리       | 7     | 교항1리<br>교항2리<br>교항3리<br>교항4리<br>교항5리<br>교항6리<br>교항7리 |
|     | 강림리       | 5     | 강림1리<br>강림2리<br>강림3리<br>강림4리<br>강림5리         |       | 강림리       | 5     | 강림1리<br>강림2리<br>강림3리<br>강림4리<br>강림5리                 |
|     | 송촌리       | 1     | 송촌리                                          |       | 송촌리       | 1     | 송촌리                                                  |
|     | 간경리       | 1     | 간경리                                          |       | 간경리       | 1     | 간경리                                                  |
|     | 기세리       | 1     | 기세리                                          |       | 기세리       | 1     | 기세리                                                  |
|     | 반송리       | 2     | 반송1리<br>반송2리                                 |       | 반송리       | 2     | 반송1리<br>반송2리                                         |
|     | 김흥리       | 3     | 김흥1리<br>김흥2리<br>김흥3리                         |       | 김흥리       | 3     | 김흥1리<br>김흥2리<br>김흥3리                                 |
|     | 옥포읍<br>소계 | 9     | 25                                           |       | 옥포읍<br>소계 | 26    | 26                                                   |



【별표3】

| 현행  |                   |   |    | 개정안 |      |     |                                  |
|-----|-------------------|---|----|-----|------|-----|----------------------------------|
| 읍면  | 리                 | 반 | 구역 | 읍면  | 리    | 반   | 구역                               |
| 옥포읍 | <b>&lt;신설&gt;</b> |   |    | 옥포읍 | 교항7리 | 제1반 | 3008(르상트레빌) 701동<br>101호 ~ 1403호 |
|     |                   |   |    |     |      | 2   | 3008(르상트레빌) 701동<br>104호 ~ 1405호 |
|     |                   |   |    |     |      | 3   | 3008(르상트레빌) 702동<br>101호 ~ 1004호 |
|     |                   |   |    |     |      | 4   | 3008(르상트레빌) 703동<br>101호 ~ 1004호 |
|     |                   |   |    |     |      | 5   | 3008(르상트레빌) 704동<br>301호 ~ 1602호 |
|     |                   |   |    |     |      | 6   | 3008(르상트레빌) 704동<br>103호 ~ 1604호 |
|     |                   |   |    |     |      | 7   | 3008(르상트레빌) 705동<br>301호 ~ 1702호 |
|     |                   |   |    |     |      | 8   | 3008(르상트레빌) 705동<br>303호 ~ 1704호 |
|     |                   |   |    |     |      | 9   | 3008(르상트레빌) 706동<br>101호 ~ 1803호 |
|     |                   |   |    |     |      | 10  | 3008(르상트레빌) 706동<br>304호 ~ 1805호 |
|     |                   |   |    |     |      | 11  | 3008(르상트레빌) 707동<br>101호 ~ 1803호 |
|     |                   |   |    |     |      | 12  | 3008(르상트레빌) 707동<br>104호 ~ 1805호 |

| 현행  |      |     |                                                      | 개정안 |      |     |                                        |
|-----|------|-----|------------------------------------------------------|-----|------|-----|----------------------------------------|
| 읍면  | 리    | 반   | 구역                                                   | 읍면  | 리    | 반   | 구역                                     |
| 옥포읍 | 교항6리 | 제1반 |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br>601동 101호 ~ 804호                 | 옥포읍 | 교항6리 | 제1반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1동 101호 ~ 804호  |
|     |      | 2   |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br>602동 101호 ~ 1402호                |     |      | 2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2동 101호 ~ 1402호 |
|     |      | 3   |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br>602동 103호 ~ 1404호                |     |      | 3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2동 103호 ~ 1404호 |
|     |      | 4   |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br>603동 201호 ~ 1602호                |     |      | 4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3동 201호 ~ 1602호 |
|     |      | 5   |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br>604동 101호 ~ 1502호                |     |      | 5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4동 101호 ~ 1502호 |
|     |      | 6   |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br>604동 103호 ~ 1704호                |     |      | 6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4동 103호 ~ 1704호 |
|     |      | 7   |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br>605동 101호 ~ 1802호                |     |      | 7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5동 101호 ~ 1802호 |
|     |      | 8   |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br>605동 203호 ~ 1704호                |     |      | 8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5동 203호 ~ 1704호 |
|     |      | 9   |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br>606동 201호 ~ 1802호                |     |      | 9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6동 201호 ~ 1802호 |
|     |      | 10  |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br>606동 103호 ~ 1804호                |     |      | 10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6동 103호 ~ 1804호 |
|     |      | 11  |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br>607동 101호 ~ 1802호                |     |      | 11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7동 101호 ~ 1802호 |
|     |      | 12  | 2998(옥포 대성베르힐2차)<br>607동 103호 ~ 1804호                |     |      | 12  | 2998(옥포 대성베르힐6단지)<br>607동 103호 ~ 1804호 |
|     | 본리4리 | 제1반 |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br>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br>101동 201~1902) |     | 본리4리 | 제1반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1동 201~1902        |
|     |      | 2   |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br>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br>101동 103~1905) |     |      | 2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1동 103~1905        |
|     |      | 3   |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br>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br>102동 201~1902) |     |      | 3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2동 201~1902        |
|     |      | 4   |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br>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br>102동 103~1905) |     |      | 4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2동 103~1905        |
|     |      | 5   |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br>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br>103동 201~2702) |     |      | 5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3동 201~2702        |
|     |      | 6   |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br>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br>103동 103~2705) |     |      | 6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3동 103~2705        |
|     |      | 7   |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br>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br>104동 201~2502) |     |      | 7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4동 201~2502        |
|     |      | 8   | 본리토지구확장리사업지구<br>18B 1,2L (삼환나우빌아파트<br>105동 201~2402) |     |      | 8   | 2649(삼환나우빌아파트)<br>105동 201~2402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읍 면 | 리    | 반   | 구 역                                                 | 읍 면   | 리    | 반   | 구 역                             |
| 옥포읍 | 본리5리 | 제1반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1동 101~3302 | 옥포읍   | 본리5리 | 제1반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1동 101~3302 |
|     |      | 2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1동 203~3304 |       |      | 2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1동 203~3304 |
|     |      | 3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2동 101~3302 |       |      | 3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2동 101~3302 |
|     |      | 4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2동 203~3304 |       |      | 4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2동 203~3304 |
|     |      | 5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3동 101~3302 |       |      | 5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3동 101~3302 |
|     |      | 6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3동 203~3304 |       |      | 6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3동 203~3304 |
|     |      | 7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4동 101~3302 |       |      | 7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4동 101~3302 |
|     |      | 8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4동 203~3304 |       |      | 8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4동 203~3304 |
|     |      | 9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5동 101~3302 |       |      | 9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5동 101~3302 |
|     |      | 10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5동 203~3304 |       |      | 10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5동 203~3304 |
|     |      | 11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6동 101~3302 |       |      | 11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6동 101~3302 |
|     |      | 12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6동 203~3304 |       |      | 12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6동 203~3304 |
|     |      | 13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7동 101~3302 |       |      | 13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7동 101~3302 |
|     |      | 14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7동 203~3304 |       |      | 14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7동 203~3304 |
|     |      | 15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8동 101~3302 |       |      | 15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8동 101~3302 |
|     |      | 16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8동 203~3304 |       |      | 16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8동 203~3304 |
|     |      | 17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9동 101~3302 |       |      | 17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9동 101~3302 |
|     |      | 18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09동 203~3304 |       |      | 18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09동 203~3304 |
|     |      | 19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10동 101~3302 |       |      | 19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10동 101~3302 |
|     |      | 20  | 본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br>1B 3,7,8(달성미진이지비아)<br>110동 203~3304 |       |      | 20  | 2590(달성미진이지비아)<br>110동 203~3304 |

## 참고 1

## 관할구역 조정 지역 위치도

☐ 옥포읍



## 참고 2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제안사유

- 관계 법령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는「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9.7.1.시행)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

### 4.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로 정비(안제14조 제4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안 제26조 제4항 제3호)

###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입법예고 : 2019. 5. 27. ~ 6. 7.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관계 법령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9. 7. 1.시행)에 따른 조문 내용 변경

###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4조 제4호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로 정비
- 안 제26조 제4항 제3호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  
제26조 제4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14조(보육기회의 우선제공)(생 략)                                      | 제14조(보육기회의 우선제공)(생 략)                                   |
| 1. ~ 3. (생 략)                                              | 1. ~ 3. (생 략)                                           |
|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녀                        |
| 제26조(연회비)                                                  | 제26조(연회비)                                               |
| ① ~ ③ (생 략)                                                | ① ~ ③ (생 략)                                             |
| ④ 1. ~ 2.(생 략)                                             | ④ 1. ~ 2.(생 략)                                          |
|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



## 참고 1

## 관계법령

###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9.7.1.]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7.1.]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 참고2

## 「장애인복지법」 조례개정 관련참고자료

### 조례 개정 등 지자체 협조 요청

#### □ 추진목적

-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지자체의 서비스기준 개편, 용어 등 조례개정이 수반됨에 따라,
- 지자체 현황 파악과 함께 조례 개정방향 등을 공유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

#### □ 추진경과

- 복지부-지자체 합동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및 킥오프워크숍: '18.11월
- 지자체 특화서비스 및 관련 조례 현황 조사: '18.11~12월
- 복지부-지자체 합동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 '19.1.14일
- 지자체 서비스 조사결과 및 조례 개정방향 공유

#### □ 조사결과

- 개별 지자체는 조례(825개), 지침(6개), 자체계획(59개), 중앙부처 개별 법령(12개)에 근거하여 총 902개의 사업을 운영 중
- 이 중 장애유형·등급 등을 기준으로 차등지원 사업이 694개에 해당

| 운영 근거 | 전제 기준 | 합계  | 차등지원  |     |                      |                         |                          |                       |                         |
|-------|-------|-----|-------|-----|----------------------|-------------------------|--------------------------|-----------------------|-------------------------|
|       |       |     | 일괄 지원 | 소액  | 중증증 구분 <sup>1)</sup> | 장애등급 (구간) <sup>2)</sup> | 유형 및 등급 혼합 <sup>3)</sup> | 개별법령 준용 <sup>4)</sup> | 명시적 규정 없음 <sup>5)</sup> |
| 전체    | 902   | 208 | 694   | 393 | 106                  | 25                      | 167                      | 3                     |                         |
| 개별법령  | 12    | 5   | 7     | 3   | 1                    | 0                       | 3                        | 0                     |                         |
| 유형    | 69    | 15  | 54    | 30  | 6                    | 3                       | 15                       | 0                     |                         |
| 기준    | 756   | 160 | 596   | 335 | 92                   | 21                      | 145                      | 3                     |                         |
| 지침    | 6     | 1   | 5     | 4   | 1                    | 0                       | 0                        | 0                     |                         |
| 자체계획  | 59    | 27  | 32    | 21  | 6                    | 1                       | 4                        | 0                     |                         |

|                                  |                                                                                                                                |                                                                                                                                  |
|----------------------------------|--------------------------------------------------------------------------------------------------------------------------------|----------------------------------------------------------------------------------------------------------------------------------|
| ○ ○ 시 ○ ○ 구<br>도서관 설치 및<br>운영 조례 | 23조(운영원칙) 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 제1급부터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7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 제4급부터 제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30퍼센트 범위에서 수우료를 감면할 수 있다. | 23조(운영원칙) 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 제1급부터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7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 제4급부터 제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30퍼센트 범위에서 수우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 ○ 도 도립공립<br>관리 조례              | 21조(시설사용료)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상 장애인등록상 심한 장애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21조(시설사용료)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상 심한 장애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 ○ ○ 시<br>장애인공무원<br>협의지침 조례       |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인등록상 심한 장애까지인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② 별도기준 검토: 전체 장애인·장애정도 또는 7.1일부터 변경되는 장애등록의 추가심사사항을 활용하는 형태로 선정기준 변경

- 다만, 추가심사사항은 22년까지 종합조사 확대에 따라 단계적 개편

#### [개정 예시]

##### i) 선정기준을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 조례명                            | 현행 조문                                                            | 조문 개정(안)                                                        |
|--------------------------------|------------------------------------------------------------------|-----------------------------------------------------------------|
| ○ ○ 시 의회<br>장애인회 의정활동<br>지원 조례 | 제2조(정의)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 제2조(정의)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인등록상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 ii) 선정기준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경우

| 조례명                                  | 현행 조문                                                                         | 조문 개정(안)                                                                 |
|--------------------------------------|-------------------------------------------------------------------------------|--------------------------------------------------------------------------|
| ○ ○ 시 ○ ○ 구<br>장애인가정<br>심사위원회의 지원 조례 | 제2조(심사위원회의 지원) 1. 장애인등급 1~3급 1,000원<br>2. 장애인등급 4급 500원<br>3. 장애인등급 5~6급 300원 | 제2조(심사위원회의 지원) 1. 심한 장애인 1,000원<br>2.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원                    |
| ○ ○ 시<br>중증장애인<br>교통보조수당 지급<br>조례    | 제2조(정의)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상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제2조(정의)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상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 1) 중경증: 1~3급, 4~6급으로 나누어 기준으로 활용
- 2) 장애등급(구간): 1급, 1~2급/3~4급/5~6급, 1~5급 등 등급·등급구간 사용
- 3) 유형 및 등급 혼합: 시각4급 등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이 혼합된 기준 사용
- 4) 개별법령준용: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 등 개별법령 기준을 준용
  - 장애인연금법(5개), 장애인고용법(8개), 교통약자법(6개), 지방세법(8개), 활동지원법(8개, 4등급기준·인정조사점수 활용 등), 영유아보육법(2개)
- 5) 명시적 규정없음: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수가 높은 자 등

#### □ 조례 등 개정방향

- ➔ 조례 등 사업운영근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개정필요여부 검토

| 개정 유형     | 대상 조례                                                          | 비고       |
|-----------|----------------------------------------------------------------|----------|
| ① 단순용어 개정 | 「장애등급」, 「1~3급」 및 「4~6급」, 「중증」 등 등급제 폐지 이후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포함된 조례   | 조례 개정 필요 |
| ② 별도기준 검토 | 선정기준을 장애등급(구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br>유형 및 등급 혼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          |
| ③ 개별법령 준용 | 개별법령을 준용, 조례상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br>조례 상 명시적 규정 없이 개별법령을 준용하는 조례 | 조례 개정 필요 |
| ④ 개정필요 없음 | 등급, 급수 등 표현 없이 「장애인」, 「중증장애인」 용어 사용 조례                         |          |

#### ① 단순용어 변경: 7.1일부터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아래용어로 대체

- 「장애등급」→「장애정도」, 「1~3급」→「심한 장애인」, 「4~6급」→「심하지 않은 장애인」, 「1~6급」→「등록장애인」, 「중증」→「장애매매」

| [개정 예시]                          |                                                                                                 |                                                                                    |
|----------------------------------|-------------------------------------------------------------------------------------------------|------------------------------------------------------------------------------------|
| 조례명                              | 현행 조문                                                                                           | 조문 개정(안)                                                                           |
| ○ ○ 시 ○ ○ 구<br>주차장 설치 및<br>관리 조례 |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정확히 3급,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 iii) 선정기준을 장애인등록 '추가심사사항'을 활용하는 경우

| [참고. 7.1일부터 추가심사사항] |                                                                                        |                                        |
|---------------------|----------------------------------------------------------------------------------------|----------------------------------------|
| 구분                  | 현행 기준                                                                                  | 7.1일                                   |
| 보통 장애인              | 실지정단·변형·지적·정신 1급, 하지정단·변형 1~4급, 하지정단·정신 1~5급, 하지정단·정신 2~5급, 하지정단·정신 1~2급, 하지정단·정신 1~2급 | 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심사결과통보시, 추가심사사항으로 해당여부만 표시 |
| 장애인연금               | 1~2급 및 등록 3급                                                                           | /                                      |
| 장애인고용               | 1~2급 및 3급·변형·지적·정신·실장·호출기·보청기·지체(팔)                                                    | /                                      |

| 조례명                            | 현행 조문                                                                                                     | 조문 개정(안)                                                                                                  |
|--------------------------------|-----------------------------------------------------------------------------------------------------------|-----------------------------------------------------------------------------------------------------------|
| ○ ○ 시 중증장애인<br>교통보조수당 지급<br>조례 | 제2조(정의)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상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제2조(정의)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상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 ○ ○ 시 제정령 통<br>수우료 징수 조례       | 제2조(수우료의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1~2급의 장애인(다른 장애인 가 중증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장애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정령 등 | 제2조(수우료의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1~2급의 장애인(다른 장애인 가 중증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장애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정령 등 |

#### ③ 개별법령 준용: 개별부처의 기준변경에 맞춰서 개정

- 개별법령을 그대로 준용하는 조례는 개정불요
- 선정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례는 해당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 [개정 예시]

##### i) 개별법령을 그대로 준용한 경우(개정불필요)

| 법령명        | 조례(사업)명                         | 현행 조문                                                                    | 조문 개정(안) |
|------------|---------------------------------|--------------------------------------------------------------------------|----------|
| 장애인<br>고용법 | ○ ○ 시<br>중증장애인<br>차량생할 지원<br>조례 | 제2조(정의)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상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개정 불필요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제안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자활기금이 법률에 의 무적으로 설치되는 법정 의무기금으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정 의무기금인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 보 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법정 의무기금인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삭제(안 제4조제1항)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5. 14. ~ 6. 3.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자활기금이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법정의무기금으로 규정됨에 따라
-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4조제1항의 법정의무기금인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286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부칙(2014.7.10., 조례 제2286호)<br/>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u>기금의</u><br/><u>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u><br/><u>으로 한다.</u></p> | <p>부칙(2014.7.10., 조례 제2286호)<br/>제2조 -----.<br/>&lt;삭제&gt;</p> |

## 참고 1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시행 2019. 7. 16.>

※ 참고(개정 전)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제안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 로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맞춤형 급여 실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의료급여법」을 적용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의 근거 범위 정비(안 제1조)
-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정하는 근거 법령 명시(안 제2조)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변경(안 제2조)

### 5.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의료급여법」 제3조



##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5. 8. ~ 5. 28.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함.

###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의 지원 대상의 근거 범위 정비
- 안 제2조에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정하는 근거 법령 명시
- 안 제2조에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변경

###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에 해당하지 않는” 을 삭제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을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으로 하고,  
“10,000원 미만” 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b>제1조(목적)</b> -----<br/>-----<br/>----&lt;삭제&gt;-----<br/>-----<br/>-----<br/>-----<br/>-----<br/>-----<br/>-----</p> |
|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p>                                                                                           | <p><b>제2조(정의)</b> -----<br/>-----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br/>-----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p>                             |

##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신청사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에 유치를 위한 활동 및 그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신청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안 제1조~제2조)
-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용역(안 제3조~제4조)
-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안 제5조~제6조)
-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간사와 분과위원회 구성을 규정(안 제7조~제13조)
- 유치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조, 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비밀누설 금지를 명시(안 제14조~제16조)
- 예산확보 및 지원, 수당 지급 규정(안 제17조~제18조)

### 5. 기타사항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6. 3. ~ 6. 7.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대구광역시 신청사의 우리군 유치를 위한 활동 및 그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신청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함.

###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
- 안 제3조~제4조에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용역
- 안 제5조~제6조에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
- 안 제7조~제13조에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간사와 분과위원회 구성을 규정
- 안 제14조~제16조에 유치위원회의 관계기관 협조, 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비밀누설 금지를 명시
- 안 제17조~제18조에 예산확보 및 지원, 수당 지급 규정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끝.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달성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사”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본청, 시의회, 산하기관 및 관계 기관 등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새로 건립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후보지”라 함은 대구광역시에 신청사 부지로 우리 군이 제안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평가대상지”라 함은 대구광역시에 신청사 부지로 우리 군이 제안한 후보지 중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4. “예정지”라 함은 평가대상지 중 이 대구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2장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계획

제3조(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계획의 수립) 달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후보지 선정에 관한 계획
2. 건립규모 제안
3. 건립 비용 추정



4.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문기관의 용역)**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필요한 용역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신청사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장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위원회

**제5조(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위원회의 설치)**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유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건립 유치 전·중·후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4. 신청사 건립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에 대한 토지매입,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신청사 건립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방지 및 향후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6.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다.

- ③ 유치위원회의 위원은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예정지 확정시까지로 하고, 필요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과 연계하여 따로 정 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觸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제17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 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였을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유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유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군수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유치위원회에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3조(분과위원회 등)**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들의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을 둔다.

② 유치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30명 내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보칙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유치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유치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유치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① 유치위원회의 위원·전문연구단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해촉을 요구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용역비, 홍보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사 건립 달성군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대구광역시에 무상 제공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유치위원회 및 그 위원이 유치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유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해진 후보지 선정, 유치위원회 구성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제안사유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9년 7월 시행)으로 인한 장애등급제 폐지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용어를 변경하여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등록장애인(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을 “등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으로 변경(안 제14조 제1항 제5호)

### 5.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5. 24. ~ 6. 3.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용어를 변경하여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4조 제1항 제5호의 사용료의 감면에서 등록 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경우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로 변경

###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등록장애인(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을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4.(생략)</p> <p>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경로대상·<u>등록장애인(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u>·유공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100분의 50</p> <p>6.~ 8.(생략)</p> <p>② ~ ④ (생략)</p> | <p>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br/>-----<br/>-----</p> <p>1.~ 4.(현행과 같음)</p> <p>5. -----·<br/><u>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u>·유공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 100분의 50</p> <p>6.~ 8.(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벨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9년 7월 시행)으로 인한 장애등급제 폐지로 시설이용료의 감면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용어를 변경

4. 주요내용

-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로 변경(안 제5조제2항제1호)

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5. 28. ~ 6. 7.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로, 시설이용료의 감면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용어를 변경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로 변경(안 제5조제2항제1호)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끝.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 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5조(시설이용료의 감면)<br>① (생략)<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br>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u>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u> ) | 제5조(시설이용료의 감면)<br>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u>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u>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9년 6월 1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 3. 제안사유

-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추가지원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추가지원을 개정된 기준인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안 제3조)

### 5.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6.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19. 5. 15. ~ 6. 4.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추가지원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장애등급 1급, 2급,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으로 변경하고,
- “장애등급 4급, 5급,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으로 변경(안 제3조제3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끝.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 ③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
3.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제3조제3항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p> <p><u>③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한한다.)</u></p> <p>1. 장애등급 1급, 2급, 3급 : 30만원</p> <p>2. 장애등급 4급, 5급 : 20만원</p> <p>3. 장애등급 6급 : 10만원</p> <p>4. 위 각 호에서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p> | <p>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p> <p><u>③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한다.</u></p> <p>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p> <p>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p> <p>3.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p> |



제273회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                                                                 |    |
|-----------------------------------------------------------------|----|
|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 2면 |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 2면 |
|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 2면 |
|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br>(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 | 2면 |
|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br>(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          | 2면 |

|                                                                       |    |
|-----------------------------------------------------------------------|----|
|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br>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군수 제출) .....                 | 2면 |
|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br>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br>(군수 제출) .....               | 2면 |
|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br>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     |     |     |     |
|-----|-----|-----|-----|
| 최상국 | 서도원 | 구자학 | 하중환 |
| 김정태 | 이대곤 | 김보경 | 신동윤 |
| 도일용 | 김은영 |     |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
| 사무국장    | 김종호 |
| 전문위원    | 김종석 |
| 전문위원    | 이원한 |
| 전문위원    | 송창훈 |
| 의사담당    | 주강숙 |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제273회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                                                                 |    |
|-----------------------------------------------------------------|----|
|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 2면 |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 2면 |
|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 2면 |
|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br>(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 | 2면 |
|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br>(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          | 2면 |

|                                                                       |    |
|-----------------------------------------------------------------------|----|
|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br>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군수 제출) .....                 | 2면 |
|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br>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br>(군수 제출) .....               | 2면 |
|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br>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     |     |     |
|-----|-----|-----|-----|
| 최상국 | 서도원 | 구자학 | 김정태 |
| 이대곤 | 김보경 | 신동윤 | 도일용 |
| 김은영 |     |     |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
| 사무국장    | 김종호 |
| 전문위원    | 김종석 |
| 전문위원    | 이원한 |
| 전문위원    | 송창훈 |
| 의사담당    | 주강숙 |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제273회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    |
|-----------------------------------------------------------------|----|
|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 2면 |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 2면 |
|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 2면 |
|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br>(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 | 2면 |
|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br>(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          | 2면 |

|                                                                       |    |
|-----------------------------------------------------------------------|----|
|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br>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군수 제출) .....                 | 2면 |
|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br>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br>(군수 제출) .....               | 2면 |
|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br>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  
획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  
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  
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2차) 공  
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  
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  
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

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     |     |     |     |
|-----|-----|-----|-----|
| 최상국 | 서도원 | 구자학 | 하중환 |
| 김정태 | 이대곤 | 김보경 | 신동윤 |
| 도일용 | 김은영 |     |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
| 사무국장    | 김종호 |
| 전문위원    | 김종석 |
| 전문위원    | 이원한 |
| 전문위원    | 송창훈 |
| 의사담당    | 주강숙 |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제273회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    |
|-----------------------------------------------------------------|----|
|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 2면 |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 2면 |
|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 2면 |
|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br>(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 | 2면 |
|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br>(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          | 2면 |

|                                                                       |    |
|-----------------------------------------------------------------------|----|
|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br>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군수 제출) .....                 | 2면 |
|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br>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br>(군수 제출) .....               | 2면 |
|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br>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

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     |     |     |     |
|-----|-----|-----|-----|
| 최상국 | 서도원 | 구자학 | 하중환 |
| 김정태 | 이대곤 | 김보경 | 신동윤 |
| 도일용 | 김은영 |     |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
| 사무국장    | 김종호 |
| 전문위원    | 이원한 |
| 전문위원    | 송창훈 |
| 의사담당    | 주강숙 |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제273회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7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                                                                 |    |
|-----------------------------------------------------------------|----|
|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 2면 |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 2면 |
|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 2면 |
|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br>(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 | 2면 |
|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br>(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          | 2면 |

|                                                                       |    |
|-----------------------------------------------------------------------|----|
|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br>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군수 제출) .....                 | 2면 |
|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br>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br>(군수 제출) .....               | 2면 |
|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br>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2면 |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  
획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  
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  
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2차) 공  
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  
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  
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  
도 있는 논의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에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 8,123억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8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     |     |     |     |
|-----|-----|-----|-----|
| 최상국 | 서도원 | 구자학 | 하중환 |
| 김정태 | 이대곤 | 김보경 | 신동윤 |
| 도일용 | 김은영 |     |     |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
| 사무국장    | 김종호 |
| 전문위원    | 김종석 |
| 전문위원    | 이원한 |
| 전문위원    | 송창훈 |
| 의사담당    | 주강숙 |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제273회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1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도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서도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달성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논공 약산 온천지구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달성관광단지 조성 개발에 따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단지 지정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의 결과 사업비 9,200억 원 정도의 본 사업에 대하여 ‘달성군이 민간자본을 우선 유치할 경우’에 한하여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군에서는 수년간 지역주민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가 하였습니다. 9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의 민간자본 약 1조 유치가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주민의 재산

권만을 침해할 뿐 ‘달성관광단지 조성’이란 이름만 ‘9,200억’이란 사업비만 거창할 뿐 향후 사업의 추진 여부는 물론 실현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서는 본 사업의 추진계획을 과감히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등 달성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과 관련한 향후계획,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달성관광단지 사업 추진의 가부를 분명히 하여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논공약산온천지구의 군 직영개발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하였을 때 정책사업과로부터 “달성관광단지의 지속적인 투자자 유치 추진과 투자자 유치 불가 시 논공약산온천지구 축소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동안의 투자자 유치실적과 온천지구 축소개발 검토내역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테크노폴리스를 포함한 남부권주민의 환경권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일대는 굴뚝 없는 첨단산업도시라는 대구시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제지공장의 폐기물 소각, 폐수처리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폐수, 미세먼지 등의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아진제지 등 제지공장 측에서 소각로 교체 및 백연저감시설 설치,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개선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공간 협소 및 사업비 부담 등의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소각로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과 약속한 제지공장의 개선사항 추진현황 및 주민의 환경권 증진을 위한 달성군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 논공읍 노이리 창고에서 의료폐기물 140t 이상이 2018년 7월부터 불법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악취는 물론 의료폐기물의 부패 발효에 의해 2차 유해병원균의 발생, 쥐나 고양이 등을 통한 사람으로의 2차 감염, 빗물에 의한 침출수 유출 위험 등 지역주민은 충격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의 강력한 대응 촉구를 비롯한 달성군의 향후 대책방안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서도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달성군립도서관은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도 너무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들이 주차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시설 협소로 인하여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아 명칭만 군립도서관이지 실제로는 타지역의 작은 도서관 수준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시설 확충과 도서관 건물 증축 등, 근본적인 불편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에 지적분할된 사유지 현황도로 개설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 관내 지역에는 수십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어 거주해 오며 사용한 주택 진출입도로가 지적상으로는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지나 전(田) 등의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이 주택이 낡아서 불편함이 많아 새로 건축하려고 하나 지적상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군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너무 억울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분할된 사유지 현황도로 개설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문화센터 이용자들의 주차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달성문화센터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읍 서재리 소재 아파트 인근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 서재리 동화 아이위시 2·3차 아파트 주민들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현재 건설 중인 태왕아파트 주민들도 입주 시, 동화 아이위시 2·3차 아파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불편을 호소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 중로 1류 104호선 부분을 군도 5호선과 연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버스노선을 조정·변경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이대곤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양파와 마늘의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해당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확을 하기 위한 인건비와 저장에 따른 보관비 등을 감안하여 수확을 포기하고 그동안 피와 땀으로 가꾼 농산물을 산지에서 폐기하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며, 여기에다 양파·마늘을 폐기한 농지에 모심기를 할 경우 벼의 작황이 좋지 않아 폐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지역 농업인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의 최근 양파·마늘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 추이와 양파·마늘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지원 대책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논공읍 금포리 2394-10번지 농로에 대하여 해당마을 이장 등 주민들과 합의하여 해당 농로를 『선일 로에스』 회사의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대신에 회사 측에서 해당 농로 바로 옆에 대체농로를 개설해 주어 이제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도로는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농업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들이 반발하여 현재 『선일 로에스』 회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농로부분을 원상회복 후 조속히 농로로 개설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달성군에서는 현재 『선일 로에스』 회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농로부분에는 건물이 들어서 있어 이를 철거하고 농로를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먼저, 다사 지역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사 지역은 대규모 택지 조성 등으로 9만 명이 넘는 지역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건강 및 여가생활을 위한 공공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다사 지역의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방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올해 폭염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사읍을 비롯하여 테크노폴리스 등에 신규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젊은 부부가 대거 이주해 오는 등 지역 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달성군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비단 부모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방안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구의 온난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올해 우리 군의 폭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양수·취수장 정부지원금 교부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고 수고하신 관계부서에 대해서 끝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서는 매년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관내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폭 넓게 지원함으로써 매우 모범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간 지원금액 차이가 매우 많고, 또한 노인 및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고장이 잦아 보수비



용도 많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현행 지원방식은 이러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상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금액은 1인 1일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입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기초 자치단체 중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는 자체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현실적으로 부족한 영·유아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의거, 급·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8개 군·구 중 총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은 가장 많습디다만, 별도로 자체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영·유아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유아들의 급·간식이 부실하여 영양 공급이 중요한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하루 빨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현실적으로 부족한 영·유아 급·간식비를 지원토록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조례에 의거, 관내 교복을 입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관내 일부 지역의 경우 학

교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인근 타 자치단체 소재 학군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거주는 우리 달성군 지역에 하고 있으나 인근 타 자치단체 소재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의 학생들 간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도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서도원, 구자학, 김보경, 도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진용환 부군수 진용환입니다.

서도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의 철회 의향과 향후 계획,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면적이 57만 평 사업비 9,200억 원 정도로, 달성보 주변의 천혜의 자연조건과 인근 산업단지 배후 인구 등 인접도시의 관광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지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논공 상·하리 일원에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 결과 입지 적정성, 경제성 등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16년 12월 대구시로부터 용역비 2억 원을 교부받아 2017년 3월 관광단지 지정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 4월 대구시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투자 유치를 통해 수차례 민간투자

자의 방문과 투자 유치 설명이 있었습디만, 투자환경 악화 등으로 투자 유치가 다소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국 43개소의 관광단지 사례를 보면 관광단지 개발까지는 보통 10년 이상 소요되고 민간투자 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간투자 유치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그동안 투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IBK투자증권, 롯데리조트사 등 14개 투자사 방문 및 유치설명을 거쳤으며 앞으로도 투자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일부 규모를 축소하여 약산온천지구 중심으로 23만 평 정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4천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군에서 직영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광단지 조성은 우리 군 전체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 철회여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업예정지 내 대규모 시설의 신축은 전체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경제 상황의 변화,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 사업규모 조정, 자금조달 가능성, 주민들의 민원 불편사항 등 현실적인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달성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도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

군립도서관, 지적 분할된 사유지 현황도로 개설, 달성문화센터, 다사읍 지역의 대중교통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립도서관 이용자 주차시설 확장방안 및 시설 협소로 인한 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달성군립도서관 총 이용자 수는 31만 5,300여 명으로 일일 평균 1,076명입니다.

이용자 편의시설로 세미나실 1개소, 강좌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세미나실과 강좌실 이용횟수는 387회, 1만 2,320명입니다.

현재 달성군립도서관은 주차 면수가 장애인용 1면을 포함한 8면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일 이용자 수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미나실 협소, 프로그램 강좌 증설, 동아리교실 추가 설치 등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서관 부지 내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인근 사유지 매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은 안전요원 배치 등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이 있으며, 부지 매입 시에는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부지 내 약 12면 정도의 주차공간과 현존 건축물을 세미나실, 강좌실 등으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분할된 사유지 현황도로 개설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 내 사실상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의 경우 건축법상 신축 및 재건축 허가가 되지 않아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은 1970년대 전후해

서 새마을사업으로 마을도로를 확장하고, 이와 접한 건축물에 대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한 것도 있으며, 개발사업자가 주변 토지를 매입 후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사도를 개설하고 분양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등의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새마을사업으로 관청의 토지보상 없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마을길을 확장하고,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가 대지와 분할되어 있고, 토지소유자가 보상에 동의한다면 우리 군에서 매입 후 정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확장 및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문화센터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진입로 등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문화센터 주차장 확장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우선 달성문화센터와 인접한 공원부지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달성문화센터 옆 산지 경사면의 일부를 절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대성에너지 옆 광장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2018년 의원님의 군정질문 이후 2018년 12월과 금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시와 다시 협의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산지를 절개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재해 위험과 공원 경관 훼손이 심하여 곤란하고, 죽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당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배치되어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성에너지 옆 광장부지도 당초 공원지정 용도와 상충되어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센터 옆 단독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군유지와 그에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철골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소유자와 접촉해 본 결과 매도의사는 확인되었으나 소유자가 희망하는 매도금액과 우리 군에서 가감정한 가격과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문화센터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오전시간 동안 삼정그린빌 아파트의 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올해 4월경 아파트 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아파트 자체 주차장도 부족한 실정이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문화센터 옆 종종 임야부지는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금년 6월 개최된 시장·군수·구청장 정책협의회 시 군수님께서 공원부지 용도변경 건을 재차 시장님께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재 동화 아이위시 2·3차 아파트 및 태왕아파트 중로 1류 104호선 부분과 군도 5호선 연결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도로는 2002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중로 1류-104호선으로 폭은 20m, 연장은 728m이며, 미개설 구간은 60m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폭 20m 이상은 대구시에서, 폭 20m 미만은 구·군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로 1류 104호선은 총연장 728m 중 동화 아이위시 아파트 건설 시 520m를 2017년 개설했고, 2018년 9월 인가된 태왕아파트 주택건설사업자가 148m를 올해부터 개설하게 되어 잔여구간 60m가 미개설 구간으로 남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구간 60m를 태왕아파트 입주시기에 맞게 개설하고자 2018년 10월 대구시 도로과에 도로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시에서 건설하여야 할 도시계획도

로 전체를 고려하면 우선순위에 들지 않아 단시일 내에 개설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대구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서재지구에는 현재 425번, 달서1번이 대로 1-53호선 방향으로, 성서1번, 성서3번은 다사농협에서 서재출장소 방향으로 군도 5호선을 따라 운행하고, 405번, 509번, 523번, 725번, 급행7번이 다사농협에서 방천리 공영차고지 방향으로 총 9개의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민선 7기에 들어와서 425번과 달서1번이 서재, 세천지구를 통과하여 타 교통망과 연계되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추가 또는 연장하였습니다.

서재지구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적지 않으나 중로 1류 104호선을 통하여 2017년 입주한 동화 아이위시 2·3차 아파트 앞을 통과하는 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 노선의 조정을 시에 건의하였으나 도로구조 환경이 시내버스 운행에 부적합하여 노선을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노면표시 개선을 통하여 중로 1류 104호선과 군도 5호선의 교차지점의 유도표시를 추가하여 재차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425번과 달서1번을 중로 1류 104호선을 따라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구조개선 및 지장물 이설 등을 대구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 지역 다목적체육관 건립방안,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폭염대책, 도동2리 및 자모리 취·양수장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사 지역 다목적체육관 건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사권역에 체육시설은 다사체육공원, 다사매곡 테니스장, 금호강변·하빈지구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축구, 야구, 테니스 등 실외경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9만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실내체육관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6월 3일 다사읍 다사체육공원 내 유희부지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국비지원사업에 추가로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국비지원사업 공모 규모는 연면적 3,000㎡ 이내 지하 1층, 지상 2층 형태로, 현재 체육수요와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드민턴, 탁구 등 실내경기가 가능한 코트와 관리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국비 공모가 확정되면 2019년 7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와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4월 착공,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사권역 내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주민 소통공간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달성군 관내 통학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총 예산 3,400만 원을 지원

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이후 출시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전수조사 시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폭염 대책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여름철 폭염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대응 추진사항으로는 폭염대응 TF팀을 구축하여 비상단계별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도우미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거노인 보호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 예찰 및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인 피해방지 및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40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살수차 4대를 임차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횡단보도에 그늘막 3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에는 스마트그늘막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 주요관광지에 쿨링포그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수경시설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폭염특보 시 홍보활동으로 폭염전파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앰프 방송 및 전광판을

통해 야외활동 자제 등을 표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안부 묻기 전화서비스, 농업인 및 자율방재단원에게 문자 발송을 통한 예찰활동 실시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도동 2리 및 자모리 양수장 정부지원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취수시설 정부지원금은 낙동강 보 수위조절과 관련한 시설 개선 지원금입니다. 지난 5월에 환경부에서 취·양수장 시설 개선 및 친수시설 이동 등에 필요한 임시대책용 사업비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사전 의견수렴 회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보 개방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임시대책용 특별교부세를 받아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할 경우 우리 군이 보 개방을 찬성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취·양수장 시설개선 후에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보 수위를 조절할 우려도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의향이 없음을 표명하였습니다.

취·양수장 지원금 문제는 보 수위 조절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향후에도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환경부와 협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보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준공 후 7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6개 단지에 약 8억 6,000만원, 올해 13개 단지에 약 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단지의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지 규모별로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세대당 지원금액은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세대당 8만 원, 100세대 미만은 세대당 30만 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비율을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공동주택일수록 각종 시설의 잦은 고장과 안전관리 등 보수비용이 증가하므로 지원방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준공 연수에 따른 차등 지원기준을 신설, 검토하는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문도 저희 의원들의 질문이 달성군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아시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성관광단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중에 원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개발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 민간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14개 업체나 개인 투자자에게 유치 설명회를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치설명회를 가진 후 그 기업이나 개인이 관광단지 입지 및 사업성 성공 여부에 대해서 서면이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의 답변이 온게 있는지, 이 부분만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진용환 예,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건의 투자유치 설명회 후에 투자의향을 직접적으로 내비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사업내용과 또 투자자가 생각하는 수익성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투자자의 유치가 어떻게 몇 년까지 가능할 것이냐 아니냐, 또는 몇 년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나 경기 등을 분석하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과연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의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바라보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도원 의원 지금까지도 계속 민원이, 얼마 전에도 계속 그런 민원들이 와가지고 불상사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어떤 계획이든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계속 이런 민원이 돌출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우리 달성군으로 봐서는 제일 큰 프로젝트입니다. 단지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사업과의 어

면 비교성을 봤을 때 이 관광단지는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현재도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관광단지를 유치하는 그런 쪽 부분에서는 광고비라든지 뭐 활동이나, 매우 조직적이고 금액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성관광단지는 2012년에 용역비 5,000만 원, 2018년인가 2017년에 한 2억 정도 시비를 받아서 그것도 사용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9,0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이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관광단지는 그냥 방치수준이다, 물론 14개 업체가 와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그냥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축소해서 한 구역부터 하면 나머지 사업은 저절로 추진이 되지 않겠나, 지금 전반적인 사회 경기가 봐서 어느 업체에서 확실한 수익사업도 없는데 9,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곳에 투자를 하겠냐는 의문점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큰 그림을 좀 철회하시고 작게 축소해서 한 부분이라도 해서 그 부분이 정말 달성군에서 가장 좋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간곡히, 축소해서 온천지구라도, 아니면 온천이라도 군에서 군비를 조금 투자를 해서라도 개발해 주시면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진용환** 예, 그 단계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단계적으로 개발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기 개발된 지역 때문에 다음단계에 개발해야 할 부지 값이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단계

의 개발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보다는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과연 투자자로부터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지, 아니면 실지로 지금 변화된 경제환경 상황에서 투자자는 어떤 사업을 선호를 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도원 의원** 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관광단지 질문은 본 의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최상국** 서도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이대곤 의원입니다.

그동안 14개 업체나 와서 이렇게 투자하려고 방문했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업체들이 약산지구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부군수 진용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수익성이란 측면, 그다음에 뒤쪽으로 있는 고압전선, 그다음에 지구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주거지역 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또 주민 민원,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는 이유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곤 의원** 거기 보면 골프장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부군수 진용환**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곤 의원** 이게 골프장이 옛날같으면 경제적 논리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골프장은 거의 들어설 데는 다 들어섰다 이런

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골프장 부분은 과감히 축소하는 게 약산온천 지구를 살리는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군수 진용환 예, 의원님 말씀대로 골프장에 대한 사실은 수익성이 종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 달성지역 주변에는 그런 골프장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 전체를 놓고 보면 동쪽, 그리고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골프장이 배치되어 있지 서쪽 편으로는 골프장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곤 의원 이 계획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실행도 지지부진하니까, 주민들 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으니까 좀 빠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이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구자학 의원님, 아까 본질문 하신 이후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웅성거림)

부군수님은 보충질문이 없으면... 아, 있습니까?

(웅성거림)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질문은 본질문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충질문 하시면 됩니다.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구자학 의원 부군수님,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달성군립도서관 주차시설 확장과 거기에 대한 시설 협소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2014년도에 준공됐죠?

우리 부군수님께서서는 잘모르실지 모르지만 이 달성군립도서관은 201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일 평균 250명, 월 7,4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진용환 예.

○구자학 의원 여기에 준공될 시에 보면 부지면적이 591평에 연면적이 607평입니다. 여기에 세미나실, 강좌실, 각종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사실 주차장과 시설 협소로 해서 10만 읍면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면 16대 정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하면 주차난은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차난을 해소하면 그다음에 뭐냐 하면 세미나실이나 또 강좌실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주차장을 기계식으로 설치보다는 부지를 인근 주변에 조사를 해서 있으면 매입을 해서 주차난 해소와, 또한 강좌실이나 세미나실의 주민들 이용에 굉장히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진용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학 의원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진용환 예.

○구자학 의원 여기에 사실 문제점은,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데 주차장 협소와 열람공간 협소, 시청각실 협소, 그리고 강좌실 확충,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주변 인근에 토지를 확보하는 것 같으면 또 거기에 오는 이용자들의



동아리실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을 한번 조사를 해서 토지 매입에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진용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렇게 되면 주차장과 세미나실, 강좌실, 이 모든 것을 활용하는 데 토지를 이용하면 효율을 극대화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우리 부군수님께서 늘어나는 다사 10만 인구를 대비해서 지금도 늦지만 더 늦기 전에 이 부분만큼은 심사숙고해서 한번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주시기 바라는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부군수 진용환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이미 다 기 개발된 상황이어서 사실은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면밀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사실 이게 군립도서관이 다사에 있지만 타 읍면에 작은 도서관보다 협소해요.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다시 심사숙고해서 예산 반영을 읍면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달성군민을 위해서도 그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진용환 예.

○구자학 의원 다음은 지적분할된 우리 관내에 사유지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아시죠?

○부군수 진용환 예.

○구자학 의원 이게 우리 관내에 많습시다. 우리 부군수 설명에 준하면 1970년대 전후로 해서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확장, 기부채납, 또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시다. 이 지적분할을 시켜놓고 건축허가는 났어요. 건축허가 연도를 보니까, 담당부서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으니까 '99년도에 무허가건축에 대한 양성화시

켜놨어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이 재개발이 20년인데 완화돼가지고 30년 지나면 재개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성군 관내에 일부분의 토지대장을 확인하니까 이 지적분할된 게 1979년도 돼있어요. 그러면 40년 됐어요. 건축물은 또 '78년도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도로 없는 데 건축허가가 났다 이 말이지. 이 부분은 지적분할 하면서 사업계획서 제출했을 때 기부채납인지 아니면 무상 달성군으로 기증, 유상으로 했는지, 행정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은 도로고 증축·개축할라고 하니까 지목상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건축허가 불허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지가 국유지나 우리 군유지 같으면 현황에 도로 개설돼있고 우수관로 설치돼있고 우수관로 다 설치돼있습니다. 지목변경이 가능하지만 이걸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증축, 개축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증·개축이 안 됩니다.

만약에 현 사항에서 건축허가가 나있는데 붕괴가 돼가지고 인사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도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익, 지역개발, 중요시됩니다. 그러나 우선시되는 것이 현재 지적분할된 사유지 이 도로는 우선 매입해서 주민 갈등을 심각한 것을 해결하고 우선사업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진용환 19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사실 마을 안 도로들을 실지로 보상 없이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개설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동의서나 승낙서의 관리가 잘못됐고 그

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앞서 답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부군수님!

70년대 전후로 해서 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했는 것 같으면 그 「건축법」에, 지금 「건축법」이 개정된 것 같으면 지금 현 사항은 도로가 없어서 증·개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중요시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더 우선시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군수 진용환 제가 답변드린 대로...

○구자학 의원 아니죠. 우리 부군수께서는 7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동의서나 받고 그래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토지 지주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뀐 상태에서 거기에 개축이나 증축할라 그러니까 길이 아니니까 인허가가 안 나요.

○부군수 진용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자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심각해요, 가보면.

다만 제가 하는 말은 지적분할된 토지만 말하는 겁니다.

○부군수 진용환 예.

○구자학 의원 현황도로인데 지적분할...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적분할시켜놓고 거기에 우리 관에서 하수관로 우수관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황도로를 보상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준공하여서 지목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진용환 예.

○구자학 의원 꼭 그렇게 하시겠죠?

○부군수 진용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런 두루뭇술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본 의원이...

○부군수 진용환 공식적인 답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상의 답변은 없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음은 제가 266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 했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에 달성문화센터 옆 경사면을 일부 절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산지 전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왔는데, 작년하고 올해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산지관리법」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경사도 23도 이상 같으면 개발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더 강화돼가지고 18도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 달성군 문화센터 여기 보면 센터 부지면적이 얼마나 하면 약 2,723평입니다. 거기에 건축면적이 2,178평이에요. 면적과 건축면적에 준하면, 여기 이용자 수가 1일 900명 정도 됩니다, 1일 900명인데 주차면수가 지금 62면이에요.

266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다사 근린공원에 대구시에서 관리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1광장을 활용해서 하면 좋은 방안 같다 하니까 대구시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지전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행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절개해서 원상복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봤습니까?

○부군수 진용환 제 경험치상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구자학 의원 부군수님, 사업은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군수 진용환 제가 공원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구자학 의원 했어요?

○부군수 진용환 예. 공원위원회의 그간의 위원들의 성향이나 특징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구자학 의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문화센터는 어떻게 건축했습니까?

○부군수 진용환 그것도 상당히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하게 된 겁니다.

○구자학 의원 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답변 받을 때에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능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토록 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왜 있습니까?

○부군수 진용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공원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공원이라는 것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균형된 시각으로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구자학 의원 부군수님, 문화센터는 경사도가 더 심해요. 거기도 전용됐다 이 말이야, 전용해서 건축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논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만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용은 좀 들어가더라도, 더 많이 소요되겠지만 원상 복귀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원 지정용도와 상충되어 변경 불가능, 했는데 여기는 사용 용도가 주차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용면적이 29% 아직 남았습니다, 여기.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우리 달성군에서 그 인근에 단독주택지를 매입했는 거 알고 계시죠?

○부군수 진용환 예 예.

○구자학 의원 1517-13번지입니다. 118

평. 단독주택지에 대해 문화센터의 주차장부지가 협소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517-12번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감정 보상가하고 토지 지주가 원하는 가격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매입 못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했지만 지금 4층 건물이 지금 준공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완공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별로 공원,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근린상가, 분양을 했습니다. 이 매입한 부지가 1517-13번지가 단독주택지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부군수 진용환 번지를, 제가 도면을 못 봐서 정확하게...

○구자학 의원 단독주택지를 매입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1517-13번지가 단독주택지예요.

○부군수 진용환 도면 잠깐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구자학 의원 부군수께서 답변했는데...

○부군수 진용환 지금 균유지로 되어 있는 그 지번...

○구자학 의원 그렇죠, 균유지. 그거 단독주택지입니다. 주차장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제가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묻나 하면...

○부군수 진용환 제가 세 번 정도 현장을 갔었는데 주차되어 있지는 않았던...

○구자학 의원 그 밑에 보면, 하단 부분에 단독주택에 보면 일부분 거기에...

○부군수 진용환 접근이 안 돼서...

○구자학 의원 1517-13번지가 우리 균유지입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부군수 진용환 제가 잘못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접근이 안 돼서 주차가 안 되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학 의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에서는 주차장 아닌 용지를 주차장으로 개인이 썼을 때는 거기에 용도변경 하라면서 과징금을 추징한다든지 합니다. 맞지요?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대구시와 협의해서 현재 주차장과 단층이 심하니까,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 같으면 거기에 단차가 6m, 7m 돼요. 그러면 타 워식으로 해서 2·3층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주차장 한 면을 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세 평 되는데, 예전에는 2.3이었지만 요즘은 2.5로 해가지고 5m 하는 것 같으면 한 서른 평 잡고, 118평 같으면 3층 같으면 여기에 많은 대수를, 어느 정도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진용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시설로써 부족한 주차수요를 다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자학 의원** 부지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현재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다만 법면하고 그 이용해서 사용하는 데 하고 이 주차장부지를 주차장용지로, 현재 우리 군유지인 단독주택지를 주차장용지로 변경이 가능한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쓴다면 아무래도 여기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진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266회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서재 동화 아이위시 2차·3차 아파트, 태왕아파트 공사 중인 중로 1류 104호선 부분과 군도 5호선 연결,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우리 부군수께서 부임하고 나서 준공이 떨어졌나?

이 중로 1류 104호선은 길이가 728m지만 현재 남은 구간이 60m입니다. 동화아파트 2차, 3차, 그리고 서동초등학교, 그 옆에 태왕이 이번에 분양을 해서 939세대가 지금 분양됐습니다. 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중교통 버스가 달서로, 세천로로 그쪽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버스정류장에서 아파트 정문으로 거리가 얼마나 하면 260m에서 300m입니다. 그 내려오는 경사도가 10도.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까지 갈라 그러면 이 경사도 문제, 거리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노약자나 어린 아이를 태운 유모차가 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겨울철 결빙기 때는 더욱 더 심각한 상태가 옵니다, 여기에. 거기 차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설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염수 자동살포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9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경사도 심하고 거리가 거기 멀어도 여기에 대해서 대중교통 노선 변경을 안 하면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문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중로 1류 104호선을 군도 5호선과 접속하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태왕아파트 939세대 대구시에서 통합 건축심의 위원회 통과하고 우리 달성군에 이관했을 때 부서별 의견이 없었다. 의견 낸 부서는 도시

과에서만 이 부분은 연결해야 된다, 향후 지역 주민들 늘어나는 인구 예측을 해서 그래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군수님 말씀 들어보면 우선순위에 안 든다, 대구시에 201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는데, 우선순위를 떠나가지고 행정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게 행정서비스입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진용환 예.

○구자학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과 밀접한 이런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본 의원은 대구시 사업이지만 20m 이상은. 20m 이하, 6m, 8m, 10m, 15m, 이 소방도로는 군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여기 인구가 태왕아너스에 보면 1만 1,600명입니다, 1만 1,600명. 거기만 해도.

2021년 준공 전에 이 부분은 예산 소요가 12억에서 한 15억 드는데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지.

○부군수 진용환 답변은 아까 본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렸고요...

○구자학 의원 이거 그대로입니까?

○부군수 진용환 다만 시에서는 사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실망스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0m, 35m, 광로 대로들을 개설하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지역적으로 한정돼있고 이런 사업은 사실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진용환 예.

○구자학 의원 우리 달성군 관내에 제가 특

정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논공지구입니다. 30m 도로는 대구시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공단지역이지만 여기는 현재에 8만 8,000 인구가 살고 향후 2년 반 있으면 11만 600명이 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추산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시돼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그로 인해서 지고 지역이 개발되고 민원 해소되고 또한 모든 것이 상권도 활성화되고 하지만, 다만 이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시 급사항입니다. 대중교통 버스가 가고 싶어도 이 60m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시급사항 아닙니까?

부군수님, 시급사항 아닙니까?

○부군수 진용환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60m 구간을 제외하고 나서 우선 버스노선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현장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구자학 의원 부군수님, 이 부분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질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통합건축심의회를 통과해가지고 달성군에 이관돼와서 부서별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의견 제시한 데가 도시과라 했지요? 태왕아너스에, 거기에 사업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용폐된 부분이 면적이 얼마나 하면 약 9,000㎡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외부 외곽 조건부로 해서 그분들이 기부채납 하는 게 한 6,500㎡ 돼요. 이분들 사업자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해서 여기에 왔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이 일어났을 때 대비해서 행정기관에서 이거는 의견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군수 진용환 도시과에서 의견 낸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구자학 의원 그거는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제일 먼저 짚어줘야 돼요.

○부군수 진용환 똑같습니다.

○구자학 의원 도시과하고 교통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대중교통편은 교통과예요. 그럼 교통과에서 짚어줘야죠.

향후,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버스 정류장은 현 정문하고 250m, 300m, 차이 나니까 그러면 우회해서 이 도로로 가야만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죠.

○부군수 진용환 어느 부서에서나 의견을 내는 거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의견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종전에는 사업부와 관계되는...

○구자학 의원 부군수님! 사업자가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것 같으면 행정기관이 왜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해야죠.

○부군수 진용환 법적으로 권한 있는 범위가 있고 그 권한을 벗어나는 범위가 있습니다.

○구자학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진용환 예.

○구자학 의원 우리 달성군에서 아파트 분양가 조정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조절하죠?

○부군수 진용환 우리 군에서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자학 의원 조절 안 합니까, 분양가?

○부군수 진용환 같이 협의를 하죠.

○구자학 의원 협의하죠?

○부군수 진용환 예 예.

○구자학 의원 그 협의하는 게 조정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부군수 진용환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구자학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 60m 도로 개설했을 때 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 조성단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성단가가 얼마, 여기에 분양단가가 얼마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달성군 관내에 개발할 데 많아요. 향후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파트 이런 부분 건축심의 들어갔을 때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 서재에 60m 있죠? 이 부분만큼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진용환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학 의원 이상으로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달성군민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진용환 예.

○구자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구자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만 간추려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학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김보경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김보경 의원입니다.

질문방식이 서서 답변하고 앉아서 질문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보충질문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구조 방식이 보충질문을 많이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같아서 앉아서 몇 개 핵심적인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 사고 대책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요지

는,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더위로 인해 안전에 대한 해이해진 우리 현실을 살펴보고, 특히 우리 희망이자 미래인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대책을 요구하고자 본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양산시 가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단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에서 지난해에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 안전장치, 슬리핑 차일드 체크장치를 선도적으로 집행을 하고 마무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방시스템은 많지만 도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다행히도 달성군은 설치 완료했다고 하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봅니다.

이어서 어쨌든 폭염대책의 내용을 본다면, 전체적인 답변서에 보면 잠깐 좀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시 단위에서도 지원책이 많은데 우리 달성군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습디만,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에 대한 물품 지원, 즉 여름이불이나 쿨스카프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고민해보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즉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한꺼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달성군에서 건설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어차피 농업인 피해 방지 및 보

호활동으로 농업재해 보험 부분, 농업재해 보험 가입, 어쨌든 이 부분은 유도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입 유도에 대한 의향을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쿨링포그 8개소하고 추가 3개소로 하신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쿨링포그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도심 열기를 내릴 수 있는 가로수에 대한, 식재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가로수 식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폭염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진용환 물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냉방장치라든가 다음에 냉수라든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시하고 한번 더 의논해보고 올해 어떤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에는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 전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금지를 하고 그늘에서 쉬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 물을 뿌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특히 큰 건설현장 쪽으로는 저희들이 현장 지도 점검하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은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사안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보험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홍보하고 또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쿨링포그하고 가로수 실태 이런 부분은 아마 큰 예산이 든다거나 정

책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고요, 관계되는 자료들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장님께서도 빠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시고 이래서 제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렇게 엑기스만 몇 개 드리고요.

어쨌든 두 번째, 다사 지역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 공모신청을 6월 3일 날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러나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다 되는 거는 아니니까, 탈락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부군수 진용환 예. 지금 추가로 26군데, 전국에 26군데 정도 해서 국비 10억 원씩 이렇게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만, 유가 쪽에 운동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한 차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좀 균형적인 차원에서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선정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더 적극적인 관심과,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진용환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빨리 선정이 되어서, 잘 지어서 진짜 다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동 2리하고 자모리 양수장에 대한, 시설개선비조로 해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원금액이, 제가 조사한 바

로는 한 개당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서는 얼마로 알고 계신가요? 금액이.

○부군수 진용환 양수장은 3억 정도 해서...

○김보경 의원 한 개당 그렇죠?

○부군수 진용환 5개소 정도, 예.

○김보경 의원 그다음 이 관련되는 지역은 지자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부군수 진용환 예. 낙동강 수계에 구미, 상주, 그다음에 고령, 함천, 의령, 뭐 이렇게, 창녕, 이렇게 죽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그러면 현재 어쨌든 시설개선비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어쨌든 지원에 대한 찬성의 의향을 밝힌 지역은 어디고 의향이 없는 지역은 어딘지, 지금 자료에 본다면 달성군은 의향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군수 진용환 예. 반대 의사를 밝힌 자치단체가 상주, 구미, 성주, 예천, 그리고 우리 달성군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령은 애초에는 반대의견을 냈다가 의견을 변경해서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입장을 변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창녕도 남았다가 창녕도 수령하는 의사를 표명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진용환 예.

○김보경 의원 어쨌든 제가 파악하기로는 달성군만 의사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시설개선비 특별교부세와 보 개방시설 어떤 그거와 연관을 꼭 크게 짓기보다, 물론 관계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있을, 가뭄도 있을 수 있고요 가뭄을 대비해서라도 양수장 시설에 대한 보강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군수 진용환 지금 현재의 수위 상태에서 양수를 할 수 있는데 추가로 양수시설을 더 하겠다는 것은 수위를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수위를 더 낮췄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로 양수시설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시설개선비와, 물론 고민도 충분하게, 지역민들 의견, 여론, 이런 것도 충분히 고민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시설개선비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신청의사 의향, 관계 없이 환경부에서 보 수위 조절을 진행해서 이렇게 진행해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는 집행부의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진용환 시설개선은 저희들 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직접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 아,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틀린데요. 여기서 논쟁을 하기보다 일단은 속기에 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견으로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설개선과 어떤 보 개방에 대해서 너무 연관을 지어서 이 사안을 바라본다면, 뭐 다른 쪽에서 취재도 계속하고 이러던데, 우리 달성군에서도 어떤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부군수 진용환 예.

○김보경 의원 판 거 더 있는데 길게 하다가는, (웃으며)의장님 자꾸 바라보셔가지고 보충질문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김보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곤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이대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곤 의원 장시간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무더위철이 다가오니까 문제는 마을마다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에어컨을 틀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는 쪽방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혼자 거동 못 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뚜렷한 뭐 대책이 있습니까?

○부군수 진용환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나 또 거동 불편하신 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방문팀들이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방문이 안 되면 전화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좌우지간 무더위철이 다가오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취수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사람이 칼을 간다고 꼭 짐승을 잡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셔가지고 정작 할 일은 놓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보 개방을 전제로 하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 달성군이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너무 과민반응이 아닌가 싶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걸 정부에서 받지 않을 때 정부 정책이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 좀 달성군이 불이익을 받을 그런 거는 없나요?

○부군수 진용환 실지로 환경부에서 회의를 하고 또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하는 이유가 보 개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직접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오해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대곤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모니터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이걸, 설치하고 나서 보 개방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만약 이게 달성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영향으로 다가올까 싶어서 저희들은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군수님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을 간다고 해서 꼭 짐승을 잡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도일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께서 서도원, 이대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경제환경국장 곽국일입니다.

먼저 서도원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제지공장 개선사항 및 남부권 주민의 환경권 증진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유가지역 제지공장의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테크노폴리스를 포함한 남부권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해결점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지공장 환경개선을 위해

서 사업장별 중·장기 환경개선계획을 제출받아 단계별 시설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교체, 소각로 백연저감시설 설치, 소각폐기물 파쇄품 반입, 폐기물 보관시설 개선, 사업장 전반의 탈취시설 보강, 진공청소 차량 운행, 폐기물 투입시설 자동화 및 제조 공정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는 종이 건조시설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산제지(주)는 현재 악취 탈취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악취도를 저감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시설인 백연저감시설을 2020년 상반기에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하(주)는 연내에 건조시설을 밀폐화하고 2020년부터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백연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설치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여 건조시설의 악취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아진피엔피는 당초 수립한 개선계획 추진 중에 소각시설 노후화로 부분개선의 애로를 주장하며 소각시설 전면 교체를 자체 검토 중이며, 회사 측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체시설 용량, 방지시설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환경개선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도출되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대기환경의 상시측정을 위한 측정망을 현재 설치된 상수도 달성사업소에서 테크노폴리스 주거지역 내인 유가읍 비슬공원으로의 이전을 연내에 완료하고, 악취 취약시기인 7월부터 10월까지 심야시간대에 주요 악취물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악취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제거토록 하겠으며, 사업장 전반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지속 실시하여 불·탈법 행위를 근절하는 등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

다음으로 논공읍 노이리 창고에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경북 내 총 9개소에 약 1,214톤의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창고가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논공읍 노이리 창고건물에도 약 140톤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다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적발되어 폐기물 처분명령 등 수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인·허가, 관리, 행정처분 등 모든 관련 업무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수사 및 사후관리 업무 또한 직접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문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한정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많은 양의 의료폐기물로 인해서 처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우리 지역에 불법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이 도시지역이고 여러 가지 주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인 8월 중순부터해서 1개월 정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특성상 부패 발효에 의한 2차 유해병원균 발생의 위험이 있고, 특히 여름철 기온 상승 및 침출수 유출 등 감염으로 인한 오염피해가 우려되어 우선 건축물 외부 천막에 보관되어 있는 의료폐기물을 모두 밀폐된 창고건물 안으로 보관조치 하였습니다.

방역업무 관련 부서인 보건소에서도 초미립자 살포기를 이용하여 매주 2회 살충효과가 뛰어나고 지속력이 긴 살충소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보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주 1회 살균소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도 소독 전문업체와 계약해서 보관창고 내·외부에 주 1회 살균소독을 하고 2차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이 우선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독촉하여 의료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도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파, 마늘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지원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양파의 재배면적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과 강수량이 최적화되면서 작황이 매우 호전되어 양파 값이 폭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늘 또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작년보다 20% 정도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양파·마늘 생산량 및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의 경우 작년 재배면적은 176ha로 생산량은 약 1만 6,500톤으로 산지가격은 20kg당 1만 원 선이었으나 올해 재배면적은 196ha이며 생산량은 약 2만 2,000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지가격이 5,000원 선으로 작년 대비 50%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마늘의 경우 작년 재배 면적은 228ha이며 생산량은 약 6,900톤으로 산지가격은 20kg당 6만 원 선이었으나, 올해 재배면적은 240ha이며 생산량은 약 7,200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지가격이 4~5만 원 선으로 작년 대비 2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시세의 주기적인 급등락으로 인한 양파·마늘 농가의 피해를 대비하고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파종자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 양파 육묘용 톱밥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1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내년에는 양파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농가 및 농협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이란 사전 면적 조절 및 출하 조절 등의 세부사업을 통해서 양파 과잉생산 시 가격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격 하락 시 농가에게 소득을 보전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양파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를 위해서 달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파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여 양파 생산농가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2시에 사문진에서 기자단들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장시간 자리해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군수퇴장)

경제환경국장 답변에 대해서 서도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권 악취,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답변 내용 중에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체는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까. 제지공장 쪽에서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언제 언제까지 무엇 무엇을 어떻게 시행했다고 온 적 있죠?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예,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그게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몇 퍼센트가 되고 뭐가 안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우선 제지공장의 자체개선 이행사항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인접한 4개사 제지공장으로 인한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 저감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지회사로부터 제출받아 매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지공장 개선 추진현황으로는 경산제지, 세하는 소각시설, 백연저감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소각시설을 운영 중인 3개사 모두 소각물질 전량을 파쇄품으로 반입하고 소각 효율 증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보관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 슬러지보관장 등 악취가 배출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탈취시설을 설치 완료했으며, 주요개선사항으로는 세하는 종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종이 정선설비를 2018년에, 그리고 고지 투입 자동화설비를 2019년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증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LNG로 전환하였습니다.

경산제지는 폐수처리장 집수조, 슬러지보관장 밀폐와 폐수처리 과정의 악취 저감을 위한 폭기시설 개선을 2018년에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진PNP는 폐수처리장 공정 개선을 통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슬러지보관장이라

든지 농축조를 2018년에 폐쇄하였습니다. 사업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로 진공청소차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알스트롬-몽쇼는 제조과정에 악취 저감을 위하여 함침공정 배기가스 개선하여 방제시설 처리 효율 개선을 '17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서도원 의원 그 약속한 기간 내에 아직까지 시행 안 한 부분들이 있죠?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예,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약속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산 제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제가 본부장이라든지 공장장 불러서, 의회 의원님도 그때 방문해가지고 독촉도 했는 부분인데 왜 계획이 제대로 안 이뤄지나, 상세계획을 제출하라 해서 그저께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시공 완료해서 시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매월뿐만 아니라 매주 체크를 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의원 지금까지 업체들이 저감장치 설치라든지 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악취를 유발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정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그 시행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모 업체는 2020년 3월까지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행도 안 했을 경우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약속을 안 지킬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이 아니라 일주 정도, 일주 간격으

로 진행사항을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사 설계 부분이라든지 착공 부분, 이런 부분은 계약서 등을 확인해서 제대로 공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만약에 끝까지 안 한다면 우리 직원을 상주시키더라도 제대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잘하고 있는지까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의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우리 환경부에서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대해서 2019년, 2018년 수립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1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끝났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모든 악취 배출시설 사전신고제 등 악취 불편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수립계획안을 보면, 우리 테크노폴리스지구 내에는 이 시행대로만 하면 청정도시가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기 전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의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악취는 소음, 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취를 계속 맡다 보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우리 지역주민이 지금 이제 테크노 쪽에 현풍, 유가, 구지가 창녕군 인구만큼 거주하게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이게 이제 기업도 배출기준이나 이런 데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론 배출기준이 넘으면 법적인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지만 분명히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테크노 쪽의 제지공장들 그분들이 지금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2020년 3월까지 한다 그러는

데 이제는 시설과 투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 대표들과 오픈을 해가지고, 항상 모든 상황들을 오픈해가지고 민음이 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무엇을 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또 모 업체에서 SRF 보일러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신청 들어온 게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궤국일 아직 신청은 안 됐습니다.

○서도원 의원 신청은 안 됐죠?

○경제환경국장 궤국일 예 예.

○서도원 의원 고품폐기물 연료라고, SRF 보일러 때는 그 연료가 무언지는 잘 알고 계시죠?

○경제환경국장 궤국일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그게 뭘로 만드는데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궤국일 폐목재라든지 합성수지, 그런 걸로...

○서도원 의원 플라스틱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 이 SRF를 태워 열과 전기를 얻는 SRF 발전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신재생에너지라고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부터 신규, 지금까지 허가된 거 말고 신규 SRF 발전소 및 소각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가 2018년 말 0.2에서 0으로 하향 조정돼 아예 폐지된다, 즉 SRF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 시설의 허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SRF도 미세 먼지나 그, 주범이다. 근래에 우리 성서공단에 발전소 할려다가 허가 취소된 거 알고 계시죠?

○경제환경국장 궤국일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그거 왜 취소됐다고 생각하

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궤국일 어떤 부분을 소각을 하면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아진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소각로에 나오는 배출보다 조금 진전된 SRF지만 배출되는 물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그렇죠? 아무리 기준치에 적합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기 허가난 부분의 증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만 앞으로 이런 민원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악취정책 ...청사진 마련 부분에 보면, 우리가 악취를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궤국일 일차는 관능 부분으로 해서 냄새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서도원 의원 정확하게 관능법이 뭐죠?

○경제환경국장 궤국일 일단 사람 코로 해서 인지를 해서 일단 먼저 하고 어느 정도 되면 공기 포집을 해서 환경연구원에다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서도원 의원 그래서 우리가 향산화물질이나 이런 거는 드론이나 이런 걸로 포집을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만, 악취는 관능법이, 사람이 몇 명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데, 그런데 이번에 2019년~2028년 정부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보면 현장 악취 측정 신뢰성 향상을 위해 현장 관능시험장비 ‘올팩토미터’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 유럽에서는 휴대용으로 악취 측정을 한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측정장비들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경제환경국장 궤국일 그 기계는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지만 우리 지역에 제지 공장이 좀 많기 때문에 환경 부분, 악취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토록 해보겠습니다.

○서도원 의원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 청사진 2018년 수립계획안을 보면 우리 지역도 이제 악취나 이런 부분, 이대로만 하면 악취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벗어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2층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방청을 많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의 앞으로 삶이 악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 만일 안하신다면 퇴출할 방법이 있는지도 강구해 주시고, 이제는 이런 악취와 어떤 유해물질 속에서 인간이 산다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어떤 의무가 있는데, 지금 테크노폴리스 이런 데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2층에서 저렇게 모든 일을 미루고 오늘 방청석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의 주민 대표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오픈해 가지고 항상 같이 움직여서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노이리 의료폐기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적극적으로 소독 살충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오면 상온에서 한 이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보관이, 상온에서?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제가 알기로는 한 5일 정도...

○서도원 의원 그거는 영상 5℃일 때 한 5

일 정도고 상온에서는 한 이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거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한 140톤이.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이게 환경부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을 거는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에 독촉해서 저희 지역에서 그런 의료폐기물이나 이런 게 빨리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예, 알겠습니다.

○서도원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서도원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서도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이대곤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이대곤입니다.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마늘하고 양파가 거의 폭락하다시피 해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하늘을 원망해야 되나, 정부를 원망해야 되나 지금 헛갈릴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에서는 마늘, 양파라든지 영농하는 부분에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예, 그렇습니다.

○이대곤 의원 그래서 여기 답변하신 데 보니까 현재 시행 중인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줄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현재 시행 중인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은 농산물가격 하락 시에 가격 차액보전을 통해서 기준가격에 80%를 지급하여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출하 정지, 면적 조절을 통해서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8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마늘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늘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배정해서 12농가에서 사전 면적 조절로 4헥타 정도의 마늘밭을 정리했습니다.

○이대곤 의원 답변내용에 보면 예년보다한 20% 정도 더 파종을 많이 했는 걸로 나오는데, 사전에 이렇게 좀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이게?

이렇게 파잉생산이 되니까 결국 농민들에게 손해가 돌아가는데도 농민들은 막 심고 그러는데, 이걸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 없나요?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이 작목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곤 의원 그래서 저는 달성군에 건의하고 싶어요. 전국 단위의 작물재배 현황, 특히 양념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정부에 한번 건의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매년 마늘, 양파만 문제가 아니고 배추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수급조절이 돼야 되는데, 매년 두고보자니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한번 우리 달성군에서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농민들이 파종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태조사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건의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예, 그 부분은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지금 폭락돼 있는데 이 가격안정을 위해서 우리 달성군에서 어떠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판매 촉진방안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판매 촉진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이 싸면 소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해서 소비 부분도 있고, 그 외 부분은 앞으로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마늘, 양파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그래서 저는 달성군에서 좀 더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셨으면 해요. 조사해보니까 다른 타지역에서는 마늘 양파 수급안정제 및 판매 촉진에 관한 대책을 한다 그러고, 향후에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촉진 서한문도 발송한다 그러고,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양파 마늘 더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각종 특판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념류 특히 마늘 양파에 대해서 판촉에 달성군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예. 타지역의 좋은 정책들을 우리 군에도 접합을 해서 소비 촉진 이런 부분도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예?

○이대곤 의원 농작물재해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농작물재해보험은 홍수라든지 태풍, 이럴 때 해당 보험되는 부분이고, 물량 수급 조절하고는 별개로 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농민들의 시름이 깊으니까 좀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곽국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이대곤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곤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 도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주민복지국장 신후남입니다.

도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보조사업으로 13건에 16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초 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규모가 가장 작은 중구는 4,900만 원보다 33배, 가장 규모가 큰 달서구 8억 900만 원의 2배로,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 지원규모가 가장 큼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보조사업 중 우리 군 영·유아들의 급·간식비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급·간식비가 보건복지부에서 11년째 동결된 현실에서 우리 군의 근간이 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급·간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 만큼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예, 주민복지국장 답변에 대해서 도일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13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3건이죠?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예.

○**도일용 의원** 제가 지금 중구, 동구, 서구, 남구, 8개 구·군과 시까지 다 포함해서 아이들의 보육 특수시책 사업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3건에 16억 5,4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우리 군에서는 보조사업 중에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가지고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방역 소독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일용 의원** 그러면 전혀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지원금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예,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도일용 의원** 그럼 13건 16억 5,400만 원이 다 어린이집에 그냥 지원을 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예. 주로, 사실은 달성군의 교사들이 전에는 교통문제 때문에 여기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여기도 연간 한 5억 가까이 듭니다. 이래서 요사이는 타지역에서 교사들이

서로 달성군으로 오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린이 보육 질 개선사항으로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13건은 직접적으로는...

○도일용 의원 하나도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돈은 없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예 예.

○도일용 의원 (한숨 쉼) 지금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의 급·간식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지금 달성군에는 직장어린이집 4곳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우리 달성군에서 하는 직장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참꽃어린이집하고 테크노에 하고 네 군데가 있는데, 직장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2,000원 주는 데도 있고 3,000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도일용 의원 저희는 얼마죠?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우리 달성군에서는 직장어린이집에 2,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일용 의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말고 기본 아이들은 1,745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1일 급식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도일용 의원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보통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에 대해서, 물론 어린이들도 건강이 중요하지만 좀 빠른 성장시기의 나이대에 급·간식비가 지원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쉬움을 느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11년째 동결이다 보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2,618원이 됩니다, 그죠?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예 예.

○도일용 의원 그런데 지금 지원을 최대한 빨리 해주신다 하시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용 의원 또 하나 덧붙여서, 한번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금액이 책정이 되고 나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나은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저희 달성군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그 지원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일차로 내년에 한번 지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차후에, 그 후년도는 내년에 가서 물가상승이나 그걸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일용 의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후남 예 예. 알겠습니다.

○도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도일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일용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이대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건설도시국장 지창수입니다.

이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공읍 금포리 2394-10번지 선일 로에스가 점유하고 있는 농로 부분을 원상회복 후 농로 개설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선일 로에스는 국유지를 논공읍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강제로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

다.

이에 주민들의 농로 개설을 위하여 우리 군 주관 하에 주민대표와 선일 로에스 대표가 만나서 대체도로 폭 3m, 연장 300m 정도 개설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조속히 농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이대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곤 의원 예, 이대곤입니다.

그 대체도로 개설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렇지만 경과는, 선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예.

○이대곤 의원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자료 중에 한번 봐주세요.

이 푸른색 도로가 옛날에 사용하던 도로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예, 있습니다.

○이대곤 의원 그리고 선일 측에서 대안도로를 제시했다 하나 지금 사용 불가능한 도로가 파란색도로고, 그죠?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예.

○이대곤 의원 지금 군에서 합의한 잠정적인 안이 노란색 도로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예, 맞습니다.

○이대곤 의원 이 딱 보면 국장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도로 보면.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지금 현재 선일 로에스에서 실지로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용받았을 때 그때 '81년경입니다. 이때쯤 해서 국유지를 도로점용 받

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시다만 도로점용을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대곤 의원 이 도로 땅을 보면 옛날에 구농로가 완전히 노른자입니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예.

○이대곤 의원 그만큼 이게 선일에서도 중요하지만 농민들도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게. 농사지으려 갈려면 여기를 반드시 통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대체도로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기업이란 어떤 기업입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기업은 이러이러하다…….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좋은 기업은 고용창출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곤 의원 그렇죠. 특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가부간에, 뭐 안 좋은 평가도 나오게 마련이고 그런데, 선일이 앞으로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좋은 기업으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변 농민들하고 선일 로에스 측에서 몇 년도부터 대체도로, 양해하여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아마도 공장에 사용승인을 받은 1981년경에 국유지를 도로점용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대곤 의원 농로를 어느 만큼의 폭과 길이를 선일 측에서 점유해서 사용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지금 폭이 한

1~1.5m고 연장이 250m 정도 됩니다.

○이대곤 의원 그런데 이게 상호간에 합의 해서 사용한 도로를 수십 년 전에 포장, 구농로 같으면 수십 년 전에 포장되었어야 되는데 대체도로는 왜 그 사람들이 농로를 포장 안 해주고 농민들이 그냥 흙길로 차를 몰고 다니게 한 걸로 만든 거죠?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이 부분은 선일 로에스 개인 소유 땅이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 없이는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대곤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만약 이 도로를 주민들이 양보를 안 해줬으면 선일 부지는 둘로 나뉘어져가지고 굉장히 쓸모없는 상태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지금 이 부분,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 부분이...

○이대곤 의원 초록색.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예, 초록색은 그 당시에 국유지로 점용허가를, 그 당시에 크게 사용 용도가 없어서 논공읍에서 국유지로 도로점용 허가를 해줬던...

○이대곤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주변에 땅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조그만한 땅이 있어가지고 아는데, 그거는 사용하던 도로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뭐 무주공산인 땅을 이렇게 선일에서 가져가서 한 게 아니고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선일 측에서 땅을 가져갔다 말입니다. 가져갔는데, 이 대체도로를 해줬는데, 옛날 같으면 이 농로를 포장할 당시에 80년도 같으면 이 도로는 당연히 구길 같으면 포장이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포장을 안 해주고 흙길로 차를 몰고 다니게 하도록 그렇게 했었잖아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아마도 선일 로에스

에서 자기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통행을 제한했기 때문에 농민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곤 의원 아니, 그만큼 중요한 땅을 농민들이 양보해가지고 해줬는데 그 조그마하게 도로 포장해 주는 그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도로를 원래 원상태로 회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결과적으로는 지금 농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곤 의원 어떻게 보면 선일 측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농민들은 좀 무시해되는 사람이고 그죠? 선일 측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갑질의 한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도로를 마음대로 다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몽그적거리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하겠다 하는 의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갑자기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계속 중재해왔습니다.

○이대곤 의원 아니, 서도원 부의장께서 중재를 몇 번 해가지고 농민들 대표가 만나러 가면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된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그 부분은 전혀, 지금 이 부분이 합의가 된 지 거의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대곤 의원님의 군정질문 때문에 미리 준비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대곤 의원 그렇다 칩시다. 예전에 합의를 막아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로하스 측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데 농민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중재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곤 의원 아니, 립서비스가 안 될라면 무슨 약속서 같은 이런 거라도 제시하고 그 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예.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동의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곤 의원 좌우지간 앞으로 진행될 결과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예.

○이대곤 의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국 이대곤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도원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서도원 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일 로에스하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수차례 선일 로에스 측하고 주민대표분들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선일 로에스 측에서 피하고, 어느 부서인가 제가 전체 민원을 접수도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됐다니까 우리 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되겠죠?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믿어도 되겠습니다.

○서도원 의원 언제쯤 시행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창수 뭐 지금 최대한, 지금 현재 필지가 선일 로에스가 4개 필지고 주민이 한 7개 필지입니다. 동의서 징구하고 있으니까 징구되는 대로 주민들이 아마 동의가 된다면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의원 최대한 주민 숙원 민원인니까 빨리 좀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관광국장께서 도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광국장 표준식 정책관광국장 표준식입니다.

도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복구입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작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우선적으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조례 기준에 따르면 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달성군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6월 1일자 주민등록 기준으로 내년 중학교 1학년 입학 예정인원은 2,505명이며, 올해 3월 1일자 관내 학생 수 현황으로 예상해본 내년 관내 중학교 1학년 재학인원은 2,363명으로, 142명은 관외 중학교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외 중학교 입학자는 화원 지역 80여 명,

가창 지역 60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화원 지역의 경우 유천초등학교 졸업생 80여 명은 중학교 배정 시 우리 달성군과 달서구 중첩 학구로 지정돼 있어 중학교 입학 시 달서구에 지원 입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창 지역의 경우 가창중학교 1개소밖에 없으며, 가창중학교의 경우 뮤지컬 특성화 중학교로 신입생 모집정원 40명 중 40%인 16명만을 지역 우선 선발하고 있어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60여 명 중 대다수는 인근 수성구 중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조례만 제정된 상태로 지원기준, 신청방법 등을 세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의 학생들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일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국** 정책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광국장 답변에 대하여 도일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용 의원** 정책관광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자에서 빠지는 학생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정책관광국장 표준식** 예. 가창하고 화원입니다.

**○도일용 의원** (웃으며)패싱입니까?

**○정책관광국장 표준식**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도일용 의원** 예.

**○정책관광국장 표준식**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이고, 우리 지역에 관내주민, 주소를 둔 학생은 백퍼센트 지원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일용 의원** 처음에 우리 조례를 만드실 때 이 문제는 뭐, 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희 지역 학생들만 차별을 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의원으로서 정말 느낄 정도로, 정말 기분이 안 좋았던 조례였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우리 화원과 가창의 아이들이 불평등하게 그렇게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쾌스러웠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광국장 표준식** 그 부분의 내용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일용 의원** 답변에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아이들에게 불공평이 아닌 좋은 복지 조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관광국장 표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국** 도일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일용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책관광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     |     |     |     |
|-----|-----|-----|-----|
| 최상국 | 서도원 | 구자학 | 하중환 |
| 김정태 | 이대곤 | 김보경 | 신동윤 |
| 도일용 | 김은영 |     |     |

#### ○출석공무원

|         |     |
|---------|-----|
| 군수      | 김문오 |
| 부군수     | 진용환 |
| 자치행정국장  | 신성진 |
| 경제환경국장  | 곽국일 |
| 주민복지국장  | 신후남 |
| 건설도시국장  | 지창수 |
| 정책관광국장  | 표준식 |
| 보건소장    |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장 | 김수용 |
| 기획예산실장  | 방호현 |
| 법무감사실장  | 류준영 |
| 자치행정과장  | 김외식 |
| 세무과장    | 이상호 |
| 징수과장    | 김용범 |
| 회계과장    | 최태식 |
| 종합민원과장  | 신인식 |
| 정보통신과장  | 정원희 |
| 환경과장    | 정기진 |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 청소위생과장  | 박창규 |

공원녹지과장  
생활보장과장  
희망지원과장  
교통과장  
안전방재과장  
도시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정책사업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보건과장  
농촌지도과장

홍만표  
이재철  
김승일  
임동화  
전명진  
김영권  
위광범  
정동구  
전종규  
최승진  
민병제  
공진환  
곽윤환  
오상덕  
배상일

#### ○의회사무국 참석자

|         |     |
|---------|-----|
| 사무국장    | 김종호 |
| 전문위원    | 김종석 |
| 전문위원    | 이원한 |
| 전문위원    | 송창훈 |
| 의사담당    | 주강숙 |
| 지방행정주사보 | 서금녀 |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제273회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9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7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                                                                 |    |
|-----------------------------------------------------------------|----|
|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 2면 |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 2면 |
|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 3면 |
|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br>(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 | 3면 |
|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br>(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          | 3면 |

|                                                                       |    |
|-----------------------------------------------------------------------|----|
|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3면 |
|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br>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3면 |
|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3면 |
|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군수 제출) .....                 | 3면 |
|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br>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3면 |
|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br>(군수 제출) .....               | 3면 |
|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3면 |
|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br>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3면 |
|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3면 |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의장 최상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 김은영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인 김은영 의원님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사업

계획의 재검토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10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김은영 의원 등 10인 발의)  
(끝에 실음)  
.....

○의장 최상국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은영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영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김보경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최상국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벨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1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

#### ○출석의원(10인)

|     |     |     |     |
|-----|-----|-----|-----|
| 최상국 | 서도원 | 구자학 | 하중환 |
| 김정태 | 이대곤 | 김보경 | 신동운 |
| 도일용 | 김은영 |     |     |

#### ○출석공무원

|        |     |
|--------|-----|
| 군수     | 김문오 |
| 부군수    | 진용환 |
| 자치행정국장 | 신성진 |
| 경제환경국장 | 곽국일 |
| 주민복지국장 | 신후남 |
| 건설도시국장 | 지창수 |

정책관광국장  
농업기술센터장

표준식  
김수용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자치행정과장

김외식

세무과장

이상호

징수과장

김용범

회계과장

최태식

종합민원과장

신인식

정보통신과장

정원희

환경과장

정기진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청소위생과장

박창규

공원녹지과장

홍만표

생활보장과장

이재철

희망지원과장

김승일

교통과장

임동화

안전방재과장

전명진

도시과장

김영권

도시정비과장

위광범

건축과장

정동구

토지정보과장

전종규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문화체육과장

민병제

관광과장

공진환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

보건과장

오상덕

농촌지도과장

배상일

####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석

전문위원

이원한

전문위원

송창훈

의사담당

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

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

배진영

#### ○첨부자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1712 |
|----------|------|

발의연월일 : 2019. 6. 25.

발의의원 : 김은영 의원 등 10인

## 1. 수정이유

-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일반회계의
  -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 세출예산은 **10억 8천 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 기타 특별회계의
  -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과 같음
- 삭감내역은 불임 수정내역과 같음

불임 : 수정내역 1부. 끝.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제출예산액<br>(A) | 수정내역  |       | 예비비<br>조 (D) | 수정예산액<br>(E=A+B+C+D) |
|---------|--------------|-------|-------|--------------|----------------------|
|         |              | 증액(B) | 감액(C) |              |                      |
| 계       | 812,300,000  | 0     | 0     | 0            | 812,300,000          |
| 일 반 회 계 | 803,000,000  | 0     | 0     | 0            | 803,000,000          |
| 특 별 회 계 | 9,300,000    | 0     | 0     | 0            | 9,300,000            |

##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제출예산액<br>(A) | 수정내역  |            | 내부유보금<br>조 (D) | 수정예산액<br>(E=A+B+C+D) |
|----------------------|--------------|-------|------------|----------------|----------------------|
|                      |              | 증액(B) | 감액(C)      |                |                      |
| 계                    | 812,300,000  | 0     | △1,080,000 | 1,080,000      | 812,300,000          |
| 일 반 회 계              | 803,000,000  | 0     | △1,080,000 | 1,080,000      | 803,000,000          |
| 특 별 회 계              | 9,300,000    | 0     | 0          | 0              | 9,300,000            |
| 의료급여기금               | 610,295      | 0     | 0          | 0              | 610,295              |
| 폐 기 물 처 리<br>시 설 사 업 | 2,767,000    | 0     | 0          | 0              | 2,767,000            |
| 기 반 시 설              | 115,000      | 0     | 0          | 0              | 115,000              |
| 치 수 사 업              | 5,807,705    | 0     | 0          | 0              | 5,807,7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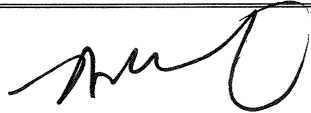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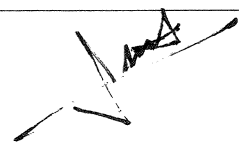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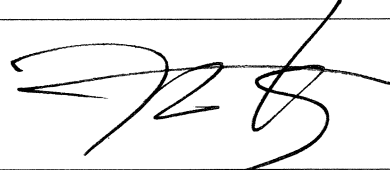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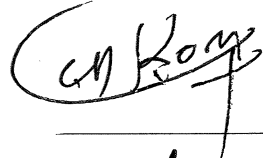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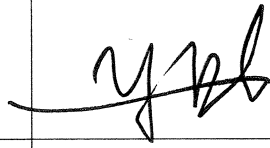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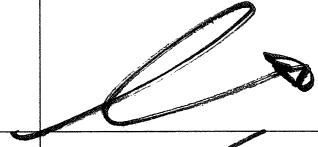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 사 업 별         |                            |                                    |          | 사 업 명                    | 제출<br>예산액 | 증감<br>(△) | 수정<br>예산액 | 비고 |
|---------------|----------------------------|------------------------------------|----------|--------------------------|-----------|-----------|-----------|----|
| 부서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br>명목 |                          |           |           |           |    |
| 기<br>획<br>예산실 |                            | 내부 유보금                             | 801-03   | 내부 유보금                   |           | 1,080,000 |           |    |
| 교통과           | 주차시설<br>정비 및<br>교통대책<br>추진 | 현풍 하리<br>마을단위<br>공영주차장<br>조성       | 401-01   | 현풍 하리 마을단위<br>공영주차장 조성   | 850,000   | △850,000  | -         |    |
| 건설과           | 지방도,<br>군도 등<br>도로정비<br>관리 | 다사 문산리<br>437번지<br>일원<br>도로확포장     | 401-01   | 다사 문산리 437번지 일원<br>도로확포장 | 200,000   | △200,000  | -         |    |
| 의 회<br>사무국    | 의정활동<br>홍보                 | 의정활동<br>홍보기록관리<br>및 의회운영<br>활성화 홍보 | 201-03   | 2019 대구경북 지방의회<br>박람회    | 30,000    | △30,000   | -         |    |

# 서 명 날 인 서

| 의 원 명 | 서 명  | 날 인                                                                                   |
|-------|------|---------------------------------------------------------------------------------------|
| 김 은 영 | 김 은영 |    |
| 최 상 국 | 최 상국 |    |
| 서 도 원 | 서 도원 |    |
| 구 자 학 | 구 자학 |   |
| 하 중 환 | 하 중환 |  |
| 김 정 태 | 김 정태 |  |
| 이 대 곤 | 이 대곤 |   |
| 김 보 경 | 김 보경 |   |
| 신 동 윤 | 신 동윤 |  |
| 도 일 용 | 도 일용 |  |